

GOVP1200304971

2002-75 <http://www.maf.go.kr>

관계규정해설 1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2.12



일 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표시한 것)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5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2003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2004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축·삼협·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3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기금사업의 계획변경과정에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문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총무과
 - 연락처 : 전화 031-299-8822~5, 팩스 031-299-8800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 | |
|---|-----|
|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 1 |
| 1. 배경 | 2 |
| 2. 주요골자 | 3 |
| 3. 주요 변경사항 | 6 |
| 4. 해설 | 8 |
| 제1장 총칙 | |
| 제2장 자율사업 | |
| 제3장 공공사업 | |
|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 |
| 제5장 보칙 | |
|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 27 |
| 1. 배경 | 28 |
| 2. 주요골자 | 29 |
| 3. 주요 변경사항 | 33 |
| 4. 해설 | 37 |
| III.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122호) | 57 |
|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120호) | 109 |
| V.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135 |
| VI. 기타주요사항 | 211 |
| 참고 1.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 |
| 참고 2. 고품질쌀 관련 정의 | |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 | |
|---------------------------------|-----|
| I. 생산기반확충 | 219 |
| 1. 영농규모화사업(자율) | 220 |
| 2. 토양개량사업(자율) | 269 |
| ① 토양개량제공급 ② 객토 | |
| 3. 주요농작물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 289 |
| 4. 농경지종합정비(공공) | 299 |
| ① 발기반정비 ②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 |
| 5. 경지정리(공공) | 345 |
| 6. 배수개선(공공) | 381 |
| 7. 수리시설개보수(공공) | 405 |
| 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② 저수지 준설사업 | |
| ③ 방조제개보수 | |
| 8. 농촌용수개발(공공) | 442 |
| ① 대·중·소규모 용수개발 ② 지표수 보강개발 | |
| 9. 농업생산기반정비(공공) | 484 |
| ①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② 지하수 개발조사 | |
| ③ 농업용수관리자동화 ④ 해외농업환경조사 | |
| ⑤ 농업용수 수질조사·연구 | |
| 10. 농지조성(공공) | 537 |
| ① 대단위농업종합개발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 |
| 11. 지역특화사업(공공) | 569 |
| II. 농업기계화 | 599 |
| 12. 농기계구입지원(자율) | 600 |
| 13. 농기계사후관리지원(자율) | 661 |
| 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②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지원 | |
| ③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 | |
| 14. 농기계생산지원(공공) | 696 |
| III. 생산 및 유통개선 | 713 |
| 15.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자율) | 714 |
| 16. 협동조합합병지원(공공) | 740 |

제3권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 | |
|--|------|
| I. 생산기반 확충 | 743 |
| 17. 고품질 우량종자개발(자율) | 744 |
| ① 고품질 우량종자개발 ② 마늘경쟁력 제고지원 | |
| II. 사육기반확충 | 795 |
| 18. 사료사업 지원(자율) | 796 |
| 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② 사료사업지원 | |
| 19.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자율) | 838 |
| 20. 축산 계열화사업(공공) | 864 |
| ① 가축계열화 ② 경주마육성 | |
| 21. 한우사업지원(공공) | 887 |
| 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②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 | |
| ③ 한우 다산장려금 ④ 거세장려금 | |
| 22. 가축개량사업(공공) | 970 |
| III. 원예 생산 및 유통개선 | 1025 |
| 23. 농산물 표준 규격화사업(자율) | 1026 |
| ① 농산물물류표준화 ②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 ③ 농산물 규격출하 | |
| 24.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율) | 1061 |
| ①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 ② 일반조직산지유통활성화 지원 | |
| ③ 인삼출하장려 | |
| 25. 농산물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자율) | 1096 |
| 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② 인삼검사장 신축 | |
| 26. 농산물 유통시설지원(공공) | 1136 |
| ① 농산물유통시설보완 ② 농산물출하촉진자금지원(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 |
| 27. 농수산물 소비지 유통기반확충(공공) | 1160 |
| ①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건설 ② 농산물직거래 시설지원(직거래매취) | |
| 28. 농축산물 자조급 조성지원(공공) | 1189 |
| ① 농산물 자조급 조성 ② 축산 자조활동자금 조성 | |
| 29. 채소 수급안정 사업(공공) | 1199 |
| ① 계약재배사업(노지채소) ② 약정출하사업(시설채소) | |
| 30.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공공) | 1213 |
| 31. 농산물 수출진흥사업(공공) | 1218 |
| ①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②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 | |
| 32. 우수농수산물 지원사업(공공) | 1261 |
| IV.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 1279 |
| 33. 축산물 품질향상(공공) | 1280 |
| ① 원료돈 구매자금 지원 ② 육가공업체시설지원 ③ 규격축산물 출하촉진지원 | |
| 34. 축산물 유통개선사업(공공) | 1290 |
| ① 도축도매시설 ② 가공판매시설 | |
| ③ 축산물등급판정 ④ 축협조합경제사업 활성화 | |
| ⑤ 직거래 매취사업 | |
| 35. 축산물안전성 검사 및 경영안정(공공) | 1376 |
| ① 가축질병 근절대책 ② 축산물검사 | |
| ③ 가축방역 ④ 가축공제 | |
| 36. 학교 우유급식사업(공공) | 1415 |

제4권 농촌개발

| | |
|--|------|
| I. 생산 및 유통 개선 | 1425 |
| 37. 친환경농업육성(자율) | 1426 |
| ① 대규모지구 조성사업 ② 소규모지구 조성사업 | |
| ③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 |
| 38. 농촌가공산업육성사업(자율) | 1488 |
| ① 농산물가공산업육성 ② 농촌특산단지육성 | |
| 39. 농업종합자금지원(자율) | 1567 |
| II. 기술개발 및 정보화 | 1587 |
| 40.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확충(자율) | 1588 |
| ①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② 농업인 정보화교육 지원 ③ 농촌 PC보내기 지원 | |
| ④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운영 ⑤ 출하지원시스템 확충 | |
| 41. 농업기술개발(공공) | 1682 |
| 42. 농촌활력화*(공공) | 1691 |
| ①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② 지역특화시범 | |
| 43. 기술보급*(공공) | 1705 |
| ① 새기술보급시범 ② 품목별전문교육 | |
| ③ 4-H회원시범영농 ④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 | |
| III. 인력육성 | 1739 |
| 44. 후계농업인육성(자율) | 1740 |
| ① 후계농업인 육성 ②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
| 45. 농업인 자녀 지원(공공) | 1807 |
| 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②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
| 46.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 1823 |
| IV. 소득보전 | 1867 |
| 47. 농업 직접지불제(공공) | 1868 |
|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 ②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③ 논농업직접지불제 | |
| 48.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공공) | 1954 |
| 49. 농가도우미지원(공공) | 1958 |
| V. 소득원개발 | 1971 |
| 50.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 1972 |
| ①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② 녹색농촌체험활동지원 | |
| ③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 |
| 51. 한계농지정비사업(자율) | 2028 |
| 52. 농가경영안정지원(자율) | 2041 |
| ①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②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 |
| 53. 농공단지육성(공공) | 2058 |
| VI. 생활환경개선 | 2075 |
| 54.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공공) | 2076 |
| ① 정주권개발 ② 문화마을조성 ③ 농촌마을하수처리시설 ④ 농가주거환경개선* | |
| 55.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 | 2155 |

제5권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 | |
|--|------|
| I. 경영기반확충 | 2185 |
| 56.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 2186 |
| ① 산림경영장비지원 ② 임업기계지원센터설치 | |
| 57. 영림계획(자율) | 2196 |
| 58. 사유림협업경영(공공) | 2201 |
| 59.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공공) | 2206 |
| ① 임도시설 ② 사방사업 | |
| II. 생산 및 유통개선 | 2217 |
| 60. 임산소득증대(자율) | 2218 |
| ① 단기임산물생산 기반조성 ② 조경수·분재생산 ③ 산림복합경영 | |
| 61. 임산물이용가공 및 보드류시설지원(자율) | 2246 |
| ① 임산물 이용·가공지원 ② 보드류시설지원 | |
| 62. 산림조합육성(공공) | 2264 |
| 63.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 2268 |
| ①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②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 ③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 |
| III. 인력육성 | 2313 |
| 64.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등 육성(자율) | 2314 |
| 65. 임업전문인력양성 및 임업기술지도(공공) | 2319 |
| ① 임업전문인력육성 ② 임업기술지도 | |
| IV. 산림 복지기능 증진 | 2329 |
| 66. 산림휴양공간조성 및 산림박물관 등 조성(공공) | 2330 |
| ① 산림휴양공간조성 ②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 ③ 생태숲 조성 | |
| 67. 산촌종합개발(공공) | 2344 |
| V. 산림자원조성 | 2353 |
| 68. 해외조림사업(자율) | 2354 |
| 69. 산림자원조성(공공) | 2361 |
| ① 조림·육림·묘목생산 ② 보호수 정비 ③ 산지목재비축 지원 | |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배경

- 1993년까지의 농정 추진 방식은 『중앙집권적 하향 방식』으로서 정부가 단독으로 시책을 결정하고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 농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 농업인을 비롯한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어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음
-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 6. 14.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992년에 착수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1998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1994. 7.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투입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1994. 12. 14.에 제정하였고 1996. 10. 28. 『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개칭
- 그동안, 유사사업 통폐합, 경영장부 기록의무 및 경영교육 강화, 지원실적 공개근거 신설, 사업선택의 탄력성 제고, 사업포기자분의 추가사업대상자 신청기한 조정 등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업시행상의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림사업실시규정을 보완하여 시행함

2. 주요골자

< 기 본 방 향 >

- 농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농정수행
- 농림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참여기회 확대 및 자조역량 제고
- 상향식 농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
- 농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농업인들의 불편사항 해소

가. 농림사업의 종합안내

-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사업을 망라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시군구 및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축·삼협·산림조합등 안내기관에 비치하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안내기관은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농업인들의 사업선택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상담·지도

나.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의 정형화·공개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사업의 신청과 예산의 계상,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정부가 지원한 시설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통일된 원칙 제시
- 사업신청요령을 공고하여 공정한 참여기회 부여
- 자금지원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함으로써 농정의 투명성 확보
 -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하므로
 - 누가, 어떤사업을, 어떤과정을 거쳐,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가 공개됨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전에 취득한 재산(시설)의 가액은 지원대상이 아님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농업인들의 자조역량 향상

- 선택할 수 있는 사업내용, 신청자격, 지원규모·조건·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농업인들이 연중 사업을 구상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신청하면 시군 농정심의회가 공개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상향식 농정체제로 전환**함
- ※ 농업인들은 사업시행지침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정책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가 필요로 하는 세부사업내용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에 탄력성**을 부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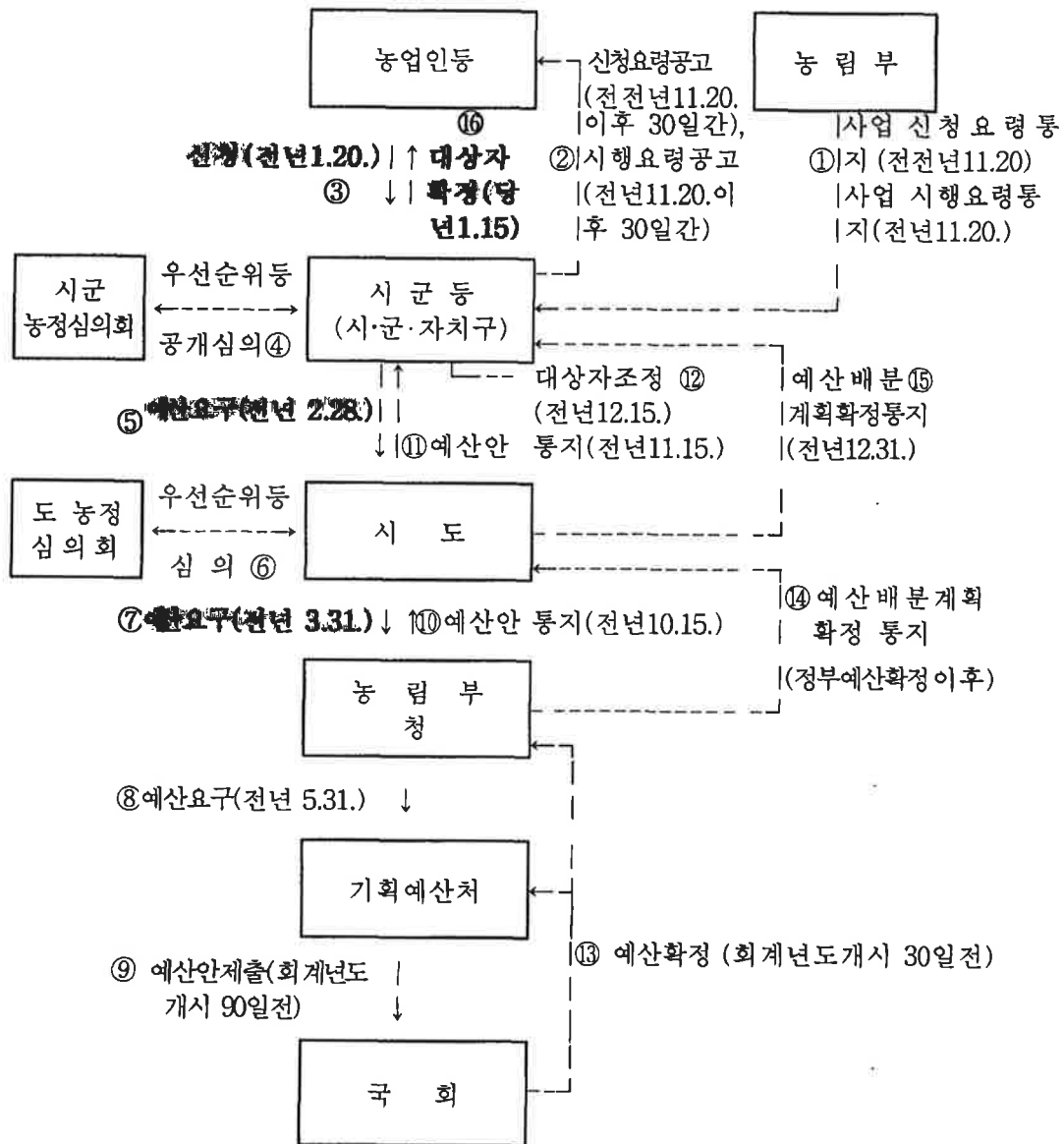
라. 경영장부(경영일지)기록 의무이행 및 경영교육 이수 강화

- 농업인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경영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사업의 경영상태를 스스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신청시 과거 **3년간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실적**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 심사시 **지원우선순위에 차별성**을 부여함
- 또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영교육 이수자에게도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

마. 부실경영체의 무리한 사업참여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명단과 금액**을 시군구 및 농·축·임·삼협의 홍보지, 반상회보, 농업인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
-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관리대장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림부·청의 사업부서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상황 확인·점검**
- 사업계획, 집행, 사후관리에 참여한 자는 **관련자료에 실명 표기**

바.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도



3. 주요 변경사항

| 사 항 | 1999년 | 2000년 | 2002년 | 2003년 |
|------------------------------------|--|---|------------------------|------------------------|
| ① 유사사업의 통 폐 합 | ○ 87개(자율 18, 공공 69) | ○ 74개(자율 21, 공공 53) | ○ 70개(자율 23, 공공 47) | ○ 69개(자율 25, 공공 44) |
| ② 경영장부 (경영일지) 기록 의무 이행 강화 | - 미기록 또는 현저히 기록을 소홀히 한자 에게는 순위 부여하지 않 는다는 자구 삭제 | - | - | - |
| ③ 경영교육 이수 강화 | | - | - | - |
| ④ 사업신청에 탄 력 성 부 여 | ○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 게 송부 - 사업예정 지를 관할 하는 시장· 군수가 심의 |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추가사업 신청기간은 사업추진 가능 여부, 예산지 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수시 신청토록 예외 인정 | - | - |

| 사 항 | 1999년 | 2000년 | 2002년 | 2003년 |
|--------------------------------|---|---|---|---|
| ⑤법인경영체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을 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지원요건 및 사후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본 규정에 명시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지원요건을 구비하고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법인이 선정(제41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환자 정착촌안의 분뇨처리 시설사업은 법인설립후 신청가능 | - | - |
| ⑥사후관리 책임보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억원이상인 사업장은 농림부, 청의 사업부서에 관리카드 비치 - 담당자가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한 후 의견 기재 ○ 사업계획, 집행, 사후 관리업무에 참여한 공무원과 농·축·인·삼협 임직원이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 표기(제39조제6항) | - | - | - |
| ⑦사업안내 표지판설치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사업에서 장뇌삼 등 약용작물은 도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대상에서 제외 |
| ⑧ 고품질쌀 생산 추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쌀생산을 유도하기위한 제도개선 및 논에 타작물 재배규제완화 | - |

4. 해설

제1장 총칙

가. 정의(제2조)

- (1) **농림사업** :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사업(제2조제1호)
- (2) **자율사업** : 농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세부사업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그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제2조제2호)
 - **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 **생산자단체등**
 - 생산자단체(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 : 농·축·임·삼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 : 농림업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농촌과 관련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 (3) **공공사업** :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또는 정부계획과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제2조제3호)
- (4) **총괄부서** : 농림부, 농촌진흥청산림청(청), 시도, 시군자치구(시군등)에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4호)

- [설명] * 농림부 : 투자심사담당관실
* 청 : 기획예산담당관실
* 시도 : 대체로 농정과
* 시군등 : 대체로 산업과

(5) 사업부서 :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에서 농림사업의 추진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5호)

[설명] 농림부 및 청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의 사업명 밑에 기재된 『해석기관』이 이에 해당됨

나. 적용범위 등(제3조)

(1)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에 의한 농림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함(제3조)

○ 사업시행에 관한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정한 사업은 적용제외

< 농림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제3조제2항)>

-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 및 수매·비축
-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 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추진하는 경우 제외)
-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법인에 한함)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설명] * 농업인과 직접 관계없는 특정업체 또는 단체 등에 특정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농림사업분류표에 포함하여야 하며,

* 농림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에 속하는 사업이라도 농업인등에 대한 정부시책의 홍보 등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는 포함할 수 있음

(2) 농림사업분류표의 내용(제3조제2항 별표1)

- 대분류(4개)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농촌개발, 임업및산촌구조개선
- 중분류(10개)
 - 공통(8개) : 생산(사육, 경영)기반확충, 농업기계화, 생산(원예,축산물) 및 유통개선, 기술개발 및 정보화, 인력육성, 소득보전, 소득원개발, 생활환경개선
 - 특별(2개) : 산림복지 증진, 산림자원조성
- 소분류(단위사업(69개) : 자율사업 25개, 공공사업 44개
[설명] 정부예산과목의 “세항”(기금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과목)을 기준으로 하여 가능한한 그보다 범위를 넓게 설정

다. 사업시행지침 등(제3조의2)

(1) 농림사업분류표에 명시된 사업은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가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9. 30.까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제3조의2제1항)

-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제3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 해석기관 및 지침작성자 명시(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
 - 목적, 추진방향(정부시책방향 명시), 근거법령, 연도별 지원계획
 -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요령(세부사업내용 열거)
 - 사업예정년도 다음년도의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사업시행요령에 열거되지 않은 세부사업내용이라도 정부시책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신청가능함을 명기함

[설명]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통상적으로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가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기 전에 사업예정년도에 적용할 농림사업분류표안을 작성하여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에 통지함(정부예산안의 윤곽이 드러나는 전년도 8. 31.까지)

※ 시행지침서에서 사용되고있는 고품질 쌀(벼)은 매년 농촌진흥청장이 미질, 식미평가를 통해 선발 추천하는 품종으로서 ①질소비료 감축 재배, 적온건조 및 적정가공 등에 의해 생산된 쌀(벼), ②동청장이 추천하는 품종을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유기농, 전환기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농법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쌀(벼)

③동청장이 추천하는 품종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품질인증을 받은 벼(쌀), ④모양, 색깔 등 기타사항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고품질 쌀(벼)이라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고품질 쌀관련 유권해석 기관은 식량생산국 농산과임)

(2)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포함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20.까지 다음의 기관에 통지함(제3조의2제3항 별지 제2호서식)

○ 농림사업지침서는 총5권으로 함(제1권은 관계규정 해설, 제2권 내지 제5권은 농림사업분류표상의 4개 대분류를 각권으로 함)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 제3권 :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 제4권 : 농촌개발
- 제5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 통지할 기관

- 농림부의 사업부서, 청, 시도
- 농림사업 안내기관(제8조제1항) :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축·삼협·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농업기반공사 시군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3) 다음사항은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기 전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중 다음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함(제3조의2제4항 및 제5항)

- 자율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변경
- 사업시행지침중 신청의 자격·절차·구비서류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우선순위·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4) 농림사업분류표에 정한 사업외의 사업은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함(제3조의2제7항)

라. 농림사업심의위원회(제4조 내지 제4조의6)

(1) 구성(19인이내)(제4조) : 농림부 차관(위원장), 농림부 기획관리실장(부위원장), 농림부 차관보·각국장(공보관·감사관·농업정보통계관 포함), 청의 기획관리관,

(2) 기능(제4조의3)

- 자율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변경
- 사업시행지침중 신청의 자격·절차·구비서류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우선순위·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농림사업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회의(제4조의4) :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함. 다만,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경우는 2,4,7,9월의 마지막주중 각1회에 한함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1월내에서 연기 가능)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기
 - 2, 4월은 예산요구 일정 감안
 - 7, 9월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 및 당년도 사업시행여건 변화에 대처

[설 명]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 소집을 제한한 것은 신규사업을 억제하려는 취지이므로 엄격하게 적용

(4)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제4조의6)

- 구성(15인이내) :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실무위원장),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무부위원장), 농림부의 국장급 및 청의 기획관리관인 위원소속의 주무과장,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

제2장 자율사업

가.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제7조 및 제8조)

(1)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사항을 포함한 사업신청요령 등을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함(공고문의 형식은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함)(제7조)

○ 공고할 사항(제7조제1항)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공고는 시군구,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축삼협·산림조합(농업협동조합등), 자연마을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함(제7조제2항)

○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공고내용을 읍면동을 통하여 반(班)까지 문서로 통지함(제7조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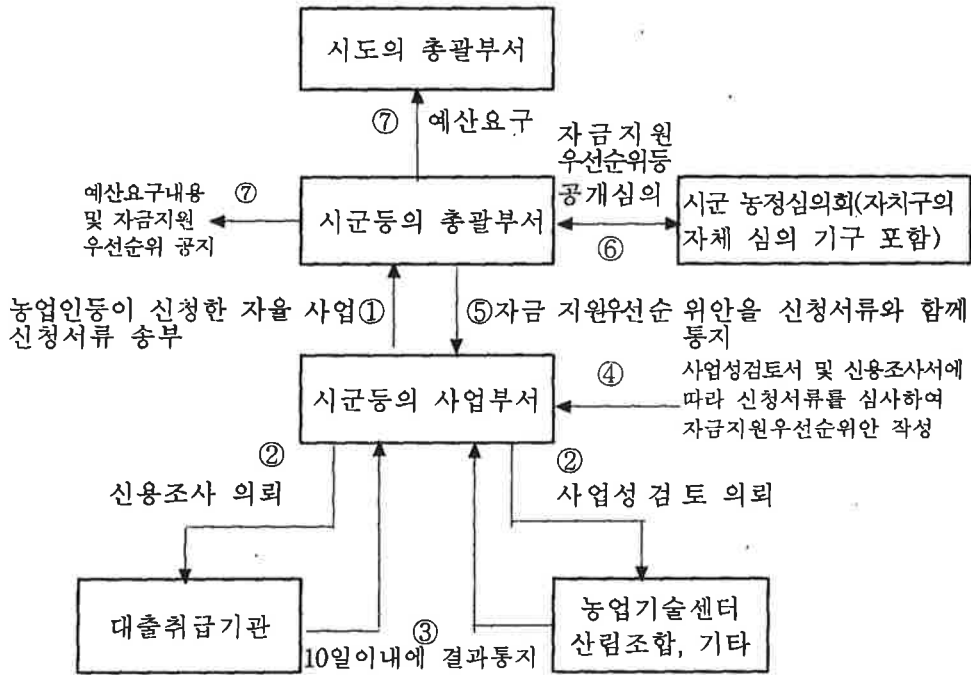
(2) 안내기관 :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축·삼협·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농업기반공사 시군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제8조제1항)

○ 안내기관의 장은 상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안내 및 상담에 응함(신청자격 및 절차, 사업계획 작성, 신청자의 기술수준 등, 인·허가 사항, 사업시행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제8조제2항)

나. 자율사업의 신청절차(제9조 및 제10조)

- (1) 신청서 제출기관 : 원칙적으로 시군동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음(제9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및 제2항)
-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이를 사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해야 함(제9조제1항)
 -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함(제9조제3항)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도록 함(제9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 (2) 다음금액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제9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 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 : 2천만원
 - 기타사업 : 3천만원
- (3) 신청기한(제10조)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 20.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 대상자의 신청은 수시 접수하여 선정
- [설명] 농림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까지 제출하는 것으로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 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제출 받을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검토, 농정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다. 자율사업신청서에 대한 시군등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11조 내지 제16조)



< 업무단계별 설명 >

- ② 사업성검토(제12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및 제2항) :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축·삼협·산림조합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조사 실시
 - 대규모사업(시설) 및 첨단시설의 경우 개별사업지침서에 명시된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선행
- (사업성검토 기관)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산림조합 : 임업과 관련된 사업(산림청 소관)
 - 기타 : 위 소관외의 사업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관

- ② 신용조사(제13조 별지 제6호서식) : 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 전업농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
- ④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 전업농 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농·축·삼협·산림조합의 직원과 합동실무검토반 구성·운영(제14조)**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시 검토할 사항)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등, 농·축·삼협·산림조합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여부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위 사항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을 추가로 검토함**
 -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자보다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하고(제14조제3항)
 -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동일조건에서 미이수자보다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제14조제4항)
- 신청자가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하지 못함(제14조제5항)

⑥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제15조)

- 시군 농정심의회 의결로 정하는 사업은 **분과위원회 또는 품목별 소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로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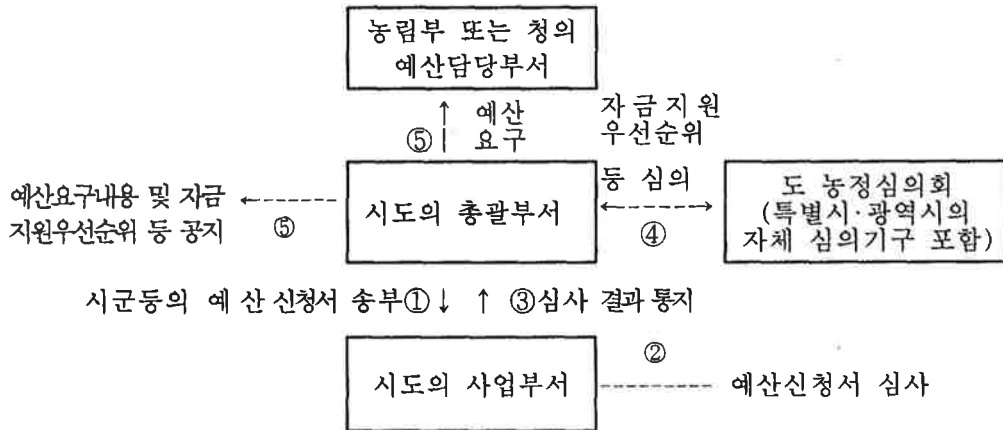
- 시군 농정심의회에 **법정 최대인원의 생산자단체장 및 농림어업인 대표 (생산자단체장 5인, 농림어업인 대표 8인)**가 참여하도록 유도(미달시는 별도 심의기구 심의를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로 갈음)
-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시장군수등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 포함)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한 후 나중에 시군등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와 함께 **도 농정심의회에서 직접심의**하게 함(제17조제3항)
- 시군 농정심의회 등은 **회의를 소집하여 공개적으로 심의**하여야 함(서면심의 불가)

[설명] 일부 시군에서 회의소집을 안하고 관계직원이 개별적으로 위원을 방문하여 서면의결하는 등 사업신청서 심의를 비공개로 허술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위원을 소집하여 각 위원이 공개적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⑦ 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제16조)

-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 28.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예산신청
- 이때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지원예정금액, 자금지원 우선순위 또는 지원예정금액의 변경가능성, 위 사항의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이 발행하는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에 게재

라. 시도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17조)



< 시도의 사업부서가 예산신청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도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 농림부 및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 시도 자체 자금지원계획
- 위 검토사항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을 시군 등의 검토예와 같이 추가 검토

마. 농림부 또는 청의 심사(제18조)

- (1)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제18조제1항)
- (2)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시도,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제18조제2항)

<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예산요구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에 반영여부
-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 점검·평가 결과
-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바. 정부예산안의 통지(제19조)

- (1)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 15.까지 시도, 시군등별 정부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제19조제1항)
- (2) 시도지사는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15.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19조제2항)
- (3) 시장군수등은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15.까지 사업별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제19조제3항)
 - 사업포기, 업종변경,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시 자금 지원대상자우선순위 변경가능

사.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제20조 내지 제23조)

- (1)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 포함)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정부예산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도에 통지(제20조)

[설명] 정부예산 확정기한 : 정부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30일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2일이 법정시한임. 그러나 국회사정에 의하여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음

- (2) 시도지사는 시군등에 대한 시도예산의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31.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21조)
- (3) 시군등의 총괄부서(그외 사업주관기관 포함)는 사업예정년도의 1. 15.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부득이한 경우 우선순위 변경 가능)하여 이를 자금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금지원대상자명단을 시군구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함(제22조, 제23조)

<자금지원대상자우선순위 변경 사유>

-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이미 결정된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 사업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신청받아 그중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

<공지시 추가할 사항>

-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농업기반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

아. 경영장부의 기록 및 비치(제24조)

- (1) 시장군수등은 정부로부터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하여야 함(제24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 (2) 위 금액미만으로서 1천 5백만원이상을 지원받은 자는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함(제24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

제3장 공공사업

가. 공공사업의 신청(제25조)

(1)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동 또는 시도의 총괄부서, 용자대행기관에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 20. (사업부서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당해일)까지 신청(제25조제1항·제2항, 제4항)

- 용자대행기관 : 농협중앙회,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용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제25조제1항)
- 용자대행기관이 직접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같음함(제25조제1항)
- 공공사업 신청시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효과의 확산 방안, 사업준비상태, 사업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제25조제2항)

(2) 시도의 총괄부서 또는 용자대행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군동의 총괄부서에 송부함(제25조제3항)

[설명] 사업시행지를 관할하는 시군동과 관련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에 당해 시군동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나. 공공사업의 예산반영(제26조)

- (1)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공공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때와 시도의 총괄부서 또는 읍자대행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시군 농정심의회 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자율사업의 절차 준용)를 거쳐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한후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 28.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예산요구를 함(제26조제1항)
- (2)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으로부터 공공사업의 예산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율사업의 절차를 준용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확정하고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 31.까지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예산요구를 함(제26조제2항)
- (3)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예산에 반영함(국고는 기획예산처에 요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제26조제3항)
<검토할 사항 : 제2장-마-(2) 참조>

다. 정부예산안의 통지,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 대상자의 확정 등 절차는 자율사업의 관계규정을 준용함(제28조)

- 사업신청 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제7조, 제8조)
- 신청서식(제9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 신청서 심사 및 예산요구 절차(제11조 내지 제18조)
- 정부예산안 통지 및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제19조 내지 제21조)
-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및 공지(제22조, 제23조)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가. 신규사업의 제안(제29조)

-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제29조제1항 및 제2항)
 -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과의 유사성
 - 경제성
 - 농업인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또는 공청회 결과
 -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 여부
 - 기대효과 등
- (2)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제29조제3항)
- (3)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은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음(제29조제4항)

나. 신규사업의 선정요구(제30조)

- (1)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안이 있을 때에는 타당성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시행 지침안을 붙여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선정을 요구함(제30조제1항)
 - 청의 소관사항은 자체 정책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요구
- (2)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월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30조제2항)

다. 신규사업의 선정(제31조)

(1)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4조의4 제2항) 신규사업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사업의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함(제31조제1항)

○ 위원회 개최일전 5일까지 접수된 것에 한함

(2)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음(제31조제3항)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수정보완지침에 따라 도 및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제31조제4항)

[설명] 이때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라.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특례(제32조)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의 제안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후 당해 제안자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을 채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사업신청서 제출(제9조)

○ 사업성 검토 및 신용조사(제11조 내지 제13조)

○ 시군등의 사업신청서 심사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제14조)

○ 시군 농정심의회외 공개심의(제15조)

제5장 보칙

- 농림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장군수등에게 있음. 다만 읍자대행 기관에 신청한 공공사업은 당해 읍자대행기관에 1차 관리책임이 있음 (제39조제1항)
-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시설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주요사업장(기지원사업 포함)에 대하여 농림부 사업국 등 사업부서에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사업담당 실무책임자(서기관, 사무관)가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한 후 의견을 기재토록 함(제39조제2항)
 - 지원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음(제39조제3항)
- 시설등에는 농림사업안내표지를 잘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함(제39조제4항 별표2)
-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시행해야 함 (제39조제5항)
- 사업부서는 사업의 정책입안, 사업집행(자금집행)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참여한 공무원과 농·축·임삼협조합(중앙회포함)임직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함(제39조제6항)
- 농림부장관은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등으로 하여금 시군등 및 농·축·삼협·산림조합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음(제40조)
 - [설명] * '94-'96 지원자 명단 및 금액을 '97. 1-2월중에 농·축협조합의 경영평가보고서 및 동 기간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영농준비교육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바 있고
 - * 앞으로도 매년 1-2월중에 전년도 지원자 명단 및 금액을 같은 방법으로 공개할 계획임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제41조 별표 3)

여 백

Ⅱ.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해설

1. 배 경

-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필요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제정하여 1996. 8. 1.부터 시행
 - < '97. 10. 29. 주요개정사항 >
 - 지원대상자의 동의에 의해 지원실적을 공개하도록 개선
 - 회계연도말까지 용자금 배정신청이 없을 경우 이월사용하거나 불용처리
 - 자금신청에 의한 용자한도액 배정 및 배정일자별 대출관리토록 명시
 - < '98. 7. 23. 주요개정사항 >
 -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실적에 의한 입증서류의 범위 명시
 -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의한 검정 실시
 - 부당 대출금 회수시 위약금 징수조건 강화, 정책자금 지원제한 보강
 - < '98. 12. 19. 주요개정사항 >
 -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추진상황 등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대출마감일을 연장승인할 수 있도록 명시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여신관리계좌마감일을 경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
 - < '99. 11. 8. 주요개정사항 >
 - 농림사업시설설치에 따라 환급받게 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정책자금지원사업비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 농림사업비의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근거규정 명시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기간 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신관리계좌 운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
 - < '02.11.20. 주요개정사항 >
 - 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않는 자금에 대해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을 다음연도 6월말까지로 명시
 - 대출마감일 연장기관을 사업자금과에서 사업지원과로 변경
 -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지원과가 정한금액 범위 내에서 공급자의 자필서명 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
 - 대여금 반납기한 연장(회계연도 1. 10. → 1. 20.)

2. 주요골자

<기본방향>

- 사업자금의 신속한 지원 도모
- 예산회계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응하는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제도 정립
- 사업자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유도

가. 자부담금 우선 집행후 지원비율에 의한 사업자금 지원

-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사업주관기관이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다만,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여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에서 제외
- 자부담금 우선 집행 및 사업자금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동 세금계산서 또는 동 금융기관거래자료를 사업실적의 증거서류로 인정

나. 사업자금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 부당사용금액 회수
 -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받은 날부터 연체금리 적용
- 부당사용금액의 크기 또는 사업비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에 따라 다음 기간중 사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등,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 농림부장관(투자심사담당관)에게 통지
 - 금액 10억이상, 비율 50%이상 : 5년간 지원제외함(50%이상 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는 3년)

- 금액 5-10억원 미만, 비율 30-50%미만 : 3년
- 금액 1-5억원 미만, 비율 20-30%미만 : 2년
- 금액 1억원 미만, 비율 20%미만 : 1년
-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기간이 긴 것을 적용

다. 사업의 검정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시 또는 사업완료시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를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동 세금계산서 또는 동금융기관거래자료중 하나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지원과가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에 의하여 사업검정 실시

라. 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 절차

-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월마다『시·도→시·군(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지원대상자가 다음달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직접 사업지원과에 배정요구)

마. 대출원장 관리

- 용자한도액 배정일자별로 구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촉구

바. 예산의 이월 사용

-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 대여된 금액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한 후 예산이월할 수 있음
- 용자한도액이 배정되어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반납하여야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추진상황, 연장사유등을 사업지원과가 검토하여 연장결정한 후 대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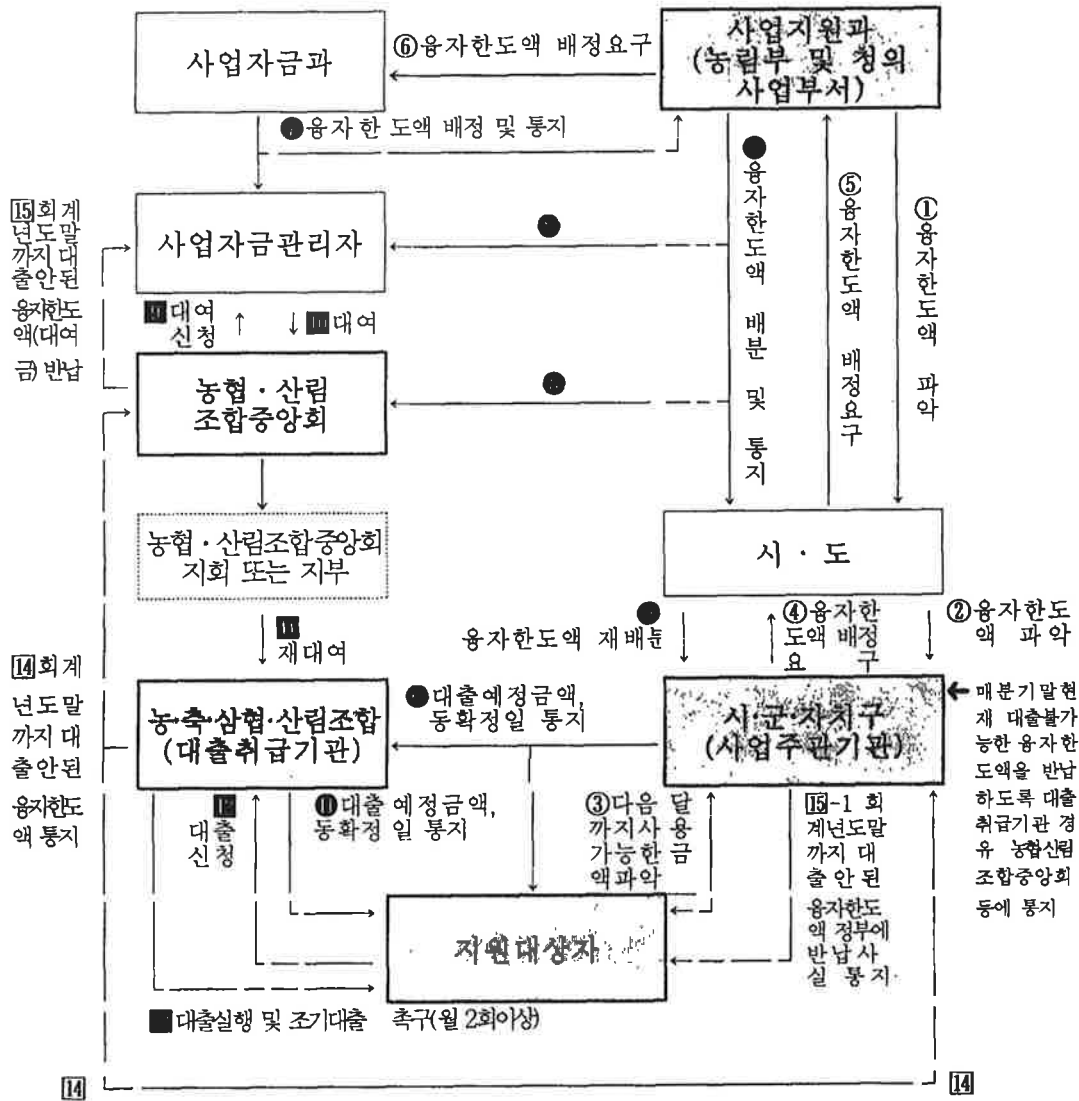
사. 대출기한내에 대출이 불가능한 용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기한(당해 회계연도 말 : 제10조제2항)내에서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 등에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명시)
 - 납기내 반납시 :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납기한까지는 납기내 금리, 그 후는 연체금리 적용

아. 대출기한이 경과한 용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취급기관이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삼립조합 중앙회에 통지하면
 -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금액의 대출불가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
 - 대여일부터 다음회계년도 1. 20까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다음회계년도 1. 2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금리 적용

자. 용자 절차도



(주) 위 그림은 시·군·자치구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농·축·삼협·산림조합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의 용자절차를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시·군·자치구가 아니거나 농협·산림조합중앙회가 직접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는 위 그림에 정한 절차중 일부가 달라짐

○●은 훈령의 제1호서식, ①는 제2호서식, ②은 제3호서식, ④는 제5호서식, 15-1은 제6호서식에 의함

○●의 통지가 없으면 ■의 대여신청과 ■의 대여를 할 수 없음

3. 주요 변경사항

| 사 항 | '98. 8. 2.이전 | '98. 8. 3.~'99.11.7. | '99. 11.8.~'02.11.19. | '02.11.20.이후 |
|------------------------------|--|--|---|---|
| ① 자부담금 우선집행 후 사업 자금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시군등이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 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제4조제2항)('97.예산부터 적용) 자부담금 비율이 사업비의 20% 이상이고 금액이 2억원 이상일 때는 착수 시와 진척 50%시에 자부담금을 각각 반액씩 집행 기타의 경우는 착수 시에 자부담금 전액 집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금집행 증거자료를 거래당사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 한함)의 자필서명에 의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의 입출금 거래장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제4조제3항 및 제5항)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지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범위내에서 인정(제4조제6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제4조제2항) | (좌와 같음) |
| ② 완료사업의 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년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된 때 사업집행실적 검정 및 보조금 정산(제13조제4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 또는 사업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집행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실시(제4조제7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정시에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제4조제7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사업자금 지원 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 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농산물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인정(제4조제5항) |
| ③ 리스방식으로 도입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지원 제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지급제외 | (좌와 같음) |
| ③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 사용 금액의 크기 또는 사업비에 대한 부당 사용 금액의 비율에 따라 4개의 제재 기준으로 구분함(제16조) 10억원 이상 50% 이상 : 5년간 지원 안함(50%이상 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는 3년) 5~10억원 미만 30~50%미만 : 3년 1~5억원 미만 20~30%미만 : 2년 1억원 미만 20% 미만 : 1년 * 2년 이상의 경우 기여도 또는 정황에 따라 개별규정에서 50% 단축 가능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무거운 것을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 사용 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지방비 및 자부담금 포함)으로 지원제한기간 적용(제16조제2항 및 제3항) 이미 지원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제16조제2항) | (좌와 같음) | (좌와 같음) |

| 사 항 | '98. 8. 2.이전 | '98. 8. 3.~'99.11.7. | '99. 11.8.~'02.11.19. | '02.11.20.이후 |
|---------------------|---|---|---|--|
| ④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 월마다 「시도→시군등(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등(지원대상자가 다음 달까지 사용 가능한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 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 등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지원에 직접배정 요구)(제7조의2, 제13조제5항) | (좌와 같음) | (좌와 같음) | (좌와 같음) |
| ⑤대여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한도액이 배정되면 사업지원과가 시도 또는 사업주관기관에 배분하고(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는 시군등에 재배분(제7조의3제3항 별지 제2호서식) ○ 이를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한 때 대여(제8조제1항) | (좌와 같음) | (좌와 같음) | (좌와 같음) |
| ⑥대출원장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구분 관리(제8조제10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 | (좌와 같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구분 관리(제8조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 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 | (좌와 같음) |
| ⑦용자금 예산의 이월사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제5조제1항) ○ 당해 회계년도 내에 용자한도액이 배정되어 대여된 금액은 이월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당해 회계년도 내에 대출하여야 함(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제1항) ○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현저한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대출마감일 연장신청을 하여 연장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제10조제1항)('98.12.19개정) | (좌와 같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 연도 익년 6월 말까지 대출기한 연장 가능(제10조제1항) ○ 사업지원과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대출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 일정한 경우 8월말까지 재연장가능(제10조제2항) ○ 다음년도 7.1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을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음 |

| 사 항 | '98. 8. 2.이전 | '98. 8. 3.~'99.11.7. | '99. 11.8.~'02.11.19. | '02.11.20.이후 |
|---|---|--|---|---|
| ⑧ 대출기한 도래전에 대출 불가능한 유자한도 액의 반 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우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제6항 별지 제4호서식 및 제8항) - 납기내 반납시 :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연체금리 적용 | (좌와 같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우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는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 사업주관기관은 사실을 확인후 대출취급기관을 경우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제8조5항 별지 제4호서식) ○ 반납이자(제8조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기내 반납시 :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연체금리 적용 | (좌와 같음) |
| ⑨ 대출 기한 | ○ 당해 회계년도 말(제10조 제2항) | (좌와 같음) | (좌와 같음) | (좌와 같음) |
| ⑩ 대출기한 이 경과한 유 자 한 도 액 의 반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취급기관이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 안된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하면(제10조제1항 별지 제5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제10조 제4항 별지 제6호서식) ○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 (제10조제2항) - 대여일부터 다음 회계년도 1. 10.까지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적용(제10조 제3항제1호) - 다음 회계년도 1. 1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 금리 적용 (제10조제3항제2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반납하여야 하나, 현저한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서 연장승인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대출 (제10조제1항)('98.12.19 개정) ○ 대출취급기관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 안된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하면(제10조제2항 별지 제5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제10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 (제10조제4항) - 대여일부터 다음 회계연도 1. 10.까지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적용(제10조제4항제1호) - 다음 회계연도 1. 1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 금리 적용(제10조제4항제2호) | (좌와 같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20.일까지 반납 (대출마감일 연장승인 금액은 제외) (제10조제3항) |

| 사 항 | '98. 8. 2.이전 | '98. 8. 3.~'99.11.7. | '99. 11.8.~'02.11.19. | '02.11.20.이후 |
|--|---|---|--|--------------|
| ⑪여신관리 계좌 운용 | ○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대상부지의 확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의 취득등을 확인 받아야함(제12조제1항) | (좌와 같음) |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 (좌와 같음) |
| ⑫여신관리 계좌 입 금액 중 미지금액 등의 반납 |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여신관리계좌 입금시 제출한 월별 공정 계획상의 매월 소요 금액을 당해 월의 말일까지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관 기관에 통지하여 사업주관기관의 명에 따라 입금액 반납(제12조제3항) | (좌와 같음) |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 (좌와 같음) |
| | ○여신관리계좌마감일(예산 계상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 반납(제12조제4항) ※ 반납 명령을 받은 날 또는 여신관리계좌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각각 11일째되는 날 이후 반납하는 그 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 연체 금리 적용(제12조제5항 및 제7항) | ○여신관리계좌마감일(예산계상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나 현저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 금과에서 연장승인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대출('98.12.19개정) |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 '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음 | (좌와 같음) |
| ⑬부당사용 대출금의 회수 | ○반납통지서 접수일부터 반납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체금리 적용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일(고의성이 있는 경우 부당사용 개시일)부터 연체금리를 소급 적용하여 회수. 다만,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날부터 적용(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좌와 같음) | (좌와 같음) |
| ⑭지원실적 의 공개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원대상자로부터 차후에 지원 실적을 사군구 및 농축임삼협의 홍보지, 농업인 교육 자료, 반상회보 등에 공개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음(제18조제3항) - 공개 근거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에 명시됨 | (좌와 같음) | (좌와 같음) | (좌와 같음) |

4. 해 설

< 일 러 두 기 >

- 이 훈령은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
- 이 훈령의 위임을 받은 사항 또는 이 훈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에 상세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 실무에 있어서는 사업자금별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다만 개별규정의 내용이 이 훈령에 어긋나는 경우는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음

가. 정의(제2조)

- (1) **사업자금**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제2조제1호)
[예] 국고(일반회계, 농특회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축산경영자금
- (2) **지원대상자** :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거나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중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제2조제2호)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등**(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 : 농·축·삼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
(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농림업”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업을 말함

○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농촌”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5조의 4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을 말함

(3) **지원** : 용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 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제2조제3호)

(4) **집행관리** :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용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 제외)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제2조제4호)

(5) **사업자금관리자**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청)외의 기관(제2조제5호)

[예] 농특회계(용자 : 농협중앙회 농특사무국), 농지관리기금(농어촌진흥공사 기금관리처), 축산발전기금(축협중앙회 기금관리부)

[설명] 농림부 또는 청이 직접 집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사업 자금과”에 해당됨

(6) **사업자금과** :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제2조제6호)

[예] 농특회계(용자업무 : 협동조합과, 자금한도액 배정 및 보조업무 : 총무과), 농안기금(유통정책과), 농지관리기금(농지과), 축산발전기금(축산정책과), 농축산경영자금(협동조합과)

(7) 사업지원과 :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제2조제7호)

(8) 사업주관기관 :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융자한도액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금액을 확정하는 행위 포함)하는 행정기관 또는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제2조제8호)

- 행정기관 : 농림부, 청, 농림부 및 청의 산하관서, 시도, 시군등, 농업기술센터 등

[설명] 읍면동은 시군등의 업무중 일부를 보조하는 기관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없음

- 농협중앙회등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용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설명] 농업기반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의 용자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자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있음

(9) 개별규정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외에 개별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제2조제9호)

[설명]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과 개별규정의 범위내에서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금집행의 상세한 요령을 정한 것으로써 개별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의 원칙과 절차를 포괄적으로 정한 개별규정과 구별됨

나.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조)

- (1)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안에서만 효력을 가짐(제3조제1항)

[설명] 이 훈령에 위배되는 개별규정의 효력이 없더라도 혼동을 막기 위하여 개별규정중 이 훈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이 훈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함

- (2)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이 훈령중 다음 사항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정할 수 있음(제3조제2항)

- 자부담금 우선집행(제4조제2항)
- 매 분기말 기준으로 용자보조 등 비율을 일치시켜 집행(제4조제3항)
-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용자한도액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절차(제7조의2)
-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한 용자한도액의 반납(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안된 용자한도액의 반납(제10조)
- 부당사용사유 발생시의 지원제한(제16조)

[설명]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은 수매비축 등 단기 회전성 자금이고 농축산경영자금은 농·축협 자체자금으로 조성된 사업자금에 정부가 그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어 이 훈령에 정한 일반적인 집행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

다. 집행의 원칙(제4조)

- (1)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 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제4조제1항)
- (2)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2항)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이상일 경우는 사업착수시 및 공정을 50% 진척시부터 각각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의 반액씩 집행하고
 - 그외의 경우는 착수시부터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 전액을 집행
 - ※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외에 사업자가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제4조제2항)
- [설명] 자부담을 안하고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편 종전에 일부사업에서 적용하던 자부담금 예치제도는 폐지함
- (3)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3항)
- (4) 용자한도액중 매 분기말현재 대출불가능한 금액 및 회계년도내에 대출안된 금액이 있어 이를 반납한 경우는 지원비율 적용시 반납한 금액에 해당하는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제4조제4항)
- (5)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동인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함. 다만, 농산물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범위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도 증거자료로 인정.(제4조제5항)
 - 사업실적에는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 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 확인

[설명]

정책자금의 유용이나 불법·부당한 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집행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만약 사업자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직접 시공하더라도 사업집행의 검정 및 정산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가능함

- (6)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범위내에서 증빙을 확인할 수 있음(제4조제6항)

[설명]

노무비의 경우도 용역업체 등에서 증빙자료 확보가 가능하나 특히 3천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수급인(노무자)이 자필서명한 영수증 등으로 가능하도록 인정하였음. 그러나 자기사업에 투입된 자신과 가족의 노동대가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입증하기 어렵고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고, 자가노동력으로 상계 처리할 경우 자기자본의 투입 없이 정부지원자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게되는 모순이 있어 자가노동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본규정 개정시행(98. 8. 2)이전에 이미 착수하여 시행한 사업일 경우 이러한 증빙자료의 사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노무비 지급이 정당하고 확인가능한 증빙이 첨부된다면(금융기관 입출금 전표 등)시장·군수가 사업별로 판단하여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 (7)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시와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여야 함(제4조제7항)

[설명]

사업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시설의 외형만 형식으로 확인하는 사례가 있고 사업비의 집계표를 검정서류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농림사업자금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책자금지원대상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사례방지

- (8)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제4조제9항)

[설명]

농림사업에서 자부담비율을 설정한 것은 일정한 자금능력이 있는자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리스방식은 원리금상환부담, 담보확보에 지장등 농림사업의 건전한 경영체 육성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총지원사업비중 리스로 도입한 시설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사업비지원에서 제외

라. 이월(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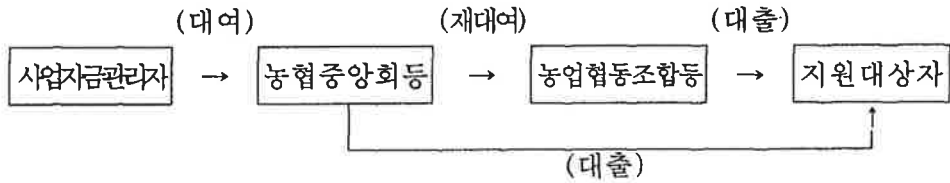
- 당해 회계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부득이 지출하지 못한 사업자금은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
 -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한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이월할 수 있음(제10조 제1항 제3호)
 - 이월은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함
 - 이월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음

마. 융자의 절차(제6조 내지 제8조제5항)

(1) 지원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및 변경함(제6조제1항)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 요구에 따른 융자조건변경은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제6조제2항)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처리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이요구에 따라 융자조건을 변경할 경우는 사업자금과가 세입담당과와 사전 협의해야 함(제6조제3항)

(2) 용자의 방법(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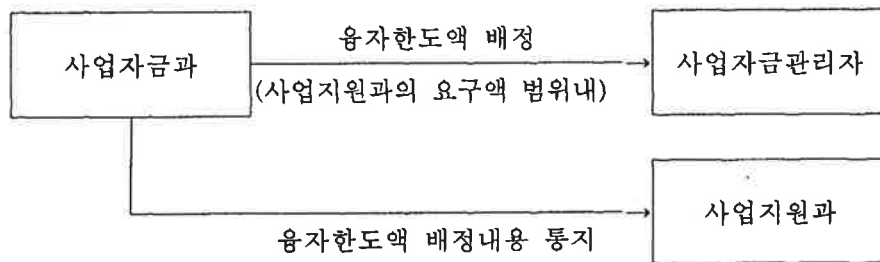
(3) 용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제7조의2)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용자한도액 배정 요구(제7조의2제1항)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제7조의2제2항)
- 사업주관기관(시군등 포함)은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주] 사업추진상황과 관계없이 자금을 앞당겨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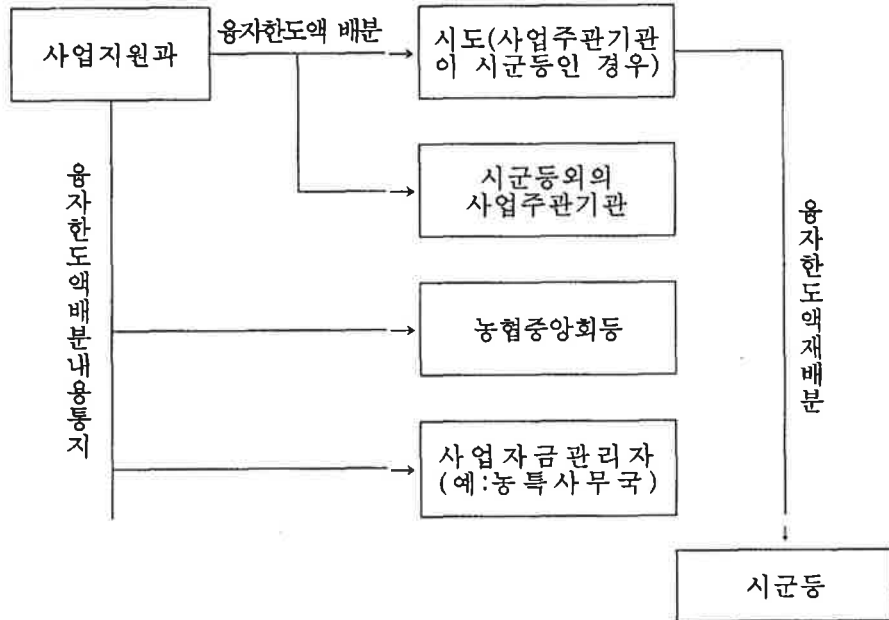
(4) 용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제7조의3)

- 용자한도액 배정절차(제7조의3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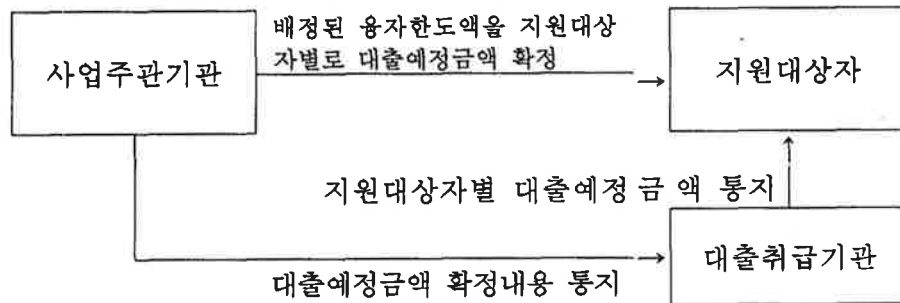
[설명]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 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융자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항 별지 제2호서식)



- 시도는 시군등에 융자한도액을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시도단위)에 통지

-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제7조의3제5항 내지 제7항)



-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촉구(제7조의3제6항)
- 대출촉구시는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7항)

(5) 대여 및 대출의 실행(제8조)

-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가 융자한도액을 배분하였다는 내용을 통지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에 자금을 대여하여야 하며,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하여서는 안됨(제8조제1항)
-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대여신청한 경우 사업자금관리자는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함(제8조제2항)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성격상 사업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확인받아 대출을 실행함**(제8조제3항)

바.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반납(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 (1)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이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한 대출을 촉구한 내용과 매분기말 현재의 사업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한도액(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도 알려야 함(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내 반납시는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 (2)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반납기한을 정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함(제8조 제5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날후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에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이자

사. 대출취급기관은 용자한도액의 배정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함(제8조제7항)

[설 명]

- 종전에는 용자한도액 잔액기준으로 대출원장을 관리함에 따라 배정된 용자한도액의 지원대상자를 알지 못하여 대출촉구 등 신속대출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대출지연요인으로 작용

아. 회계년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제10조)

- (1)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현저한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별로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사업지원과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요청한후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제10조제1항)

(2) 대출취급기관은 당해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용자한도액(대여금)을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함(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체없이 개별 통지함(제10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3)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회계년도를 경과한 용자한도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지체없이 반납해야 함(제10조제3항)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10조제4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 1. 20.(1.10.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 또는 대출마감일 경과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다음 회계년도 1. 21.부터 또는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

[설 명]

- '96. 7. 31.까지는 『용자종결기한』제도를 두어 용자한도액(대여금)을 다음 회계년도내에서 매분기 단위로 연장했고, '98. 8. 1.부터는 『용자종결기한』을 폐지하는 대신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매분기말 반납제도를 채택하였으나 實效성이 적어 '98. 1. 1.부터는 배정된 용자한도액(대여금)이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되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하였으나, 획일적으로 회계년도 종료후 미대출된 용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99. 12. 19부터는 현저한 사정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마감일 연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대출마감일 연장기한(최소한의 범위내에서)이 불명확하여 연장 가능기한을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명시

- 또한, '02. 11. 20일부터 대출마감일 연장부서를 사업자금과에서 사업지원과로 변경

자. 대여금 또는 대출금의 이자는 대여일 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함(제11조)

- (1) 대여금의 이자는 개별규정에 납부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음(제11조제1항)
- (2) 다음의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 납부주기를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제11조제2항)
 - 금융기관외의 기관이 대출취급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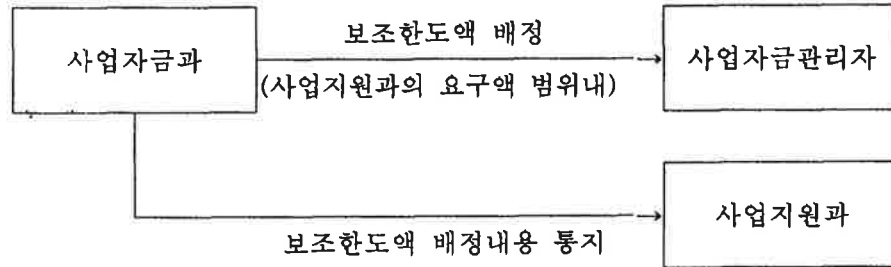
차. 보조금의 집행(제13조)

- (1) 보조금 교부결정시 붙여야 할 조건(제13조제1항)
 -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다른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 부당사용으로 제재대상이 될 경우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 집행자에게 반환하게 한다는 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자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이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 (2) 보조금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함(정산지급 원칙)(제13조제2항)
- 사업의 성격상 실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는 개산지급후 정산할 수 있음
- (3)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제13조제3항)
- (4) 보조금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 검정실시내용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함(제13조제4항)
- (5) 보조한도액의 배정절차 등 (제13조제5항)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제7조의제1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함(제7조의제2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제2항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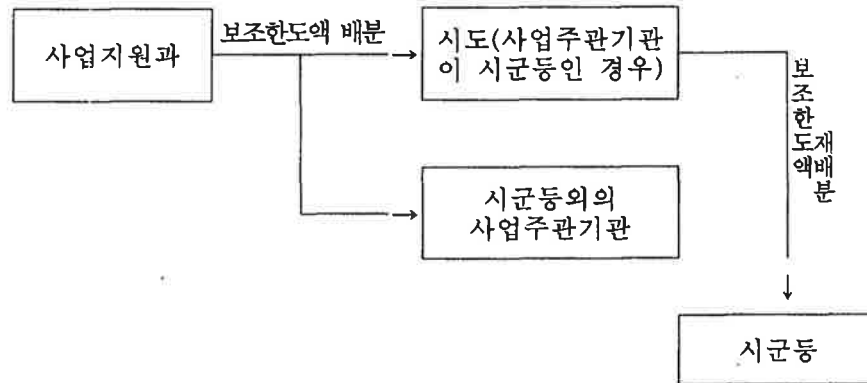
○ 보조한도액 배정, 배분, 재배분

- 배정(제7조의3제1항)



[설명] 국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등은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보조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타. 제재(제14조 내지 제18조)

(1)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제14조)

-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함(제14조제1항)

<부당사용사유>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 관련분야 사용목적 지원시는 지원목적외 용도. 이하 같음.)로 변경한 때
-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때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지원후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 위의 사유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않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 이자를 징수하여야 함(제14조제2항)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때에는 대출일부터 적용
 -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부당사용의 개시일부터 적용
 -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적용

(주) 부당사용의 개시일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부당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함

(2) 부당사용한 대여금 및 보조금의 반납(제15조)

-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
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다음의 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대출금 상당의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제15조제1항)
-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15조제2항제1호)
-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15조제2항제1호)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해야 함(제15조제3항)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는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를 준용함

(3) 지원의 제한(제16조)

- 사업주관기관은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사업자금과 · 사업지원과 · 농협중
앙회등 · 대출취급기관 · 보조금집행자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제한사항을 통지받은 때에도 같음(제16조제1항 및 제2항)

| 사 유 | 지원제한기간 |
|--|---------------------------------------|
| ① 부당사용 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 5년(비율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
| ② 부당사용 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미만인 때 | 3년 |
| ③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때 | 2년 |
| ④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 1년 |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기간이 긴 것을 적용(제16조제1항)
- 2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될 경우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하여 제한기간 산출(제16조제2항)
 -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비율에 따라 부당사용금액 산출(제16조제3항)
- 지원제한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기여도나 정황 등을 참작하여 50%이내 기간 단축 가능(제16조제4항)
- 생산자단체등(법인제외)의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봄(제16조제1항)

[설명] 생산자단체등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당해 생산자단체등에 영향이 없음

- 지원제한 기간의 기산일(제16조제5항)
 - 대출금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
 -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제16조제6항)
 -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날
-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제재내용, 제재 개시 및 종료 년월일, 제재사유 등을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등,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16조제7항)

파. 보칙(제18조)

- (1) 지방자치단체, 농·축·임·삼협조합(법인연합회 포함) 및 그 중앙회, 정부투자기관, 농지개량조합 및 그 연합회 등은 지원액을 회수하거나 지원제한기간중에도 정부사업 대행 가능(제18조제1항)
 - 정부사업 : 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가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분야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
- (2) 사업자금과는 다음의 전산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직접 또는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음(제18조제2항)
 - 대출과 동시 대여 방안
 -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집행실적 및 사용실태를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 (3)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실행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원대상로부터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실적을 차후에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의 서류를 받아야 함(제18조제3항)

여 백

Ⅲ. 농림사업실시규정 (훈령 제1122호)

농림사업실시규정

[1995. 11. 14.]
[훈령 제834호 전문개정]

개정 1996. 6. 13. 훈령 제862호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개정 1996. 10. 28. 훈령 제877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913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931호
개정 1998. 11. 12. 훈령 제965호
개정 1999. 11. 16. 훈령 제1003호
개정 2000. 11. 27. 훈령 제1050호
개정 2001. 12. 21. 훈령 제1083호
개정 2002. 11. 29. 훈령 제112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사업의 선정과 실시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및 시행 체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이 창의와 자조노력을 바탕으로 농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0. 28, 2002. 11. 29>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사업”이라 함은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세부사업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9.>
 - 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신설 1997. 10. 29, 개정 1999. 11. 16, 2002. 11. 29>
 - 나.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농림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신설 1997. 10. 29, 개정 1999. 11. 16, 2002. 11. 29>
 - 다. 농림업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거나 농촌과 관련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라 한다.) <신설 1997. 10. 29.>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제2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의 계획과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9.>

4. “총괄부서”라 함은 농림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로서 농림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1999. 11. 16)

② 농림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1의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하되 이를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한다.

1.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법인에 한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개정 1997. 10. 29.>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전문개정 1996. 10. 28.]

제3조의2 (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예정년도”라 한다.)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침안에는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 요령과 사업예정년도 다음년도의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포함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20일까지 농림부의 사업부서, 청, 시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안중 제4조의3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확정하기 전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중 제4조의3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이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농림사업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농림사업중 제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농림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 3. 9, 1999. 11. 16 >

③ 위원장은 농림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농림부 차관보 및 각 국장(공보관, 감사관, 농업정보통계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1998. 3. 29>
2. 청의 기획관리관

3. < 삭제 1999. 11. 16 >

4. < 삭제 1999. 11. 16 >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의2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6. 10. 28.>

제4조의3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2. 사업시행지침중 신청의 자격·절차·구비서류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3.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우선순위·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4.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림사업 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의4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되 위원장이 안건과 관계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제2호의 위원을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 3. 9, 2000. 11. 27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을 위한 경우는 2월, 4월, 7월, 9월의 마지막 주중 각 1회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집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의5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1996. 10. 28.>

제4조의6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에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실무위원을 두되, 실무위원장은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농림부의 국장 및 청의 기획관리관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의 과의 장과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1998. 3. 9, 1999. 11. 16>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④ 제4조의4의 규정은 이를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5조 < 삭제 1996. 10. 28.>

제6조 < 삭제 1996. 10. 28.>

제2장 자율사업 <개정 1996. 10. 28.>

제7조 (자금지원계획 및 자율사업 신청요령의 공고)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요령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개정 1999. 11. 16>
2. 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기타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군구,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인삼협동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 자연마을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개정 1999. 11. 16, 2000. 11. 27>

③ 시군동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읍면동을 통하여 반(班)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8조 (자율사업의 안내 등) ①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부, 농업기반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기관내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1. 12, 1999. 11. 16, 2002. 11.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안내 및 상담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의 규모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자격, 자율사업의 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2.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려할 사항(농지이용계획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기술수준, 노동력, 토지 및 생산시설과 후계농업인의 자격요건<개정 2002. 11. 29>
4. 담보(신용보증서에 의한 담보를 포함한다.) 및 자부담 능력
5. 사업의 수익성 및 전망
6. 선도농가의 사례 또는 외국의 예
7. 생산자단체등의 구성방법 및 절차
8.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인허가의 요건 및 절차
9. 자율사업이 잘못될 경우 예상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11. 29> [전문개정 1996. 10. 28.]

제9조 (자율사업의 신청 등) ① 자율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시군등의 총괄부서,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읍·면동장과 사업예정지 관할의 시·군 등의 총괄부서가 자율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12. 1999. 11. 1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율사업신청서의 내용과 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견서(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포함한다.)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으로 한다.)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0조 (자율사업신청서의 제출기한) 자율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예정 년도내 사업추진가능 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수시로 신청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율사업신청서의 심사전 절차)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이 제9조제4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개정 1999. 11. 16>
2. 임업과 관련된 것은 산림조합 <개정 2000. 11. 27>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관 <신설 1997. 10. 29.>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 서류로써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외의 경우는 신청자별로 금액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전문개정 1996. 10. 28.]

제12조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 제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6> [전문개정 1996. 10. 28]

제13조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28 2000. 11. 27>

제14조 (자율사업신청서의 심사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작성 등) ①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에 따라 자율사업신청서를 심사하되, 지원신청금액이 제9조제4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되는 때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직원과 합동실무검토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군등의¹ 사업부서는 제1항의 심사결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자율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개정 1999. 11. 16>
2.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3.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4. 시도, 시군등 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5.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6.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7.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의 기록실적을 확인하여, 성실하게 기록한 신청자에게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성실하게 기록하지 아니한 자보다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8. 11. 12.>

④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전업농,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를 말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신청자에게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이수하지 아니한 자보다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1998. 11.12.>

⑤ 시·군 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8. 11.12.>

⑥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자율사업신청서를 시·군 농정심의회(자치구의 자치심의회기구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개정 1999. 11. 16>

[전문개정 1996. 10. 28.]

제15조 (시·군 농정심의회 의 공개심의 등) ① 시·군 농정심의회는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자율사업신청서를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농정심의회 의 의결로 정하는 자율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한다.

<개정 1997. 10. 29, 1998. 11.12., 1999. 11. 16>

② 시·군 농정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당해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 11. 16>

③ 시·군 농정심의회 의 구성원중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0조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0인이내로 시장·군수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심의회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개정 1999. 11. 16, 2002. 11. 29>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자율사업신청서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광역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공개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6조 (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월 28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16>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이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구의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7조 (시군등의 예산신청에 대한 시도의 심사 등) ①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도의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8. 11.12.>

1. 도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개정 1999. 11. 16>
2. 농림부 또는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또는 시도의 자체 자금지원계획

③ 시도의 총괄부서는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안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도 농정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6>

④ 도 농정심의회는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과 제1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1998. 11.12, 1999. 11. 16>

⑤ 시도의 총괄부서는 도 농정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6>

⑥ 시도의 총괄부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 또는 청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와 자금지원우선순위 확정내용을 시군등에 통지하고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어야 한다. <개정 1997. 10. 29.>

[전문개정 1996. 10. 28.]

제18조 (시도의 예산신청에 대한 농림부 또는 청의 심사) ①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개정 1999. 11. 16>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6. 10. 28.]

제19조 (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안(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작성되면 지체없이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로부터 시도 및 시군등의 예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자금지원 계획안을 수립하고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 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1997. 10. 29.>

[전문개정 1996. 10. 28.]

제20조 (정부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제21조 (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시도지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제22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과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확정권한이 시군등의 기관에 있는 경우는 당해 기관이 확정된 내용을 말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개정 1997. 10. 29.>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선순위자 <개정 1997. 10. 29.>

[전문개정 1996. 10. 28.]

제23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의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할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구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농업기반공사 지사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개정 2002. 11. 29.>

제24조 (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부로부터 제9조제4항에 정하는 금액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스스로 평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 12.>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제9조제4항에 정한 최저 금액미만으로서 1천 5백만원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장 공공사업 <개정 1996. 10. 28.>

제25조 (공공사업의 신청) ① 공공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등 또는 시도의 총괄부서,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등(이하 “융자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10조에 정한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행기관이 공공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0.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경제성·사업효과의 확산방안·사업준비상태 및 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의 총괄부서 또는 융자대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동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지침에 신청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26조 (공공사업신청서의 심사 및 예산 반영)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중 그의 소관에 속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도의 총괄부서가 시군등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중 그의 소관에 속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농림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③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총괄부서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중 그의 소관에 속하는 절차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에 반영(국고의 경우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개정 1998. 3. 9, 2002. 11. 29> [전문개정 1996. 10. 28.]

제27조 <삭제 1997. 10. 29.>

제28조 (준용규정) 제7조, 제8조(제2항제7호를 제외한다.),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 제1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이를 공공사업에 준용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중 “후계농업인의 자격요건”은 “경영능력”으로 하며, 제8조제2항제6호중 “선도농가”는 “우수사업자”로 하고, 제11조중 “제9조제1항 및 제3항”은 “제11조제3항”으로 하며, 준용규정중 “자율사업”은 “공공사업”으로,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은 “제3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자”로 한다.

<개정 1996. 10. 28, 1997. 10. 29, 2002. 11. 29>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개정 1996. 10. 28.>

제29조 (신규사업의 제안)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농림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과의 유사성
3. 경제성
4. 농업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개정 2002. 11. 29>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기대효과
7.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개정 2002. 11. 29>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0조 (신규사업의 선정요구) ①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29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타당성분석자료에 사업시행지침안을 붙여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의 소관사항은 자체 정책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요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1조 (신규사업의 채택 등) ①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개최일전 5일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그 사업시행지침을 포함한다.)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확정한다. <개정 1997. 10. 29. 2000.11. 27.>

②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협의한다.

<개정 1997. 10. 29.>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수정정보완지침에 따라 도 및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27.>

[전문개정 1996. 10. 28.]

제32조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례) 신규사업의 자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제안한 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의 채택을 확정된 날부터 2월이내에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5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제33조 < 삭제 1996. 10. 28. >

제34조 < 삭제 1996. 10. 28. >

제5장 보 칙 <개정 1996. 10. 28.>

제35조 < 삭제 1996. 10. 28. >

제36조 < 삭제 1996. 10. 28. >

제37조 < 삭제 1996. 10. 28. >

제38조 < 삭제 1996. 10. 28. >

제39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농림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읍자대행기관에 신청한 공공사업은 당해 읍자대행기관에 1차 관리책임이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업담당자는 분기별 1회이상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1.12.>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등은 지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2의 농림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⑤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⑥ 농림사업의 계획·집행·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부, 청, 시·도, 시·군 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을 표기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신설 1998. 11.12. 개정 2000.11. 27.>

제40조 (자금지원실적의 공개) 농림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등으로 하여금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 또는 농업인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 10. 29.>

제41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3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8. 11.12.>

부 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업이 이 훈령에 의한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요령에 의한 세부사업지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28.>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림사업분류표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농림수산사업지침심의위원회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1998.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8. 3. 9.>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1.12.>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 2의 규정을 1999.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9. 11.16.>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과 제41조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00. 1. 1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0. 11. 2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2. 21.>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2.1.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2. 11.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3.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별표1 : 제3조제2항 관련]

농림사업분류표

| 대분류 | 중분류 | 단위사업명 | |
|------------------------|--------------|----------------------|---|
| | | 자 율 | 공 공 |
| 합 계(69) | | (25) | (44) |
| 2.농업(식량작물) 구조개선(16) | | (5) | (11) |
| | 가.생산기반확충(11) | (2) | (9) |
| | | 영농규모화사업 토양개량사업 | 주요농작물원원종및원종생 산 농경지종합정비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농촌용수개발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지조성 지역특화사업 |
| | 나.농업기계화(3) | (2) | (1) |
| | | 농기계구입지원 농기계사후관리지원 | 농기계생산지원 |

*표는 농촌진흥청 소관사업임

| 대분류 | 중분류 | 단위사업명 | |
|------------------------|-------------------------|---|---|
| | | 자 율 | 공 공 |
| 3농업(원예·축산) 구조개선(20) | 다. 생산및유통개선(2) | (1)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 | (1) 협동조합합병지원 |
| | | (6) | (14) |
| | 가. 생산기반확충(1) | (1) 고품질우량종자개발 | |
| | 나. 사육기반확충(5) | (2) 사료사업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 (3) 축산가축계열화사업 한우사업지원 가축개량사업 |
| | 다. 원예 생산 및 유통 개선(10) | (3) 농산물표준규격화사업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농산물산지유통기반 확충사업 | (7) 농산물 유통시설지원 농수산물소비지유통 기 반확충 |

| 대분류 | 중분류 | 단위사업명 | |
|-----|-------------------|-------|---|
| | | 자 율 | 공 공 |
| | 라.축산물 생산및유통 개선(4) | | 농축산물자조금 조성지원 채소수급안정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 사업 농산물수출진흥사업 우수농수산물지원사업 (4) 축산물품질향상 축산물 유통개선사업 축산물 안전성 검사 및 경영안정 학교우유급식사업 |

| 대분류 | 중분류 | 단위사업명 | |
|------------|--------------------------------------|------------------------------------|---------------------------------------|
| | | 자 율 | 공 공 |
| 4.농촌개발(19) | 가.생산및유통개선(3) | (8) | (11) |
| | | (3) | |
| | | 친환경농업육성 농촌가공산업육성 사업 농업종합자금지원 | |
| | 나.기술개발 및 정보화(4) | (1) | (3) |
| | | 농업농촌정보화기반확충 | 농림기술개발사업 농촌활력화* 기술보급* |
| | | | |
| | 다.인력육성(3) | (1) | (2) |
| | | 후계농업인육성 | 농업인자녀지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
| | 라.소득보전(3) | | (3) |
| | | | 농업직접지불제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농가 도우미 지원 |
| 마.소득원개발(4) | (3) | (1) | |
| |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한계농지정비사업 농가경영안정지원 | | |
| | | 농공단지육성 | |

| 대분류 | 중분류 | 단위사업명 | |
|------------------------|---------------------|---|--|
| | | 자 율 | 공 공 |
| 5.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14) | 마. 생활환경개선(2) | (6) | (2)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
| | 가. 경영기반확충(4) | (2) 산림경영장비지원 영림계획 | (2) 사유림협업경영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 |
| | 나. 생산및유통개선(4) | (2) 임산소득증대 임산물 이용가공 및 보드류 시설지원 | (2) 산림조합육성 임산물유통개선지원 |
| | 다. 인력육성(2) | (1)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등 육성 | (1) 임업전문인력양성및임업 기술지도 |
| | 라. 산림복지 가능중진 (2) | | (2) 산림휴양공간조성및산림박 물관 등 조성 산촌종합개발 |
| | 마. 산림자원조성(2) | (1) 해외조림사업 | (1) 산림자원조성 |

[별표2 : 제39조제4항 관련]

농림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 | |
|---|--|
| 사 업 개 요 | |
| 이 사업은 2002년도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
| 1. 사 업 명 : | |
| 2. 사 업 자 : | |
| 3. 지원규모 : | |
| 4. 재 원 : | |
| 5. 사 업 비 : | |
| 6. 사업기간 : | |
| 사 업 자 ○ ○ ○ | |

↑
80
cm

← 110cm →

주)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란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명 및 관리책임자를 기재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업명 :
2. 사업자 :
3. 시설규모 :
4. 재원 :
5. 사업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30cm

21cm

다. 스티카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년에 정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2. 대 상

-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 등

< 예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 제외사업 ><신설 2002. 11. 29>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

4. 기 타

-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표시문안을 『이 사업은 2002년도 농(산)촌구조개선대책사업중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명시함

[별표3 : 제41조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개정 2002. 11. 29>

- 가.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인 법인
- 나.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영농조합 법인에 한함)
- 다.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 요소인 현물(농지, 시설 등)로 출자한 법인
- 라.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 마.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영농조합법에 한함)
-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당해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예 : 간이집하장, 포장센터, 한우 고기 전문판매점 등)
-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나환자촌안의 영농조합법인을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법인설립후)
- 아. 농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신설 2002. 11. 29>

2. 사업별 지원요건<개정 2002. 11. 29>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사업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읍·면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위임할 수 없음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라.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마.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농업법인에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바.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 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사업규모가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재무제표 징구

차. 사업규모가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와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미, 양, 가에 해당되는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 단,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용평가는 시·군 농협(농업분야), 축협(축산분야)에서 실시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의2제1항 관련]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작성요령

- 별도의 지침지시없이도 농업인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실시에 관하여 궁금해 하지 않을 정도로 분량에 제한없이 상세히 열거
- 일련번호는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단위사업의 순서를 대분류별, 중분류별로 자율사업 및 공공사업의 순서로 적음 (예)

| | |
|---|---------------|
| 1 | ○○○○○○사업 (자율) |
|---|---------------|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서식에 열거된 주요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항목을 변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
- 각 항목의 기재는 반개조식을 원칙으로 작성하되, 당해 항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요점적으로 정리하여 기재하고, 추상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는 “법인경영체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을 기재하여야 함

| | |
|----------|---------------|
| 일련 번호 | 단 위 사 업 명 ()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 (과장 ○○○, 사무관 ○○○)입니다.

1. 목적

2. 시책 및 추진방향

- * “6-바”에서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시책방향의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재

3. 근거법령(지원근거가 되는 법령의 관련조항을 법령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4. 연도별 지원계획

| 0구 분 | | '92- 년 | 년 | 년 | 년 (예산안) | 년 | -2004 |
|------------------|------------------------------|--------|---|---|------------|---|-------|
| 사업량 | | | | | | | |
| 사 업 비 율 | 계 | 백만원 | | | | | |
| | 보 조 용 자 지 방 비 자 부 담 | | | | | | |

1.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5. ○○년도 사업시행요령(○○년도는 사업예정년도를 말함)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배경, 지원대상자, 지원단가, 지원조건, 지원시설의 종류 등 사업의 세부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을 반개조식으로 기재

나. ○○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년도는 사업예정년도를 말함)

| 내용별 | 사업량 | 사 업 비 | | | | | 지방비 | 자부담 |
|-----|-----|-----------|----------------|-----|-----|--|-----|-----|
| | | 사업비 합계 | 예 산 액 (재원명 기재) | | | | | |
| | | | 계 | 보 조 | 용 자 | | | |
| 계 |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용자조건 : 연리 %, 년거치후 년상환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 * 신규사업의 경우 이 지침 시행후 새로이 신청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6의 가 내지 바”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그외의 경우는 < >항목자체를 삭제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명을 기재)

나. 사업담당부서(과단위까지 기재하고 농림부 및 청의 경우는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를 병행기재)

- 농림부(또는 ○○청) :
- 시도 :
- 시군자치구 :

다. 자금지원예정자(자율사업의 예와 같이 자금지원예정자가 다수인이어서 기재할 수 없거나 확정전에 발표하여 혼란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음)

라. 사업시행

-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사업비 집행방법,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기재
- * 대규모 지원시설 또는 첨단시설의 경우 시공자 자격기준, 시설설계, 계약절차, 공사감리, 준공검사 및 대금집행 방법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재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 사업비 수입재원과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검정할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
- *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 등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에 관한 서식, 사업비에 포함하는 비목의 범위, 검정 및 정산 사무처리절차, 기타 세부 필요사항을 상세하게 기재(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3항 내지 제8항 참조)
-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 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하도록 기재

바. 기타사항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정상운영되어 사업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체계 기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재 산 명 | 사후관리 기간 | | 처분제한 기준 | 비 고 |
|-------|---------|-----|---------|-----|
| | 부 터 | 까 지 | | |
| | | | | |

(주) 사후관리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정하되 가능한한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조치 (별지제7호서식의 작성요령 참조)<개정 2002. 11. 29>

나. 보고·기타

* 보고서식은 사무관리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의 지정 또는 수시보고의 심사를 받은 것에 한하며, 서식 위좌측 여백에 지정 또는 심사를 받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6. ○○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년도는 사업예정
년도의 다음년도를 말함)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사업신청서
를 제출할 기관명]

나. 신청자격

- * 농업인등의 선호가 높아 신청경쟁이 치열하여 탈락자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자격요건 강화조건을 반드시 기재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의 경우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1조 별표 3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맞도록 명시

○ 우선순위

- * 농림부장관(전업농,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이 따로 정하는 전문경영체에 대하여는 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반면,
- * 전문 경영체외의 생산자단체 등에게는 농업인등 보다 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함

○ 선정절차

- * 대형사업 및 첨단시설 설치사업등은 전문적이고 객관성있는 사업타당성 검토가 선행되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의 경우는 표준경영진단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사업성 검토내용 기재

바. 기타사항

-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의2제3항 관련]

200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각권별 제목]
총5권중 제0권

2000. 00. 00.

농림부

< 작성요령 >

○ 구성 : 총5권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편성

- 각권의 첫장에 일러두기를 기재(권별 수록내용, 문의기관 등)
- 각권내용의 차례(目次)를 전체권 공통순서로 하여 특정권만으로도 다른권에 수록된 내용목록을 알 수 있도록 함
- 각권의 쪽번호는 제1권부터 시작하여 제5권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함

[별지 제3호서식 : 제9조제1항 관련]

자 율 사 업 신 청 서

| | | | | | | | | |
|--|---------------------------|--|--------------------------|--------------|--------------------|-----|----------|-----|
| 신 청 자 |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 | | | | | | |
| | 성 명 (대표자명) | | 주민등록 번호 | | 전 화 () 번호 | | -) | |
| | 주 소 | | | | | | | |
| | 영농(림) 종사경력 | | 년 | 영농교육 | 분야, | | 월 | 주 |
| | 생산자단체등 의 형태 | |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 | 참여농가수 | | 호 | |
| 신 청 | 사 업 명 | | | | | | | |
| |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 | | | 농지이용계획 | | | |
| | | | | | 농업진흥지역안 | 지구 |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 지구 | | | |
| 내 용 | 사 업 비 (천 원) | | 계 |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 | | 지방비 | 자부담 |
| | | | | 국고계 | 보 조 | 융 자 | | |
| 사업내용별 규모(량) | | | | | | | | |
| <p>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p> <p style="margin-left: 40px;">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p> <p style="margin-left: 40px;">3.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p> | | | | | | | | |

-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지원사업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

1. 현황

| | | | | | | | | |
|--------------|--|--------|----------------|-------|---------------|----------|----|---|
| 영농규모 (ha) | | 논 | 밭 | 과수원 | 사료포 | 목초지 | | 계 |
| | 소유 | | | | | | | |
| | 임차 | | | | | | | |
| | 계 | | | | | | | |
| 재배현황 (ha) | 벼 | 사과 | 배 | 포도 | | | | 계 |
| | | | | | | | | |
| 시설현황 | 개별시설 | 관수시설 | | 저온저장고 | 일반저장고 | 선과기 | 기타 | |
| | | 관정: ha | | m' | m' | 대 | | |
| | | 점적관수: | | | | | | |
| | | 스프링클러: | | | | (톤) | | |
| | 공동시설 | 저온저장고 | 선과장 | 인공수분기 | 수송차량 | 교육장 | 기타 | |
| | | m' | 개소 (톤) | 식 | 대 (톤) | m' | | |
| | <p>(주) : 1. 선과기의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p> | | | | | | | |
| 기타사항 | | | | | | | | |

2. 사업계획

○ 사업명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 규격 | 단가 | 사업 량 | 사 업 비 | | | | | |
|------------------------------|-------|----|---------|-------|-------------|----|----|---------|----|
| | | | | 합계 | 정부지원(재원명기재) | | | 지방 비 | 자담 |
| | | | | | 계 | 보조 | 대출 | | |
| 계 | | | | | | | | | |
| 농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 자단 체등, 회사, 기타 | 공동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세부사업명 | 1/4분기 | 2/4 | 3/4 | 4/4 |
|-------|-------|-----|-----|-----|
| ○○○○○ | | | | |
| ○○○○○ | | | | |
| ○○○○○ | | | | |

* “ ←→ ”로 표시

< 작성요령 >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 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275-0052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제9조제4항 관련]

대출신청자료

1. 신청자

| | | | | | | | |
|---------------|----------|---------------|-----------------|------|----------|-----|----|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 | 참여자수 | | | |
| 성명 (대표자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 | |
| 주소 | | | | | | | |
| 신청내용 | 사업명 | 사업비 (천원) | | | | | |
| | 사업 규모 | 합계 |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 | | 지방비 | 자담 |
| | | | 계 | 보조 | 융자 | | |
| 사업 예정지 | | | | | | | |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금 현황 | | | 융자금 현황 | | | |
|-------|------|----|--------|-----|------|----|
| 기관명 | 예금종류 | 금액 | 기관명 | 대출일 | 상환기일 | 금액 |
| | | | | | | |

3. 담보물(재산) 현황

| 소재지 | 종별 | 면적 (㎡) | 소유자 | 신청자와 의 관계 | 예상 평가액 (백만원) |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
|-----|----|-----------|-----|--------------|--------------------|----------------------|----------------------|
| | | | | | | | |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275-00611일
1997. 11. 7. 승인

297mm × 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제12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 | | | | | | |
|--------------|-----------|------------|-----------|----|-----|----|
| 생산자단체등의명칭 | 생산자단체등의형태 | 참여자수 | | | | |
| 성명 (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 | |
| 주소 | | | | | | |
| 신청내용 | 사업명 | 사 업 비 (천원) | | | | |
| | 사업규모 | 합계 | 정부지원(재원명) | | 지방비 | 자담 |
| | | | 계 | 보조 | | |
| 사업예정지 | | | | | | |

2. 농지이용계획

| | | | |
|---------|----|---------|----|
| 농업진흥지역안 | | 농업진흥지역밖 | |
| 구역 | 지구 | 구역 | 지구 |
| | | | |

3. 사업검토

| 구분 | | 평가 | | | 검토의견 |
|------|---|----|---|---|------|
| | | 상 | 중 | 하 | |
| 사업능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경력 ○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 영농규모 | | | | |
| 사업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전망 | | | | |
| 입지여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이용계획 ○ 생산 또는 원료조달 ○ 용수 ○ 전력 | | | | |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장 (인)

275-007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제13조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 | | | | | | | |
|--------------------|-----------------|----|-------------|-----|-----|----------|----------|
| 주 소 | | | | | | 전화 번호 | () - |
|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 | | |
| 신청사업명 | | | | | | | |
| 소요사업비 | 총액 | 천원 | 보 조 | 대 출 | 자 담 |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 과거 1년간 연체사실 | | |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 | 신용상태 | | |
|-------------|---|-------------------|--------------|---|------|----|----|
| 유 | 무 |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 유 | 무 | 양호 | 보통 | 불량 |
| | | | | | | | |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 대출구분 |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천원 | 담보물소제지 | 소유자(관계) |
|-----------------------------|------|----|-------------|--------|---------|
|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 | | | |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협동조합장 (인)
 ()시군지부장 (인)

275-008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제24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 | |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 성명 또는 명 칭 |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2. 일반현황(년 월말 현재)

| | | | | | | |
|-----------|---|-----|------|------|-------|--------|
| 경영규모 |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 | | | | |
| 자금조달 | 연도 | 계 | 국고보조 | 국고융자 | 지방비보조 | 자부담·기타 |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부 동 산 보 유 | 토지계 | 논 | 밭 | 과수원 | 임야 | 대지·기타 |
| | m ² | | | | | |
| | 건물계 | 창고류 | 공장류 | 축사류 | 주택 | 기 타 |
| | | | | | | |
| 기타주요 자산보유 |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 | | | | |

3. 월별경영수지(년 월분)

| 일자 | 수 입 | | | 지 출 | | | 잔 액 (천 원) |
|----|------|----|--------|------|----|--------|--------------|
| | 수입내용 | 수량 | 금액(천원) | 지출내용 | 수량 | 금액(천원)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13 | | | | | | | |
| 14 | | | | | | | |
| 15 | | | | | | | |
| 16 | | | | | | | |
| 17 | | | | | | | |
| 18 | | | | | | | |
| 19 | | | | | | | |
| 20 | | | | | | | |
| 21 | | | | | | | |
| 22 | | | | | | | |
| 23 | | | | | | | |
| 24 | | | | | | | |
| 25 | | | | | | | |
| 26 | | | | | | | |
| 27 | | | | | | | |
| 28 | | | | | | | |
| 29 | | | | | | | |
| 30 | | | | | | | |
| 31 | | | | | | | |
| 월계 | | | | | | | |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부 작성

4. 경영성과(-)

| 구분 | 내 용 | 수 량 | 금 액(천원) | 비 고 |
|----|---------------|-----|---------|-----|
| 수입 | 주 산 물 | | | |
| | 부 산 물 | | | |
| | 계(A) | | | |
| 지출 | 종자(묘)대 | | | |
| | 농약 및 비료대 | | | |
| | 원료구입비 | | | |
| | 전기료 및 유류대 | | | |
| | 기타 제재료비 | | | |
| | 小농구 구입비 | | | |
| | 소가축 구입비 | | | |
| | 인 건 비 | | | |
| | 수 리 비 | | | |
| | 농기계사용료 | | | |
| |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 | | |
| | 토지임차료 | | | |
| |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 | | |
| | 농기계 감가상각비 | | | |
| | 차입금이자 | | | |
| | 자본용역비 | | | |
| | 기타비용 | | | |
| | 계 (B) | | | |
| 손익 | A → B | | | |

275-0093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증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부에 의함(가계비는 의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팽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의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개정 2002. 11. 29>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 기준내용년수 |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
|--|--------|-------------------|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 4년 | 3년-5년 |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물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 20년 | 15년-25년 |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 40년 | 30년-50년 |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 적용대상자산 | 기준내용년수 |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
|--|--------|-------------------|
|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 4년 | 3년-5년 |
|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8년 | 6년-10년 |
| 농업중 과수 | 16년 | 12년-20년 |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8호서식 : 제24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 월일 | 수 입 | | 지 출 | | | 잔 액 (천원) |
|------|------|----|--------|------|----|-------------|
| | 수입내용 | 수량 | 금액(천원) | 지출내용 | 수량 | |
| 월 1일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21 | | | | | | |
| 22 | | | | | | |
| 23 | | | | | | |
| 24 | | | | | | |
| 25 | | | | | | |
| 26 | | | | | | |
| 27 | | | | | | |
| 28 | | | | | | |
| 29 | | | | | | |
| 30 | | | | | | |
| 31 | | | | | | |
| 월계 | | | | | | |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275-010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여 백

IV. 농림사업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

(농림부 훈령 제 1120호)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1996. 6. 13.]
[훈령 제862호 제정]

개정 1996. 8. 8. 훈령 제864호

개정 1996. 10. 19. 훈령 제875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912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932호

개정 1998. 7. 23. 훈령 제 948호

개정 1998. 12. 19. 훈령 제 967호

개정 1999. 11. 8. 훈령 제 1002호

개정 2000. 11. 13. 훈령 제 1049호

개정 2002. 11. 20. 훈령 제 1120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8. 8.>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8. 8.>

1. “농림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 8. 8, 1996. 10. 19, 1997. 10. 29.>
2.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및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동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과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96. 8. 8, 1997. 10. 29, 2000. 11. 13, 2002.11.20>

3. “지원”이라 함은 용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용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 (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 처리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9.>
5.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6. “사업자금과”라 함은 농림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 기관(직제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1998. 3. 9.>
7.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개정 1996. 10. 19.>
8.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9.>
9.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 8. 8.>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다만, 농업경영종합자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6. 8. 8, 1997. 10. 29, 1999. 11. 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의2,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8>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1997. 10. 29.>

②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 10. 29, 1998. 7. 23, 1999. 11. 8>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 실적이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개정 1996. 8. 8, 1997. 10. 29.>

③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98. 7. 23.>

④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8>

⑤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 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신설 1998. 7. 23.>

다만,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을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신설 2002.11.20.>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을 제외한다.)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당해 증빙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신설 1998. 7. 23.>

⑦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 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 7. 23, 1999. 11. 8>

⑧ 제7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다.<신설 1998. 7. 23.>

⑨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 11. 8>

제5조 (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자금중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다른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당해 특례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이하 “예산과”라 한다.)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② 예산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조 (용자 조건의 결정) ① 용자 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용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는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 및 예산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용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제7조 (용자의 방법) ① 용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용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개정 1996. 8. 8, 1996, 10. 19, 1997. 10. 29, 2000. 11. 13>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재대여한다.<개정 1997. 10. 29, 1999. 11. 8, 2000. 11. 13>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신설 1997. 10. 29.>

제7조의2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는 매 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당해 시·군·등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년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8>

제7조의3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 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군·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8>

④ 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8>

⑤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중 “시군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개정 1999. 11. 8>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후에도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매 월 2회 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7. 10. 29.>

제8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로부터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당해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 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 7. 23.>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 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전에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당해회계년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 9, 1998. 7. 23, 1999. 11. 8>

⑥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8>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 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7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 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 10. 29.>

제9조 <삭제 1997. 10. 29.>

제10조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 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8.12.19., 2002. 11. 20>

1.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 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 11. 20>
2. 사업지원과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8월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 11. 20>
3. 사업지원과는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당해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2. 11. 20>
4.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에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2. 11. 20>
 - ② 대출취급기관은 용자한도액중 당해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2002. 11. 20>
 -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2002. 11. 20>
 -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8. 12. 19>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한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 11. 20>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 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 11. 20>

⑤ 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1997. 10. 29.>

제11조 (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0. 29.>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제12조 (여신관리계획의 운용) <삭제 1999. 11. 8>

제13조 (보조금의 집행) ①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 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 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전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1998. 7. 23.>

③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98. 7. 23.>

⑤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중 “융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7조의2제3항중 “대출”은 “지급”으로 하며, 제7조의3제2항중 “농협중앙회등”을 삭제한다. <신설 1997. 10. 29.>

제14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1호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통지를 제외한다.)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아니하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 10. 29, 1997. 12. 30, 1998. 7. 23.>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 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개정 1996. 8. 8, 1997. 10. 29.>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부도, 폐업, 사업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1997. 10. 29, 1998. 3. 9.>
5.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개정 1998. 7. 23.>

② 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 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 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98. 7. 23.>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신설 1998. 7. 23.>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 또는 의도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 사용의 개시일(다만, 부당 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신설 1998. 7. 2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신설 1998. 7. 23.>

③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수시(사업이 완료되지 전까지는 매 분기를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8. 7. 23.>

제15조 (부당 사용에 따른 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부당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8. 7. 23, 1999. 11. 8>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 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이 당해 대출금을 회수한 날(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의 상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대여금의 상환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 7. 23, 1999. 11. 8>

1.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매 분기 말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제14조제1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 10. 29, 1997. 12. 30, 1998. 7. 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사용의 경우 제14조제1항 단서·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중 “대출금”은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중 “대출”은 “보조”로 하며, 준용 규정(제14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중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7. 12. 30, 1998. 7. 23, 1999. 11. 8>

제16조 (지원의 제한)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당해 인(생산자단체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본다.)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10. 29, 1997. 12. 30, 1998. 7. 23.>

1.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사용금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당해 사업비 지원액에 대한 부당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부당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때 : 5년(다만,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98. 7. 23.>
2.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때 : 3년<개정 1998. 7. 23.>
3.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인 때 : 2년<개정 1998. 7. 23.>
4.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때 : 1년<개정 1998. 7. 23.>

② 2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년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해 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8. 7. 23.>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부당사용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 및 보조금의 금액은 대출금 및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1998. 7. 23.>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7. 12. 30.>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개정 1998. 7. 23.>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확인한 날

⑥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원제한기간을 기산한다.<신설 1998. 7. 23.>

⑦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 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해 인·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 및 농림부장관(투자심사담당관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0, 1998. 7. 23.>

제17조 <삭제 1997. 10. 29.>

제18조 (보칙) ①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등(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 기타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 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1997. 10. 29, 2000. 11. 13.>

② 사업자금과는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 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 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신설 1997. 10. 29.>

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신설 1997. 10. 29.>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 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설 1997. 10. 29.>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 8. 1.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과 부칙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6. 8. 1. 이후에 확인한 것부터, 제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개별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도 사업자금 예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 1996. 8. 8.>

②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34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 8. 8.>

제27조 및 제40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③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평가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25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 8. 8.>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경과조치) 농특회계용자업무지침(금융 45160-5, 1995. 1. 1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1-나”중 “용자종결기한까지”를 삭제한다.

“Ⅱ-2-바”를 삭제한다.

⑤ (경과조치) 1996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주관기관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지원과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개정 1996. 8.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은 1997년도 사업자금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Ⅲ-4-(2)” 단서중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수·축·임·삼협중앙회(회원조합 포함)인 경우 및 사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하는”을 삭제한다.

“Ⅲ-4-(7)”중 “이자 회수 시기를 대출 기한 내에서”를 “이자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3조 (경과 조치) 산림개발기금융자업무지침(산림청 일정 51060-302, '96. 8. 19.)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훈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100분의 20 이하”를 “100분의 20 미만”으로, “2억원 이하”를 “2억원 미만”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과의 의견을 받아 처리한다”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요구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훈령의 개정)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4-(4)”중 “- 이월된 사업의 융자 예산의 경우 계상 년도는 당초 계상 년도가 아니고 이월된 연도로 본다.”를 삭제한다.

부 칙 <개정 1997. 12. 30.>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1998. 3. 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7. 23.>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2. 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98회계연도의 대여된 융자금은 제1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3월 31일까지 대출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9. 11 . 8 >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훈령 제12조에 의한 신규사업에 대한 여신관리계좌 운영은 1999. 12. 31일까지 운영하고, 2000년.1.1부터 폐지한다. 다만, 19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운영은 농림부 훈령967호('98.12.19)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운영하며, 1999년 12월 31일까지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이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때에는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0. 11 . 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1. 20.>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대출마감일 연장기한 및 재연장 기한은 2002년 이후 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제7조의3제2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배분 통지서 (사업지원과 용)

수신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사업자금관리자,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발신 : 사업지원과

| 접수 확인 일 | 소속 및 부서 | 직 급 | 성 명 |
|---------------|----------|------------------|-------|
| 19 | 확인자 | 농림부(또는청)○○과 | ○○○○ |
| | 피확 인자 | 사업주관기관(또는사·도)○○과 | . . . |

| | | | |
|---------------------------|---|-------------------|---------------------------|
| 1. 사업 명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 | |
| 2. 연간예산액 | ① 천원 | | 이미 배정 : ② 천원 |
| 3. 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 19 | 4. 事業資金課 의 배정액 | 이런 배정 : ③ 천원 (3의 배정일분) |
| 5. 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 19 | | 미 배 정 : ④ 천원 |
| 6.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별 재배분액 명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⑤ 천원 |

(주) ○ ①=②+③+④, ③=③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1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자료출처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3

[별지 제2호서식 : 제7조의3제3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재배분 통지서 (시도 용)

수신 : ○○시·군·자치구

발신 : ○○시도

| | | | |
|---------------------|-----------------|------|-----|
| 접수 확인 일 19 | 소속 및 부서 | 직 급 | 성 명 |
| | 확인자 ○○시도 ○○과 | ○○○○ | ○○○ |
| 피확 인자 | ○○시·군·자치구 ○○과 | · | · |
| | · | · | · |

| | | | | |
|---------------------|--|-------------------|-------------------|------|
| 1. 사 업 명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 | | |
| 2. 연간예산액 | ① 천원 | 4. 事業資金課 의 배정액 | 이미 배정 : ② 천원 | |
| 3. 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 19 | | 이번 배정 (3월 배정일) | ③ 천원 |
| 5. 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 19 | | 미 배 정 : | ④ 천원 |
| 6. 시 도 의 재 배 분 일 | 19 | | | |
| 7. 시·군·자치구별 재배분액 명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①=②+③+④, ③=④ **합계 : ①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시·군·자치구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시도는 시·군·자치구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2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자료출처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3

[별지 제4호서식 : 제8조제6항 관련]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 대출취급기관

수신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발신 : 사업주관기관

| | | | |
|---------------------|---------|--------------------------|-------|
| 접수 확인 일 19 | 소속 및 부서 | 직 급 | 성 명 |
| | 확인자 | ○○사군·자치구○○과 ○○조합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명 | 주 소 | 성 명 | 연 간 예산액 (천원) | 사업자 금과의 융자한 도액 배정일 | 사업자 금과의 융자한 도액 배정일 | 시도의 융자한 도액 재배 분 일 | 시도의 융자한 도액 재배 분 일 | 대출 예정금액 | |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 |
|-------------|-----|-----|--------------------|--------------------------------|--------------------------------|-------------------------------|-------------------------------|-----------|--------------|----------------|----------|
| | | | | | | | | 확정일 | 확정금액 (천원) | 금 액 (천원) | 반납 기한 |
| ○○○○ 사 업 | | 김삿갓 | 10,000,000 | '98. 5.20. | '98. 5.21. | '98. 5.22. | '98. 5.23. | 5,000,000 | 5,000,000 | '98. 7. 3. | 사업포기 |
| ○○○○ 사 업 | | 김개동 | 500,000 | '98. 7.21. | '98. 7.22. | '98. 7.23. | '98. 7.24. | 100,000 | 80,000 | '98. 10. 5. | 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주) ○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 난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4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제10조제1항 관련]

(사업자금명)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수신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주관기관

| 접수확인 (19. . . .) | 확인 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
|---------------------|----------|-------------|-----|-----|
| | 피확 인자 | ○○조합 ○○부서 | | |
| | | ○○중앙회 ○○과 | | |
| | | 사업자금관리자 ○○과 | | |

발신 : 대출취급기관

| | | | | |
|---|---|----|-------------------|--------------------------|
| 1. 사업명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 | | |
| 2. 연간예산액 | ① | 천원 | 4. 事業資金課 의 배정액 | 이미 배정 : ② 천원 |
| 3. 事業資金課 의 배정액 | 19 | | | 이번 배정 (3의 배정액) : ③ 천원 |
| 5. 事業支援課 의 배분액 | 19 | | | 미배정 : ④ 천원 |
| 6. 시·도·의 재 배분액 | 19 | | | |
| 7. 대출예정금액 확정액 | 19 | | | |
| 8.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 | | ⑤ | 천원 |
| 9.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명세(사업주관기관외의 기관에 통지할 경우는 생략 가능) | | | | |
| ○○면 : 김삿갓 10,000천원, 홍길동 20,000, | | | | |
| ○○동 : 김개동 15,000천원, 박문수 1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①=②+③+④ | | | ⑤=⑥ | 합계 : ⑥ 천원 |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농·축·임·삼협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5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용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 | | | | | | |
|--|---|---|-------------------------|----|---|---|
| 주소 | 시 | 시 | 읍 | 번지 | 통 | 반 |
| | 도 | 군 | 면 | | | |
| | | 구 | 동 | | | |
| 성명 또는 명칭 | |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p>1900. 00. 00.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 한 바 있는 0000 사업의 용자한도액 00,000,000천원중 00,000,000천원 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업 주 관 기 관 의 장) (직인)</p> | | | | | | |

275-016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V.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1. 영농규모화사업 | | | |
| ○ 관리지침운영 | ○ 영농규모화사업 지침과 쌀전업농육성지침으로 이원화 | ○ 영농규모화사업지침으로 일원화 - 쌀전업농 별도선정 생략 → 지원대상자 직접 선정 | ○ 행정 간소화 및 선정후 장기 미지원 사례 방지 |
| ○ 매매사업제외농지 | ○ 공사에서 지원한 농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 | ○ 공사 지원 농지중 경영주가 사망·은퇴·전업하는 경우 등은 매입가능 | ○ 대상농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한 완화 |
| ○ 매매사업 지원대상 | ○ 65세이상 농업인 제외 (후계인력이 있는 경우 지원) | ○ 61세이상 농업인 제외 (후계인력이 있는 경우 지원) | ○ 매매사업은 청장년 위주로 추진(61세이상은 임대차 지원) |
| ○ 매매사업 지원한도 | ○ 기존 소유농지 포함 5ha (자력확대 실적이 있는 경우 등은 10ha) | ○ 기존 소유농지 포함 10ha(공사선정 우수경영체로서 자력확대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금액 이상 조기 상환자는 15ha) | ○ 규모화 촉진을 위해 지원한도 상향조정 및 자력확대 농가, 우수경영체 우선 지원 |
| ○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 연중 수시 신청받아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비교 평가 없이 공사단독으로 대상자 선정) | ○ 일정기간내 신청자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군과 협의하여 대상자 선정 | ○ 우수경영체 지원을 위해 신청자간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신청기간 설정 ○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
| ○ 일반농가지원 | ○ 3ha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선정 기준 없음) | ○ 2ha이상 농가중 영농경력·경영능력 등 평가결과 600점이상인 자 지원 - 후계농업인, 농과계 출신자는 1ha이상 (승계확인 농지 포함) | ○ 쌀전업농 선정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농가중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시 기준 신설(쌀전업농선정 기준 보완 적용)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우선순위 ○ 매매자금상환기간 및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쌀품평회 입상자, 품질인증 농가 ②2~3ha 규모농가 ③자력으로 규모확대한 농가 ○연령구분없이 20년 균분상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2~5ha 규모농가 ②자력으로 0.3ha이상 규모확대한 농가 ③쌀품평회 입상자, 품질인증 농가 ○연령에 따라 기간 차등화 -40세이하 : 30년 -41~55세이하 : 20년 -56~60세이하 : 15년 -60세이상 : 10년 ○초기 자금부담이 과중한 경우, 후계농업인 등은 2년거치후 균분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택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ha 농가 집중지원 및 자력 확대 유도 ○자금상환 능력을 감안하여 상환조건 차등화(61세이상은 후계인력 있는 경우만 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체별지원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대별로 구분한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 -평야 : 10ha(법인20) -중간 : 7ha(법인10) -산간 : 3ha(법인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에서 지대별 특성, 경영형태(벼단작, 복합경영 등), 소득수준 등에 따른 적정지원 수준 설정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경영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특정한 편중 지원 방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농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이외 타직업 종사시 사업 취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영농하고 시장·군수가 영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겸업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소득확보 기회 부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농지 관리 ○ 목표설정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 및 사업장소 변경시 시장·군수 승인 ○지원농지에 타작물 재배 제한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 및 사업장소 변경시 공사에 통지 ○논의 형상을 유지할 경우 타작물 재배 허용 ○지원 농가의 50%이상 3ha, 30%이상 5ha이상 농가가 되도록 도분부별, 지사별 목표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절차 간소화 ○쌀수급상황 등 감안한시적으로 허용 ○3ha이상 농가 출현 촉진을 위해 공사사장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관리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2.토양개량 ○ 토양개량제 공급 기본계획 수립 | (신설) | ○ 마을이장 등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서명 날인 | ○ 마을이장 등을 통한 신청주의 추진으로 경작자가 공동살포 등에 참여 |
| ○ 토양개량제살포 | (신설) | ○ 공동살포를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인센티브 부여 | ○ 지역농협주관 공동살포를 활성화하기 위함 |
| ○ 객토사업 목적 | ○ 사질논 등 저위생산지 와 휴·폐광산주변 오염농경지 개량으로 농업생산성 제고 및 농산물의 품질향상 도모 | ○ 휴·폐광산주변 오염농경지, 토양유실이 많은 경사지, 고랭지 등 취약농경지의 물리·화학적 개선으로 안전농산물생산 및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 ○ 사업 대상지를 사질논 등 저위생산지의 농업생산성 제고에서, 오염농경지, 경사지 등 취약농경지 물리·화학적 개선으로 안전농산물생산 및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으로 변경 |
| ○ 객토사업 시책방향 | ○ 사질논 등 점질력이 낮아 생산력이 떨어지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점토함량15%(논18cm, 밭15cm 깊이까지)가 되도록 객토 실시 | ○ 오염농경지, 경사지, 고랭지 및 연작피해지 등 토양의 물리·화학적 개선이 필요한 농경지에 점토함량15%(논18cm, 밭15cm 깊이까지)가 되도록 객토 실시 | ○ 사업량 축소로 최소한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논 위주의 합배미객토는 제외함 |
| ○ 객토지원대상 농지 | ○ 사질논·밭 등 생산력이 낮은 농지와 소규모 합배미지역 - 일반객토 - 합배미객토 | ○ 오염농경지, 경사지, 고랭지 등 물리·화학적 개선이 필요한 취약 농경지 - 일반객토 |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4.농경지종합정비 ①발기반정비 2.시책 및 추진방향</p> <p>5. 2003년도 사업시 행요령 <사업대상지구선정> 가.일반선정기준</p> <p>[별표1] 차등보조율적용 대상 지자체</p> | <p>○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밭3ha이상, 과수원 5ha이상)</p> <p>(신설)</p> <p>○'98~2000기간중 조사 한 발기반정비 대상지 에 포함된 지역</p> <p>○국고보조율 인하 해당 지자체 - 8개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 산, 고양, 과천, 용인</p> <p>○국고보조율 인상 해당 지자체 - 33개 시군 · 충북(1) : 보은 · 충남(1) : 청양 · 전북(6) : 진안,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장수 · 전남(13) : 곡성, 구례, 장흥, 강진, 신안, 보성, 함평, 완도, 고흥, 진도, 해남, 무안, 담양 · 경북(7) : 의성, 영양, 봉 화, 청송, 예천, 군위, 상주 · 경남(5) : 산청, 함양, 의 령, 함천, 남해</p> | <p>○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30ha이상의 우량지 구 우선 추진)</p> <p>○마늘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마늘주산단지내의 발기 반정비 대상지구 우선 선정</p> <p>○'01~'02기간중 조사한 발기반정비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p> <p>○국고보조율 인하 해당 지자체 <'03마무리> :현행(2002)과 같음 <'03착수> :현행(2002)과 같음</p> <p>○국고보조율 인상 해당 지자체 <'03마무리> :현행(2002)과 같음 <'03착수>: 33개 시군 · 충북(1) : 보은 · 충남(1) : 청양 · 전북(7) :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장수 · 전남(13) : 곡성, 구례, 장흥, 강진, 신안, 보성, 함평, 완도, 고흥, 진도, 해남, 무안, 담양 · 경북(7) : 의성, 영양, 봉 화, 청송, 예천, 군위, 상주 · 경남(4) : 산청, 함양, 의 령, 함천</p> | <p>○우량농지중심의 발기반 정비 추진으로 투자 효과 극대화</p> <p>○마늘산업종합대책에 따 라 마늘생산기반정비 대상지구 우선 정비</p> <p>○발기반 정비수준별 실 태조사('01.9~'02.5)에 따라 조정</p> <p>○'02년 행정자치부의 보 통교부세 불교부 기초 자치단체 선정 결과에 따름</p> <p>○'00-'02기간중의 지방재 정력지수와 농지면적, 농업인구 등을 감안한 농업지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기초자치단체별 차등지수산정 결과에 따름</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별표1] 차등보조율적용 대상 지자체</p> | <p>○ 국고보조율 인하 해당 지자체 - 8개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 산, 고양, 과천, 용인</p> <p>○ 국고보조율 인상 해당 지자체 - 33개 시군 · 충북(1) : 보은 · 충남(1) : 청양 · 전북(6) : 진안,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장 수 · 전남(13) : 곡성, 구례, 장 흥, 강진, 신안, 보성, 함평, 완도, 고흥, 진도, 해남, 무 안, 담양 · 경북(7) : 의성, 영양, 봉 화, 청송, 예천, 군위, 상주 · 경남(5) : 산청, 함양, 의 령, 함천, 남해</p> | <p>○ 국고보조율 인하 해당 지자체 <'03마무리>: 현행(2002)과 같음 <'03착수>: 현행(2002)과 같음</p> <p>○ 국고보조율 인상 해당 지자체 <'03마무리>: 현행(2002)과 같음 <'03착수>: 33개 시군 · 충북(1) : 보은 · 충남(1) : 청양 · 전북(7) :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장수 · 전남(13) : 곡성, 구례, 장 흥, 강진, 신안, 보성, 함평, 완 도, 고흥, 진도, 해남, 무안, 담양 · 경북(7) : 의성, 영양, 봉 화, 청송, 예천, 군위, 상주 · 경남(4) : 산청, 함양, 의 령, 함천</p> | <p>○ '02년 행정자치부의 보통 교부세 불교부 기초자치 단체 선정 결과에 따름</p> <p>○ '00-'02기간중의 지방 재정력지수와 농지 면적, 농업인구 등을 감안한 농업지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기초자치단체별 차등지수산정 결과에 따름</p> |
| <p>②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 5.2008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p> | <p>○ 포장규모 : 경작로 폭 4m이상의 경작로를 폭 3m기준으로 포장</p> | <p>○ 포장규모 : 노폭 4~7m 규모의 경작로를 폭 3~5m로 포장 - 포장면적 3,000㎡이상 · 포장폭 3m, 1km이상 · 포장폭 4m, 0.75km 이상 · 포장폭 5m, 0.60km 이상 ※ 실적계산시에는 3m기준으로 1km 에 해당하는 면적 으로 환산계상</p> | <p>○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역의 농로가 4~7m인 점을 감안하여, 농로기능에 부합 되도록 포장폭 다양화</p> <p>-사업비 지원 범위내에서 현지에 맞게 포장 (3,000㎡당 104백만원)</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사업대상지구선정> 가.일반선정기준</p> | <p>○사업시행예정자는 예정 지조사시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기본조사지구 를 선정하여야 한다</p> <p>(신설)</p> | <p>○사업시행예정자는 예정 지조사시 다음사항을 검토하여야하며, 지구 단위 포장계획 연장이 3,000m²((가)항 사업내 용 참고)이상인 지구 선정</p> <p>※포장계획연장이 3,000 m²미만인 소규모지구 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 자체사업으로 추 진하여야함</p> | <p>○소규모 분산투자로 인 한 투자효과저하 방지</p> |
| <p><사업시행> 가.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p> | <p>(신설)</p> | <p>(2)지구단위 포장계획연 장이 3,000m²이상인 지 구 대상</p> | <p>○소규모 분산투자로 인 한 투자효과저하 방지</p> |
| <p>5.경지정리 1. 목적</p> | <p>○과거 경지정리된 평야 부 우량농지중 구획이 작거나 기반시설이 미 흡한 지역을 대형농기 계영농에 알맞도록 재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대구획경지정리)</p> | <p>○과거 경지정리된 평야 부 우량농지중 구획이 작거나 기반시설이 미 흡한 지역및과거에 경 지정리를 하지 않은 지역중 집단화된 농지 가 100ha이상인 지역 을 대형농기계영농에 알맞도록정비하여 농 업경쟁력 제고</p> | <p>○집단화된 지구는 대구 획화 위주로 추진방향 보완</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2. 시책 및 추진방향 | <p>○ 일반경지정리는 논면적 1,149천ha중 800천ha에 대하여 우선 추진</p> <p>- 농업진흥지역이거나 경지정리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에 실시</p> <p>· 2001봄까지 논면적 1,149천ha의 62%인 709천ha완료</p> <p>· 2002봄에 6천ha(구역 7천ha) 완료, 가을작수 3천ha(구역 3천ha)</p> <p>· 시행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하여 쌀자급기반 유지</p> <p>○ 대구획경지재정리는 기반정비가 미흡한 200천ha를 재정비</p> <p>-2001봄까지 79천ha(40%) 완료</p> <p>-2002봄에 3.5천ha(구역) 완료, 가을작수 3.5천ha(구역) (신설)</p> | <p>○ 일반경지정리는 논면적 1,146중 800천ha를 목표로 추진</p> <p>- <삭제></p> <p>· 2002봄까지 논면적 1,146천ha의 62%인 716천ha완료</p> <p>· 2003봄에 3천ha완료, 가을작수(안) 1천ha</p> <p>· 2003가을작수이후부터는 농업진흥지역내 잔여대상중 농지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30ha이상 우량농지 위주로 우선추진하고, 100ha이상 집단화된 지구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p> <p>○ 대구획경지정리는 과거에 경지정리된 지역중 기반정비가 미흡한 200천ha 및 일반경지정리대상중 100ha이상 집단화된 지구에 대하여 정비</p> <p>-2002봄까지 83천ha(42%) 완료</p> <p>-2003봄에 3.5천ha완료, 가을작수(안) 3천ha</p> <p>-2003가을작수이후부터는 '70년대이전에 경지정리되어 필지규모, 농로가 협소 용배수로 겸용 등 영농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100천ha 및 일반경지정리대상중 100ha이상 집단화된지구를 우선하여 추진</p> <p>※ 잔여지역 100천ha는 2단계로추진</p> | <p>○ 농업생산기반정비중장기계획('02.5)에 의거 2003이후 추진방향 재정립 반영</p> <p>○ '03일반경지정리 예산규모 축소 등을 감안, 집단화된 지구 위주로 개발토록 추진방향 재정립</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5.사업시행요령 <추진체계> 라. 사업시행 (1)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예정자(시장, 군수, 농업기반공사 사장)는 예정지에 대한 사업 -시행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경우, 농지상태와 영농불편사항, 주민 의견 등에 대한 답사보고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예정자(시장, 군수, 농업기반공사 사장)는 예정지에 대한 사업 시행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경우, 농지상태와 영농불편사항, 주민호응도 비율, 지방비 부담능력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과정에서 지구변경 등이 없도록 사업 신청요건 강화 |
| (3)기본조사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조사자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조사를 실시함 - 현지조사시 영농불편사항(용·배수로, 농로 등)과 집단환지선호, 대구획화 실효성, 사전환지, 농지감보, 농업진흥지역편입 등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조사하고, 대구획경지정리의 경우에는 개발유형별구역을 정함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조사자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조사를 실시함 - 현지조사시 영농불편사항(용·배수로, 농로 등)과 집단환지선호, 대구획화 실효성, 사전환지, 농지감보, 농업진흥지역편입 등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조사하고, 대구획경지정리의 경우에는 개발유형별구역을 정하되, 가능한 집단화행, 시설개량형 비율을 확대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하고 사업비를 최소화하여야함 - 장래의 규모화, 기계화 영농을 고려하여 필지 규모는 대구획 수준으로 하고, 경사도 등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필지 규모를 다양화하고 이동토량최소화로 정지공사비 절감방안을 강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기반정비중장기계획에 의거 사업비 절감 및 효율성 제고 |
| (9)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 공사감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감리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감리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수행 지침서('02.10)에 의거 감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사업시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지역의 공사감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토록하여 사업효율성제고 및 민원예방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6.배수개선 5.2003년도사업시행 요령 <사업계획 수립· 시행> 가.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예정지 신청 | (1) (신설) | (1) ○농업기반공사 관리구 역내 예정지 신청내용 에 대하여는 농업기반 공사 도 본부에서 사 업시행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 친 후 시·도지사에게 신청함 | ○배수개선 예정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시급성 등 을 감안한 사업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업 시행의 효율성 제고 *「수자원개발 및 관리실 태(’01.9~11)」감사원감 사결과 지적 사항 반영 |
| 7.수리시설개보수 ③방조제개보수 <사업시행> (3)시행계획의 변경 | (신설) | ○배수갑문 등 주요시설 을 전면개보수하고자 할 경우는 정밀안전진 단후 개보수 추진 | ○시행계획변경시에도 주 요시설에 대한 전면적 인 개보수는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후 개보 수 *「성과주의 예산제도 및 운영실태(’02.3)」감사원감 사결과 지적 사항 반영 |
| 8.농촌용수개발 ①대·중·소규모 용수개발 5.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범위 - 대규모 용수개발 : 수 해 구역 3,000ha 이상 - 중규모 용수개발 : 수 해 구역 50 ~ 3,000ha - 가뭄상습지역 특별대 책 : 가뭄상습지역 특별 대책 추진 28지구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범위 - 대규모 용수개발 : 수 해 면적 - 중규모 용수개발 : 수 해 면적 50 ~ 3,000ha - 소규모 용수개발 : 수 해면적 30~50ha ○ 지원조건 - 대·중규모 용수개발 : 국고 100% - 소규모 용수개발 : 국 고 50%, 지방비 50% | ○’03년부터 시행계획인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 업을 추가함에 따라 사 업대상 및 지원조건 추 가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사업대상지구선정> 가. 선정기준 | (1)수혜면적이 50ha이상 이며 사업시행에 제약 사항이 없고 효율이 양 호한 지구 | (1)수혜면적이 50ha이상 이며 사업시행에 제약 사항이 없고 효율이 양 호한 지구 단, 소규모 농촌용수개 발사업은 수혜면적이 30~50ha범위에 있는 지구 | ○'03년부터 시행하게될 소규모용수개발 사업 선 정기준 추가 |
| <사업계획수립·시행> 가. 계획수립시유의사 항 (1) 저수지 | (바)저수지 하류부에서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과수, 축산, 초지, 화 훼, 특용단지 등의 용 수수요도 조사하여 저 수지 규모 결정시 고 려하여야 함 | (바)저수지 하류부에서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과 수, 축산, 초지, 화훼, 특용단지, 하천유지용 수 등의 용수수요도 조 사하여 저수지 규모 결 정시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시 재해대책차원에 서 비상수문 설치를 고 려하여야 함. | ○ 이상강우에 의한 재해예 방을 위하여 홍수조정기 능 보강 |
| 나. 사업신청 및 예정지 조사 | (1)사업시행예정자(농업기 반공사 사장)는 예정 지에 대한 답사보고서 를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도지사 에게 사업시행을 신청 함(시장·군수 의견서 첨부) (신설) | ○ 농업기반공사 각 지사 의 예정지 신청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 도 본부의 사업시행 타 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함 | ○ 사업타당성, 시급성 등 을 감안한 사업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수자원개발 및 관리실 태(’01.9~11)」, 감사원감 사결과지적 |
| 다.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 (1)시·도지사는 예정지조 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기본조 사를 건의함(매년 3월 말까지) | (1)시·도지사는 예정지조 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기본조 사를 건의함(매년 3월 말까지) 단, 소규모 용수개발사 업은 필요시 시·도지 사가 기본조사를 실시 하여 기본 계획을 수 립할 수 있음 | ○ '03년부터 시행하게될 소규모용수개발 사업내 용 추가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라.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 (1)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에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시·도지사를 경유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 (1) 농림부장관은 50ha 이상의 중규모 용수개발 사업지구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에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시·도지사를 경유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다만, 50ha 미만의 기본 계획이 수립된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지구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설계지구로 선정 통보할 경우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 ○ '03년부터 시행하게 될 소규모용수개발 사업내용 추가 |
| 바. 공정계획 | (8) 준공예정지구는 전년도 3월이전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준공지구 지정후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고, 준공지구 지정후의 설계변경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9) 준공지구로 지정된 지구중 사업비가 부족한 지구는 부족한 사업비를 지방비 또는 타지구에 배분된 사업비에서 조정하여 년내 준공토록 조치하여야 함. 다만, 단가인상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대하여는 국고추가 지원 또는 지구간 사업비를 조정하여 준공토록 함 | (8) 준공예정지구는 전년도 3월이전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준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보완이 완료되어야 하며, 준공지구 지정후 설계변경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공지구 지정후의 설계변경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9) 준공지구로 지정된 이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우리부와 협의하여야 함 | ○ 준공년도에 사업비가 증액되어 사업준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 준공지구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역제를 위하여 보완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사. 시행계획변경 | (1) 바) (신설) (3) 계획변경시 공사비 증감액이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설계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옹분의 책임을 물어야 함. | (1) 바) 공사비 증가액이 총공사비의 1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3)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야 함. | ○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사항 반영 |
| 카. 사업비지원 (1) 예산의 지원 | (가) 시·도지사는 익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대규모용수개발과 중규모용수개발 및 가뭄상습 지역특별대책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청함 | (가) 시·도지사는 익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대규모용수개발과 중규모용수개발 및 가뭄상습 지역특별대책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지구별로 신청하며, 지구별 세부산출내역을 제출함 | ○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이 지구별로 예산이 편성되므로 지구별로 예산을 신청토록 보완 |
| (3) 자금운용 및 관리 | (신설) | (나) 소규모용수개발의 경우 지방비 부담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함 | ○ 소규모 용수개발의 지방비부담분 반영토록 보완 |
| 9. 농업생산기반정비 ④ 해외농업환경조사 ○ 사업명 |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 해외농업환경조사 | ○ 정부가 투자주체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투자"자 삭제 |
| ○ 보조금 지원형태 | ○ 민간요청조사 - 사전조사: 국고보조 100% - 본조사: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 민간협력조사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 사전조사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
| ○ 보고회 개최 | 평가회 개최 | 종합보고회 개최 | ○ 참석대상을 종전의 전문가 중심에서 민간의 투자희망업체까지 확대하고 각종 애로사항 해결 |
| ○ 결과 보고 및 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 조사후 60일 | 조사후 90일 | ○ 민간협력조사와 정책조사의 중복을 고려 전문가별 분석·검토기간 확대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10.농지조성</p> <p>①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p> <p>(4)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p> <p>다. 사업시행 (7)년도별사업시행</p> | (신설) | (마)용지매수 및 보상대상물 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함 | ○용지매수업무 중요성 상기 |
| <p>②서남해안간척사업</p> <p>다.사업계획수립</p> <p>(2)예비타당성조사</p> | (신설) | (라)투자사업비는 개발 형태별로 구분하고, 년도별 개발실적은 대단위사업 이외의 여타 일반사업과 지역 주민의 자력개발실적을 포함하여 작성함 | ○자력개발이 없으므로 삭제 |
| <p>바. 사업시행</p> <p>(3)시행계획변경</p> | (마) (신설) | (가)농림부장관은 예정지 조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추정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해야 함. |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의3(총사업비 협의) 규정이 신설('02.3.9)됨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사업도 '02년부터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므로 지침에 명문화 |
| | | (나)사업시행자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시 자료제공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 | | (마)계획변경시에는 계획 변경 원인과 책임소재 등의 규명 및 당초 설계자의 검토의견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지구에서 증감 및 공정별, 단위사업별로 사업비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사전 변경 협의 를 하여야 함 | ○소규모 용수개발의 지방비부담분 반영토록 보완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11.지역특화사업 ○ 지원사업범위</p> <p>○ 지원대상사업 - 추천사업분야</p> <p>- 추천사업의 세부사업</p> | <p>○ 추천사업과 추천이외의 사업</p> <p>○ 소규모농업용수개발 및 정비 ○ 병충해방제등 지역특화작목생산지원 ○ 지역특성화품목개발 ○ 소규모지표수, 지하수 개발(농사용, 원예용)</p> <p>○ 시군수리시설개보수</p> <p>○ 병충해방제지원(벼·채소류방제, 공동방제기 구입)</p> | <p>○ 기존 통합사업, 기존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소규모 틈새사업, 특화품목 개발사업 등을 추천사업, 추천이외사업, 공모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p> <p>- 특화품목이라 함은 지자체장이 지역적으로 특성화가 가능한 품목의 수출촉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특화품목육성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품목</p> <p>○ 소규모농업기반정비 ○ 특성화품목개발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시군수리시설개보수 및 준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 <p>○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p> <p>○ '03지역특화사업 예산(안) 내역과 부합되도록 함</p> <p>○ '03예산(안)에 일반용수개발 사업으로 소규모용수개발사업을 추진토록 반영</p> <p>○ 지원내용을 명확히 함</p> <p>○ 기능성 농산물생산 등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추천사업 메뉴에서 제외</p> <p>- 공동방제기 구입은 "소규모농자재 및 방제장비구입지원"으로 추진</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 지원조건 - 자원 ○ 배정기준 | ○ 소규모농자재 구입 ○ 농기계 임대사업 ○ 백합종구자급화사업 ○ 소규모 농업기반정비 사업 : 국고70%, 지방비 30%(지방비는 30%이상 부담가능) ○ 특성화품목개발 및 병충해방제사업 등 : 국고50%, 지방비50% (지방비는 50%이상 부담가능) ○ 특성화품목개발 및 병충해 방제사업 등 - 일괄배정사업 : 시도별 농업비중, 사업 추진실적, 예산요구액에 따라 배정 | ○ 소규모농자재 및 방제장비 구입지원 <삭제> ○ 특화작목 우수 종자·종묘 등 생산지원 ○ 국고50%, 지방비50% (지방비는 50%이상 부담가능) ○ 특성화품목개발 등 -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등을 농림업무평가에 반영하여 예산배정 | ○ 공동방제기 구입지원 포함 ○ '03년 예산(안)에 별도 예산이 반영되어 추천 사업 메뉴에서 제외 ○ 경쟁력제고를 위해 특화작목 종자·종묘 등 생산지원 대상품목 확대 ○ '03예산(안)에 소규모 농업기반정비 국고 보조율이 '02년 70%에서 '03년에는 50%로 조정됨으로 인함 - '03년 예산의 축소에 따라 일괄배정 예산지원은 제외하고 공모방식과 농림업무평가에 의한 시상사업비로 통합지원 하되 · 농림업무평가 항목에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등을 반영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 사업신청</p> | <p>- 인센티브사업 : 지자체에 대한 농림 업무 및 고품질 쌀 대책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배정 * 인센티브사업비로 배정 된 예산은 50%이상을 추천이외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신설)</p> <p>(신설)</p> <p>(신설)</p> | <p>- 시상사업비지원 : 지자체에 대한 농림 업무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배정</p> <p><삭제></p> <p>○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할 수 있음</p> <p>○ 시·군 또는 시·도의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경제성,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 사업효과, 사업준비 상태 및 운영방안 등의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p> <p>○ 시장·군수는 사업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우선순위 및 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시군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 업을 신청하며, 시·도 지사는 추천사업, 추 천이외사업, 공모사업 으로 구분하여 농림부 에 사업을 신청함</p> | <p>- '03년도 지자체 농림업 무평가시 고품질 쌀대 책 평가 등을 포함하여 종합평가</p> <p>* 지자체 자율성 강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p> <p>○ 지역특화사업의 단위 세사업의 신청을 농림 사업실시규정의 사업 신청요령과 동일하게 추진하므로서 사업비 확정배정시에 보다 신 속하게 추진토록 함</p> <p>○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함</p> <p>○ 사업계획 검토를 강화 하여 사업의 사전준비 철저 및 내실있는 사업 추진 도모</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추천사업 -공모방식 선정사 업 ○사업계획 변경 | -추천사업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함 (신설) ○추천사업의 세부지원 기준에 명시된 지원 대상자,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를 변경하거나, 추천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농림부와 협의한 지원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와 사전 협의후 집행하 여야 함 | -추천사업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함 다만, "특화작목 우수 종자·종묘 등 생산 지원사업"의 세부추진 계획은 농림부(해당 사업과)와 별도 협의한 후 사업시행함 -시장·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추진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11월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좌동> | -특화작목 우수 종자· 종묘 등 생산에 대한 농림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농림부와 협의하여 추 진하므로써 사업효과 제고 및 내실있는 사업 추진 도모 -사업규모가 비교적 큰 공모사업에 대하여 는 사업의 타당성, 사 업내용 등 계획검토 강화 및 사업의 사전 준비 철저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 <붙임1> 세부사업별 지원기준</p> | <p>(신설)</p> <p>○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 지원대상시설 :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용수로 시설</p> <p>○ 백합종구자급화 - 지원대상자 : 지자체, 화훼생산자단체 또는 백합생산농가</p> <p>- 지원내용 : 기본구 배양을 위한 구근센 터 및 종구생산단지 조성</p> <p>(신설)</p> <p>- 지원단가</p> | <p>- 다만, 지방비 또는 자 부담을 추가하여 사업 물량을 증가할 경우에 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 여 집행하며, 여건변 화 등에 따라 사업비 의 증감없이 사업목적 과 지원기준에 부합되 는 범위내에서 사업공 종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에서 검토 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 를 농림부에 보고함</p> <p>○ 수리시설개보수 및 준설 - 지원대상시설 :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시설</p> <p>○ 특화작목 우수 종자· 종묘 등 생산지원 - 지원대상자 : 지자체, 생산자단체</p> <p>- 지원내용 : 지역적으 로 특화품목 육성이 가 능한 작목의 우수종 자·종묘 등 생산지 원</p> <p>- 지원대상 : 지자체장 이 특화품목 육성 중 장기계획을 수립하 여 특화품목으로 지 정한 작목</p> <p>- 사업계획 : 세부사업 계획은 농림부의 사 업과와 사전에 별도 협의하여 계획수립</p> | <p>-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집행토록함 · 행정의 효율성 제고</p> <p>○ 배수장과 배수로시설 추가</p> <p>○ 지역특화품목의 우수 종자, 종묘육성으로 원가절감, 수출확대 등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품목 확대</p> <p>- 지자체 특화품목육성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작목에 한하여 지원</p> <p>- 농림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농림부와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 제고 및 내실있는 사업 추진</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 별지서식 | <p><서식1>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p> <p>○ 지방비</p> <p>(신설)</p> <p><서식3>지역특화사업 세부 추진계획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사업개요 - 세부추진계획 - 운영(활용)계획 - 기대효과 및 사업성 검토 - 기존 유사 농림사업과의 비교 | <p><서식1>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p> <p>○ 지방비를 시도비와 시군비로 구분하여 작성</p> <p><서식3>지역특화사업 추진 기본계획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특화품목 생산 여건 - 보조사업자의 사업 추진능력 - 사업부지확보 가능성 - 사업완료 후 운영(활용) 방안 - 사업효과 - 기존 유사사업과의 비교 - 기타 - 사업주관기관의 장 검토의견 <p><서식4>지역특화사업 세부 추진계획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사업목적 - 사업추진 기본방향 - 사업개요 - 세부사업내용 - 사업추진요령 및 일정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후 운영(활용) 계획 | <p>○ 시도비와 시군비 지원 계획을 검토</p> <p>○ 공모방식사업 선정시 사업계획 검토강화 및 사업의 사전 준비철저</p> <p>○ 추천이외사업 또는 공모방식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세부추진 계획을 내실 있게 작성하여 검토하므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13.농기계구입지원 5.2003년도 사업시행 요령 (3)지원한도액 ○산정기준표(구분란)</p> <p>○산정기준표(주석란)</p> <p><추진체계> 다.사업시행 (3)중고농기계 구입 자금 용자지원</p> | <p>-고품질벼 생산농가가 구입하는 농기계(트랙터, 콤팩트, 이앙기,)</p> <p>4.대당 최고지원한도액 : 3,000만원(다만, 농업회사법인 등 공동이용목적으로 구입하는 농기계 5,000만원)</p> <p>(신설)</p> <p>-농가간 거래시: 별지10호 서식에서 예시한 판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급자의 중개(확인)을 받은 중고농기계 (단서조항신설)</p> | <p>-고품질벼 생산농가가 구입하는 농기계(트랙터, 콤팩트, 이앙기, 곡물 건조기)</p> <p><삭제></p> <p>4.할인판매 등으로 인하여 실제 판매가격이 통보 가격미만인 경우의 용자지원한도액 : 실제 판매가격 × 당해 기종 지원한도액 / 통보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함</p> <p>-농가간 거래시: 별지10호 서식에서 예시한 판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급자의 중개 또는 확인을 받은 중고농기계. 단, 현금거래시는 대금지불 완료후 10일 이내에 용자신청한 경우만 지원</p> | <p>-고품질벼 생산농가가 구입하는 곡물건조기 우대지원(70%→90%)으로 고품질벼 생산 장려시책에 부합되므로 반영</p> <p>-대당 최고지원한도액 폐지로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확대</p> <p>· 3,000만원 이상 대형농기계는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므로 한도액 존치 불필요</p> <p>-판매가격을 부풀려서 통보한 후, 할인판매 등으로 인한 자부담 면제 및 유통질서 문란을 방지하고, 실제 판매가격 기준으로 지원함으로써 농기계가격의 투명성 제고</p> <p>-타도에 거주하는 농업인간 거래 등 현금으로 우선 중고농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농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단서조항 신설</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행정사항> 다.정부지원대상 농 기계의 신규진입 범위 및 절차</p> <p>라. 사후관리</p> | <p>(2)신규로 진입하는 기종은 형식별로 원가계산용 역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제 조원가계산서를 농기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함.</p> <p>(3)새로운 기종에 대한 정 부지원대상 농기계 진 입은 반기별로 접수하 여, 농업기계화 시책협 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p> <p>(마)농기계조합은 사후봉사 이행보증을 받아 농기계를 직접 공급하는 제조 업자 등이...(중략)..., 부도·폐업 등으로 제조 업체가 사후봉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직접 신속한 사후봉사를 실시해야 함</p> | <p>(2)신규로 진입하는 기종은 형식별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 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원가계산용 역기관에서 작성한 '예 정원가조사보고서(제 조원가계산서)를 농 기계조합에 제출하여 야 함.</p> <p>(2)새로운 기종에 대한 정 부지원대상 농기계 진 입은 반기별(3월말, 9월 말까지)로 접수하여, 농 업기계화 시책협의회의 심 의를 거쳐 결정(7월, 익년 1월부터 적용)함</p> <p>(마)농기계조합은 사후봉사 이행보증을 받아 농기계를 직접 공급하는 제조 업자 등이...(중략)..., 부도·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제조업체가 사후봉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직접 신속한 사후봉사를 실시해야 함</p> | <p>-원가계산전문기관의 정의를 명확히하여 해석상의 오 류 방지</p> <p>-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새로 진입하는 신청기간 및 심의기간을 명확히 함</p> <p>-사후봉사업소의 고의 적인 휴업으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차질 및 선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7.별표 및 별지 서식 [별지 8호서식]</p> <p><농기계임대사업 (신설)></p> | <p>(바)품질불량 등으로 잦은 민원을 유발하는 농기계의 가격담합 등으로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농기계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에서 제외하거나 지원한도액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음.</p> | <p>(바)품질불량, 사후봉사 불이행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거나 농업인 등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와 가격담합 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에서 제외하거나 지원한도액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음.</p> <p>-고가농기계구입 경영상담부 폐지</p> <p>-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선정신청서 제정</p> <p>○ 지원대상</p> <p>-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농협중앙회장이 지역조합의 신청을 받아 선정</p> <p>○ 사업운영지침</p> <p>-농협중앙회장이 임대농기계관리, 임대사업대상자선정, 임대료결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농림부 승인을 받아 시행</p> <p>○ 농기계관리 및 임대운영</p> <p>-농기계구입, 임대, 임대료징수, 사후관리 등은 지역농협조합장이 책임관리(운영)</p> <p>○ 임대료 산정</p> <p>-임대료는 농기계가격, 내용년수, 임대기간 및 해당지역 임대료, 임금, 물가 등을 감안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하며, 임대료 산정기준을 근거로 농협조합장, 농민대표 등 임대사업과 관련된 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임대료는 결정.</p> | <p>-농업인 등에게 민원을 유발하거나 피해를 입힌 농기계의 가격담합 등으로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농업인의 영농차질 및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p> <p>-3천 만 원 이상 고가농기계는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p> <p>-서식제정으로 신청내용을 명확히 함</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14.농기계사후관리 | | | |
| ①농기계보관창고설치 | ○ 지원대상 : 마을공동, 사후봉사업소, 일반농가보관창고 | ○ 지원대상 : 일반농가보관창고 -일반농가 우선 지원후 필요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마을공동 및 사후봉사업소 보관창고 지원 | -수요감소 등을 감안 통합 조정 |
| ②수리용부품·장비 지원 | ○ 지원한도 -부품센터 : 5억원 -대리점 : 1~3억원 -수리점: 4천만원 (신규) | ○ 지원한도 -부품센터 : 7억원 - 대리점 · 부품관리 전산화 추진 대리점:2~4억원 · 일반대리점:1~3억원 - 수리점 : 5천만원 ○ 대상자 선정 -1개 시·군에서 2개 이상의 동일 제조업체 대리점이 신청할 경우 1개 대리점만 선정 | -대리점의 부품관리 전산화 촉진 -트랙터, 콤팩트 등 대형 농기계 보급대수 증가 추세를 감안 지원한도 상향 조정 |
| ③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 | -사업량: 8개소(단가1억) ○ 지원비율:국고 50%, 자담 50% | -사업량: 12개소(단가1억) ○ 지원비율 : 국고25%, 지방비25%,자담 50% | -판매촉진을 위한 제조업체의 대리점 확대설치 억제 |
| 15.농기계생산지원 | [별표 1] '03 지원기준 ○ 발작물용 농기계판매 실적 : 10% ○ 수출실적 : 15% | ○ 발작물용 농기계판매 실적 : 15% ○ 수출실적 : 10% | -사후관리 및 운영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비 부담 의무화 -발작물기계화 촉진 및 영농적기 공급을 위해 조정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16.미곡종합처리장 증설·설치·운영 ○지원시설의 종류 | (신설) | ○ 고품질 쌀 생산시설 - 원료투입 등 주요공정에서의 집진시설 보완·설치 - 건조능력 제고시설 - 저온 유지 등 저장과정에서의 품질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보완시설 - 찌라기 분리장비 등 고품질 쌀 생산 시설 - 제품 포장 개선장비 - 기타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하고 농림부장관이 승인하는 시설·장비 | ○ 고품질 쌀생산 유지 |
| ○사업지원대상 | (신설) | ○ 고품질쌀 생산시설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자 | " |
| ○ 지원단가 | (신설) | ○ 고품질 쌀 시설 - 지원단가:200백만원 (읍자 160, 자담 40) | " |
| ○ 우선순위 | (신설) | ○ 고품질 쌀 생산시설 ① RPC 고품질쌀 계열회 사업 추진 평가결과 우수업체 ② 기타 시장·군수가 고품질쌀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 |
| ○ 자체조성RPC | ○ 100평이상의 보관창고 1동 이상(구내) (단서조항신설) | ○ 다만, 싸일로의 저장능력이 평창고(100평 1동)의 저장능력을 초과할 경우 예외로 함 | ○신물저장 능력 확대(민원해소)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17. 고품질 우량종자개발 ① 고품질 우량종자개발 발 ○ 기타 | ○ 융자금리 5% (신설) | ○ 융자금리 4% ○ 2003년도 사업시행 요령의 "사업개요"에 사업추진주체 및 추진절차 신설 추가 | ○ 농업관련 정책자금 금리 인하 협의결과 반영(투심51060-214'02.6.28) ○ 사업추진절차 등 설명으로 사업추진시 업무추진 편의 도모 |
| ② 마늘 경쟁력제고 □ 종구갱신 ○ 신청자격·절차·구비서류 | <신청자격> ○ 재배규모가 10a 이상이고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부터 주아재배기술을 습득한 농업인 <신청절차> ○ 소정 신청서를 읍·면·동에 직접제출 <구비서류> ○ 마늘산업경쟁력제고 신청서 | <신청자격> ○ 종구생산장려 : 마늘주산단지내 900평이상 마늘재배농가 ○ 종구(주아)생산지원 : 마늘주산단지내 300~900평미만 마늘재배농가 <신청절차> ○ 종구생산장려 : 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 ○ 종구(주아)생산지원 : 시장군수가 작성서·도를 경유 농림부에 제출 <구비서류> ○ 종구생산장려 : 마늘산업경쟁력 사업지원 신청서 ○ 종구(주아)생산지원 : 시·군에서 서식에 의거 작성 | ○ 마늘산업종합대책에 의거 보완 |
| ○ 선정기준, 우선순위 절차 | <선정기준> ○ 시장군수는 신청농가의 주아재배기술 습득여부와 기술수용능력, 경작규모 등을 감안 자체선정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자 선정 | <선정기준> ○ 종구생산장려 : 시장군수는 신청농가의 종구(주아)갱신 재배기술습득 여부와 기술수용능력, 경작규모 등을 감안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자 선정 ○ 종구(주아)생산지원 : 시장군수는 자체종구갱신계획을 수립 전문생산농가와 공급대상 농가를 선정 |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선정기준,우선순위 절차</p> <p>□생산기계화 지원 ○신청자격·절차·구비 절차</p> | <p><선정기준></p> <p>○경작규모가 큰 농가와 채소수급안정사업에 의한 농협계약재배 참여 농가에 우선 지원</p> <p><선정절차></p> <p>○사업대상자와 적격유무 확인</p> <p>○시장·군수 별도의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 <p><선정기준></p> <p>○종구생산장려 : 마늘주산 단지내 900평이상 마늘 재배·재배농가(○종구< 주아>생산지원 : 마늘 주산단지내 300~900평 이상 마늘재배·재배농가)</p> <p><선정절차></p> <p>○단위사업별 사업대상자의 적격유무확인</p> <p>○시장·군수는 자체심의위 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 상자 선정</p> <p><신청자격></p> <p>○공동이용: 0.5ha미만 농기계를 중심으로 공동이용조직을 마련한 주산단지의 지 자체, 농협조합, 영농조 합법인, 작목반 등</p> <p>○개별이용: 0.5ha이상의 마늘재배면적을 확보한 주산단지의 개별이용 농가</p> <p><신청절차></p> <p>○마늘생산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를 작성 사군 및 농업기술센 터에 제출</p> <p><구비서류></p> <p>○마늘생산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p> | <p>○마늘산업종합대책에의거 지원</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 선정기준, 우선순위 절차</p> <p>18. 사료사업지원</p> <p>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p> <p>○ 지원사업</p> <p>○ 지원조건</p> <p>② 사료사업지원 가. 사업내용</p> | <p>(신설)</p> <p>○ 농지를 이용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p> <p>○ 농지를 이용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 보조100%</p> <p>○ 섬유질사료제조시설, 자가배합사료제조시설</p> | <p><선정기준></p> <p>○ 마늘농기계 보조지원대상자 선정은 공동·개별이용으로 구분 선정하되, 개별이용은 전체 사업비의 10%이내에서 선정</p> <p><우선순위></p> <p>○ 공동이용 : 시장·군수는 지역설정을 감안하여 마늘생산농기계의 활용도가 높은 주산단지를 우선 선정</p> <p>○ 개별이용 : 신청자의 재배면적, 기종 등을 감안하여 1~6순위로 우선 선정</p> <p><선정절차></p> <p>○ 농기계구입신청자의 신청서상의 기종, 규격, 가격 등을 확인</p> <p>○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금 지원 확정</p> <p>○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유통체계 구축</p> <p>○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유통체계구축 : 보조60%, 지방비40%(돈포사일리지 톤당 기금 21천원, 지방비 14천원 이상)</p> <p>○ 사료제조시설</p> | <p>○ 경종농가의 소득안전망 구축 및 축산농가에 저렴한 조사료 공급</p> <p>○ 지원대상 변경</p> <p>○ 2003년부터 자가배합사료시설이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사료제조시설로 변경</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19.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 | | |
| <input type="checkbox"/> 사업대상자 | ○ 단독·공동시설, 나환지 정착촌, 톱밥제조시설, 액비저장조설치 | ○ 축분비료유통센터 추가 | ○ 지역 농·축협 및 양돈 협회 시·군지부를 축분비료유통센터로 지정, 액비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액비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등 지원 |
| ○ 액비저장조설치 | (신설) | ○ 자가 경작지를 확보 하고 있는 축산농가 | ○ 축산농가의 액비저장조 설치 활용근거 마련 |
| <input type="checkbox"/> 사업내용 | | | |
| ○ 축분비료유통센터 | (신설) | ○ 바큇카, 액비살포차량 및 살포기, 압출박스 등 액비수거·운반·살포장비 | ○ 지원장비 등 열거 |
| ○ 지원규모 및 조건 | (신설) | ○ 축분비료유통센터 -사업비 한도액: 200백만원 -지원비율: 보조 40%, 지방비40%, 자부담20% | ○ 지원규모 및 조건 열거 |
| <input type="checkbox"/> 자금집행 | ○ 자금집행시 사업대상자는 공사대금 지불영수증 제출 | ○ 공사대금 지불영수증 또는 시공·납품업체의 통장에 입금확인서 제출 | ○ 사업대상자가 사업비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확인방법 추가(온라인 지불방식) |
| 22. 한우사업지원 | | | |
| ②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 | | | |
| ○ 사업대상자 | ○ 초지를 20ha이상 기 확보하고 있는 자 | ○ 초지 및 사료포를 10ha이상 기 확보하고 있는 자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유통체계 구축사업 참여계약 물량 인정 | ○ 사업대상자 확대로 사업활성화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 지원조건 | ○ 기반시설:보조30%,용 자40,지방비30 ○ 축사등건물:보조10%, 용 자60, 지방비30 ○ 사료작물재배 및 초지 조성, 보완,관리:보조50%, 용자30 지방비20 ○ 기계장비:용자80% 지 방비20 | ○ 보조20% 용자40, 지방비 30, 자부담10 -단, 조사료생산을 위한 기계·장비지원은 용자 80%, 자부담20 | ○ 지원조건 단일화 |
| ③ 한우다산장려금 | | | |
| ○ 지급금액 | ○ 3~4산 : 20만원/두 5산이상 : 30만원/두 | ○ 3~4산 : 15만원/두 5산이상 : 20만원/두 | ○ 보조성사업 지급액 축 소로 농가의 자생력 강화 |
| ○ 지원기간 | | ○ '03.12.31일까지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 지급 후 사업종료 | ○ 한우 번식기 반확보를 위한 단기사업으로 반식 기반안정에 따라 사업종료 |
| ④ 거세장려금 | | | |
| ○ 지원대상(한우) | ○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가입암소가 생산한 수소의 거세하는 자 | ○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가입암소가 생산한 수소를 12개월령 이내에 거세하는 자 | ○ 적기거세유도로 거세우의 1 등급출현율 제고를 통한 품질고급화 |
| ○ 지원기간(한우) | ○ 연중 | ○ '03.6.30일까지 거세한 수소에 대해 지급 | ○ '04.7월부터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전환지원 함에 따라 사업 일시 중단 |
| ○ '04년 사업시행 | | ○ '04.7월부터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전환 추진 -지원대상 : 도체성적 1등급이상 출현된 한우거세우 | ○ 농가의 1등급이상 고급육 생산의욕 고취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22. 가축개량사업 가. 한우개량 ○ 농가검정우관리 ○ 인공수정료 지원 ○ 개량농가 지도·점검 회수 ○ 등록우 관리비 지급시기 ○ 한우검정용 송아지 매입 ○ 한우 현장후대검정(시험사업) -검정두수 -검정사례비 ○ DNA-Marker ○ 도축장 바코드귀표 출현우 도체성적조사 -조사두수 -사례비 ○ 보고기일 나. 젓소개량 ○ 젓소산유능력검정 -검정비 단가 다. 돼지개량 ○ 사업내용 마. 종축등록 및 신기술보급 ○ 소자가인공수정 기술 교육 및 장비보급 | (신설) ○ 연간 2회(4월, 10월) ○ 분기별 ○ 산지 평균 시세의 130%수준에서 매입 ○ 2,400두(↑) ○ 50천원/두 ○ 130천두 ○ 1,000원/두 ○ 매분기 익월말까지 ○ 31.1천원/두 (신설) (신설) | ○ 등록우생산 수송아지에 대한 도체성적조사 실시 -11천원/두 <삭제> ○ 연 1회이상 ○ 월별 ○ 산지 평균 시세의 130%이내에서 매입 ○ 1,200두(↑) ○ 100천원/두 <삭제> ○ 60천두 ○ 1,400원/두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 21.7천원/두 ○ 돼지 PSS유전자 검사 -8.5천원/두 ○ 수돼지검정(종돈업 신고업체) -25천원/두 ※ 소자가인공수정기술 교육은 별도계획에 의해서 실시 | ○ 신규 사업 ○ 인공수정료 지원중단('03) ○ 여건에 따라 회수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함 ○ 조사자료 세분화 이용 ○ 매입가격 기준 명확화 ○ 단가 현실화 ○ 지원중단('03) ○ 조사두수 조정 및 단가 현실화 ○ 보고시기 조정 ○ 단가 하향 조정 ○ 신규사업 ○ 신규사업 ○ 장비 보급신청이 없어 '03년부터 지원계획 보완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23.농산물표준규격화 ①농산물물류표준화 1.사업분류 2.지원대상 물류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물류표준화 ○ 파렛트(개소당 50매이내), 플라스틱상자(개소당 500매이내),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마늘줄기절단기, 마늘선별기비파괴당도측정기 등 구입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물류표준화 ○ 파렛트(개소당 50매이내), 플라스틱상자(개소당 500매이내),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마늘탈피관련기기, 비파괴당도측정기구입비 - 마늘탈피관련기기: 마늘분쇄기, 마늘탈피기, 마늘탈피선별기, 깎마늘 규격선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늘산업종합대책 추진, 마늘포장출하유도 및 디지털유통 촉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물류기기 추가 |
| 3.지원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40%, 융자30%, 자부담30% ○ 융자조건 : 연5%, 3년거치 7년상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40%, 융자30%, 자부담30% ○ 융자조건 : 연4%, 3년거치 7년상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인하조치('02.7) 반영 -사업활성화 및 부담경감 |
| ②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 1.사업분류 2.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 ○ 파렛트/프라스틱상자 등을 풀회사로부터 임대, 농산물을 적재(포장화)하여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 유통점 가공공장, 생산자단체 및 그자회사의 집배송장에 출하하는 경우 임대료 일부보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 ○ 파렛트/프라스틱상자 등을 풀회사로부터 임대, 농산물을 적재(포장화)하여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 유통점에 출하하는 경우 임차료 일부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 유통사업장 조정(시행지침 개선방안('02.7.26) 반영 |
| 3.지원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용(사용기간 15일이내), 저장용(30~150일)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용 지원제외 ○ 출하사업장별 구분, 유형별 지원 차별화 -①농산물종합유통센터 ②공영도매시장 ③대형유통업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공동이용사업의 활성화, 객관적 지원단가 산정(시행지침 개선방안; '02.7.26) 반영 |
| ③농산물규격출하 1.사업분류 2.신청자격,절차,구비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규격출하 ○ 사업계획서 제출(농관원 출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규격출하 ○ 사업계획서 제출(지역농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절차 간소화 -사업계획서 제출시 거주지에서 신청가능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3.지원대상 및 품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산지유통전문조직, 표준바코드표시조직, 공동계산조직 -친환경, 품질인증조직 ○포장화우대품목 -생산자조직,산지유통인 등 ○기타생산자조직 -시군별 9개품목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산지유통전문조직,친환경, 품질인증조직 -기타 생산자조직 ○포장화우대품목 -생산자조직,산지유통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바코드, 공동계산조직 평가지원대상으로 변경 |
| 4.지원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재비의 30% ○산지유통전문조직, 포장화우대품목, 기타생산자조직 등 지원(국고 30%, 자부담 7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재비의 30~25% ○규격화가 정착된 품목(장미, 사과, 배, 백합, 들깨잎)의 경우(국고 25%, 자부담 7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규격내에서 지원가능토록 변경 ○규격출하가 정착된 품목에 대해 지원을 축소 -포장화율100%, 규격출하율 80%이상 품목 |
| 5.사업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화우대품목 포장재비지원 -유통사업장(종합유통센터출하시), 출하주(도매시장, 대형유통점, 가공공장출하시)가 규격출하확인서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화우대품목 포장재비지원 -유통사업장은 규격 출하확인서를 60일 이내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
| 24.농산물산지유통 활성화 | | | |
| ①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유통전문조직 선정방향 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조직수는 300여개 내외로 지정·운영하고, 2003년도 부터는 '00년 선정조직과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자 신규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유통전문조직 선정방법 개선 -유통사업이 활성화된 조직 우선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부진조직은 퇴출 |
| ○유통사업실적평가 기관 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중앙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물유통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실적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제3의 평가기관 지정 |
| ○산지유통전문조직 선정기준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조합, 영농법인을 동일기준으로 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조합, 영농조합법인 특성을 고려한 각각의 심사기준 마련 -현재 용역결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12월중에 별도 통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조합법인이 산지유통전문조직 대상이 됨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공평한 기준 마련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 산지유통전문조직 평가기준 개정 | ○ 농협조합, 영농조합법 인을 동일기준으로 평 가 | ○ 농협조합, 영농조합법 인 특성을 고려한 각 각의 평가기준 마련 -현재 용역결과를 검토 하고 있으며, 12월중에 별도 통보 | ○ 생산자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 |
| ○ 평가결과 확인점검 | ○ 평점상위 15%이내 | ○ 평점상위 20%이내와 하위 15%이내 ○ 나머지 조직은 하반기에 표본조사 | ○ 평가결과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실시로 객 관적인 평가 실행 |
| ○ 다른 자금지원의 제한 | ○ 가공공장 구매자금 지원 | <삭제> | ○ 인삼품목의 경우 가공 구매자금(연리 5%)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자금 부족 발생 |
| ② 일반조직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 ○ 생산자단체 유통활성화 ○ 공동규격출하촉진지원 ○ 산지유통센터운영지원 ○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 ○ 일반조직산지유통 활 성화지원 | ○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 통합 지원으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기초 생산자조직의 유통사업 활성화 |
| ○ 사업비지원 우선 순위 | (신설) | ① 산지유통센터운영자금 ② 화훼비회원조합, 참다래 생산자단체 활성화, 산지유통인출하선도금 ③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 계산을 하는 작목반 | ○ 평가를 거쳐 우수 AFC의 운영활성화를 우선지원 |
| ○ 운영실태평가 | (신설) | ○ 지원대상자인 작목반의 유통사업실적을 평가 | ○ 사업실적평가로 유통 사업목적 달성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 계산 출하물량 확대 |
| ○ 평가결과 반영 | (신설) |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에게는 추가자금 (지원액의 20%이내) 지원과 부진조직에게는 감액(지원액의 20%이내) 지원 또는 지원제외 | ○ 유통사업실적이 우수한 작목반을 육성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추가자금 및 감액지원 범위는 추후 별도 시행 방안 마련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25.농산물산지유통 기반확충 ①농산물산지유통 센터 시설보완 ○ 지방자치단체사업 지원을 변경 ○ 사업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실태 평가 및 지원 |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산지유통 전문조직이 시설설치 및 보완시 : 10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지원 사업시행지침으로 정함. | ○ 국고보조 60%, 지방비 40% ○ 산지유통 전문조직이 시설설치 및 보완시 : 5점 ○ 마늘유통시설설치 및 보완시 : 5점 ○ 산지유통센터운영지침이 삭제됨에 따라 본 시행지침에 평가부분 삽입 | ○ 국고부담비율 완화 ○ 마늘관련 유통시설. 설치지원 활성화로 마늘유통기반 확충 ○ 사업통합에 따라 평가부분을 삽입(전년도와 변경내용 없음) |
| 26.농산물도매시장 건설및유통시설 보완 ①농산물유통시설 보완 ○ 지원기준 ②농산물출하촉진 자금 ○ 지원대상 ○ 지원금리 | ○ 도매시장 시설보완 - 국고보조 60%, 지방비 40% (신규) ○ 종합유통센터 지원 금리 -5%, 1년 이내 | ○ 도매시장 시설보완 - 국고보조 40%, 지방비 60% ○ 하역노조원 지원 - 400백만원 보조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위노조에 1년이상 재직자 중 퇴직을 신청한 자 ○ 종합유통센터 지원금리 -4%, 1년 이내 | ○ 도매시장 개설자의 자율적인 책임경영 의식 고취 ○ 완전규격 출하품(파렛트) 취급증가에 따른 하역노조원 퇴직자 지원 ○ 금리인하로 사업자의 사업의욕 고취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27.농수산물소비자유통기반확충</p> <p>②농산물직거래시설지원(직거래매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거래(생산자·소비자단체) 지원금리 -5%, 1년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거래생산자·소비자 단체 지원금리 -4%, 1년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인하로 사업자의 사업의욕 고취 |
| <p>28.농축산물자조금 조성지원</p> <p>①농산물자조금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지급대상 자조금 조성단체의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면적 집중율이 30%이상으로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품목 -기준출하율 50%이상 ○ 재배면적 집중율이 30%미만으로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품목 -기준출하율 30%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생산량(액) 대비 구성원의 출하량(액) 비율이 30%이상인 단체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로 인정 -단, 단체구성원의 출하량(액)의 비율이 50%미만인 단체는 3년 이내에 50%이상의 출하량(액)을 확보하여야 함. 확보하지 못할시는 보조금지원 중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법인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자조금조성여건 강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조정 의사결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중 10인이상이 “자조금조성계획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 ○ 구성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자조금의사결정(구성원중에 법인이 있을 경우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법인구성원이 결정한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조성단체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조금조성계획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조성의사결정방법 간소화로 자조금사업 활성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사무요원의 운영경비 사용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자조금 적립액(보조금 제외)의 5% 해당액(연간 1억원) 범위 내에서 사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자조금적립액(보조금 제외)의 5% 해당액(연간 1억원) 또는 20백만원 범위내에서 운영경비 사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적립액 규모가 적은 자조금조성단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최소경비 허용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29.채소 수급안정 사업 | | | |
| (계약재배) | | | |
| ○사업대상자 |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산지조합, 품목조합 |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지역조합, 품목조합으로서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 ○일정기준 이상의 규모화, 전문화된 조합 위주로 지원 |
| ○사업형태 | ○매취형 | ○매취형, 매취형+수탁형 | ○조합의 자율성 제고 및 사업방식 다양화로 여건변화에 능동·대응 |
| ○운용자금비율 | ○총자금의 20~30% | ○20~30%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중앙회장이 비율조정 가능 | ○사업손실 과다품목에 대해서는 운용자금 지원 비율을 높일수 있도록 하여 손실최소화 |
| ○대상자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 | ○무이자 | ○무이자(법인에 대해서는 대출관리비용 등을 받을 수 있음) |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대출금 관리 도모 |
| (시설채소약정출하) | | | |
| ○대상자에 대한 자금지원 기간 | ○11개월 | ○11개월 원칙, 필요시 중앙회장이 조정 가능 | ○품목별, 사업별 특성감인 지원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사업활성화 |
| ○운용수익 등의 사용 | ○폐기시 수확비, 사업 수행비용 | ○수확비, 사업수행 비용, 조합사업관리비용 | ○관리비용지급으로 책임 있는 사업추진 도모 |
| 30.농축산물 판매 촉진 | | | |
| 1.사업분류 | ○농축산물판매촉진 | ○농축산물판매촉진 | |
| 2.지원대상품목 | ○김치,신선채소,인삼,과실, 화훼,축산물 | ○국내산 김치,채소,인삼,과실,화훼,축산물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 | ○수출 유망품목 집중지원 -수출물류비 지원개선방안('02.8) 반영 |
| 3.지원내용 | ○수출에 필요한 포장, 선별, 운송비 등과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조성사업 지원 -수출조성사업 예산액의 4%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수출에 필요한 포장, 선별, 운송비 등과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조성사업 지원 -수출조성사업 예산액의 3%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부대업무처리비용 축소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4.지원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부류 : 국가별 표준물류비의 30%지원 -신시장/신상품 개척, 수출단지육성, 품목특성고려 등 장기적 수출확대를 위하여 표준물류비의 5% 범위내에서 항목별로 인센티브 추가 지원 ○ 축산물 : 포장상자 제작비의 40% 범위내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표준수출물류비용 기준 수출금액의 40%이내 지원 -산물형태 수출시 수출물류비 30%지원, 수출금액 40% 이내 ○ 기본지원단가 -국가별 표준물류비의 30% 기준 지원 ○ 인센티브 -신규시장개척, 수출단지 생산제품에 대하여는 표준물류비의 5%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추가 지원하되, 1개 항목 지원 -국내수급안정을 위한 "수출전략인센티브"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국가별로 체계적인 지원기준 마련 ○ 인센티브지원 기준 명확화 -수출물류비 지원기준 보완('02.3) 및 지원개선방안('02.8) 반영 |
| 32.우수농수산물지원 ○ 지원대상 ○ 통조림부자재 비축 공급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배정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업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자 ○ 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업 신고(등록) 또는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기 조정 |
| 34.축산물유통개선사업 ①.도축도매시설 ○ 축산위생시설 (도축장HACCP) 및컨설팅지원사업 ○ 축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②.도축장시설현대화 사업 ○ 융자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리 5% 5년까지 10년균분상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지> <폐지> ○ 연리 4% 5년까지 10년균분상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적인 사업으로 종료됨 ○ 사업수요 부족으로 폐지 ○ 융자금리인하('02.7.1부터)로 사업활성화 도모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축산물 도매시장·공판장 시설 보완 사업 | (신규) | ○'03 지원대상 : 경기 부천공판장 ○지원조건 : 기금 보조 40%, 기금융자 30%, 지방비 10%, 자담 20%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축산물 도매시장·공판장의부족시설 보완 및 노후시설교체를 위한 사업비 지원 |
| ㉡축산물종합처리장 등 운영활성화사업 ○융자조건(LPC) | ○연리 5%, 1년거치 일시상환 | ○연리 4%, 1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리인하('02.7.1부터)로 사업활성화 도모 |
| ②.가공판매시설 ㉢브랜드육가공시설 ○사업신청 | ○당해년도 2.10일까지 | ○당해년도 1월말까지 | ○대상자 연초에 확정 |
| ○대상자 선정 | ○농림부가 대상자를 확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 | ○농림부는 주관기관 소요예산을 검토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시·도가 대상자를 선정 | |
| ○2004년 대상자 신청 | ○2004년도 2.10일까지 | ○2003년도 4월말까지 | ○대상자를 전년도에 확정 한 후 예산확보 추진 |
| ㉣브랜드가맹점 육성 ○사업신청 | ○당해년도 2.10일까지 | ○당해년도 1월말까지 | ○대상자 연초에 확정 |
| ○대상자 선정 | ○농림부가 사업량 배정 | ○농림부는 주관기관 소요예산을 검토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시·도가 대상자를 선정 | |
| ○2004년 대상자 신청 | ○2004년도 2.10까지 | ○2003년도 4월말까지 | ○대상자를 전년도에 확정 한 후 예산확보 추진 |
| ㉤브랜드업체 운영자금지원 ○사업단가 | ○브랜드가맹점 개소당 40백만원(융자28,자담12) | ○브랜드가맹점 개소당 50백만원(융자35,자담15) | ○현실에 맞게 단가조정 |
| ○2004년 대상자 신청 | ○2004년도 1월말까지 | ○2003년도 4월말까지 | ○대상자를 전년도에 확정 한 후 예산확보 추진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③ 축산물등급판정 ○ 사업내용 | ○ 계란등급판정 시범실시, 닭고기등급판정 사전 준비 | ○ 계란 및 닭고기 등급판정 추진 | ○ 품질고급화를 위한 등급판정 정착 추진 |
| ⑤ 직거래매취사업 ○ 지원조건 | ○ 기금융자 100% (연리5%, 1년이내 일시상환) | ○ 기금융자 100% (연리4%, 1년이내 일시상환) | ○ 용자금리 인하로 사업활성화 도모 |
| 35. 축산물안전성검 사및경영안정 ② 축산물검사 ○ 검사장비 구입내역 | ○ 구입 : 57종 153점 | ○ 구입 : 44종 98점 | ○ 장비의 첨단화로 구입 가격이 높아져 구입 장비 · 품목 · 종류가 줄어들음 |
| ○ 사업완료 및 정신 보고 | ○ 보고일시 - 사업완료후 1개월이내 | ○ 보고일시 - 2004.1.31까지 | ○ 보고기한을 명확히 하여 사업완료 · 정산을 효율적으로 이행 |
| ○ 검사재료비 지원 기준 | ○ 지원기준 - 국비 100% | ○ 지원기준 - 국비 100% ※ 국고보조가 부족한 경우 지방비로 추가 확보 지원 가능 | ○ 자치단체에서 지방비 확보에 유리하도록 단서 조항 명기 |
| 37. 친환경농업육성 ○ 지원조건 (대규모 · 소규모지 구조성사업 공통) | ○ 공동이용시설과 개별 생산시설 비율을 5:5로 적용 ○ 지원조건 (공동시설, 개별시설 공통) - 국고40%, 지방비40%, 자부담 20% | ○ 공동이용시설과 개별 생산시설 비율을 6:4로 적용 ○ 지원조건 - 공동이용시설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개별생산시설 :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 농업환경오염원 경감 효과 증대를 위해 공동 이용시설 비율 증대 - ('02) 50 → ('03) 60% ○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시설의 자부담 비율 증대 - ('02) 20 → ('03) 60%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 지원 사업 메뉴 (소규모지구조성사업)</p> <p>38. 농촌가공산업육성지원 ① 농산물가공산업육성 1. 사업내용</p> | <p>○ 공동이용시설과 개별 생산시설 지원 한도 - 공동 : 125백만원 - 개별 : 125백만원</p> <p>○ 지원사업 메뉴 - 농업환경오염 경감 시설·장비 추가 (공동이용시설)</p> <p>(4) 대상지역 ○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촌지역 - 군의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p> | <p>○ 공동이용시설과 개별 생산 시설 지원한도 - 공동 : 150백만원 - 개별 : 100백만원</p> <p>○ 지원사업 메뉴 - 농업환경오염 경감 시설·장비 추가 (공동이용시설) ·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집하장 또는 공동작업장 포함) · 산지 직판장 및 기타 계통판매에 필요한 시설·장비</p> <p>(4) 대상지역 <삭제></p> | <p>○ 개별생산시설 국고비율 변경으로 인해 금액 변경(인하)</p> <p>○ 대규모지구사업에는 공동이용시설 메뉴로 포함되어 있으나 소규모 지구사업에는 제외되어 있어 사업의 형평성을 위해 포함</p> <p>○ 지원대상자 및 지원 대상품목을 제한하고 있어 대상지역 제한은 중복규제 -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규제 완화</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2.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절차</p> | <p>(5) 지원기준 및 조건 ○용자조건 - 시설비 : (농가공동, 생산자 단체, 주류제조면허 추천·명인·신지식인 지정업체)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5.0% (일반업체)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5.5% - 운영비 : (농가공동, 생산자 단체, 주류제조면허 추천·명인·신지식인 지정업체)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5.0% (일반업체)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5.5%</p> <p>바.사업대상자선정 및 보고 ※ 시·도지사는 현지 사업성 조사결과 종합점수가 60점이하인 업체와 기존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가공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업체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나 사업자선정의 신속한 대체등을 위하여 동 심의위원회에서 예비후보를 선정할 수 있음.</p> | <p>(5) 지원기준 및 조건 ○용자조건 - 시설비 : (농가공동, 생산자 단체, 주류제조면허 추천·명인·신지식인 지정업체)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4.0% (일반업체)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5.5% - 운영비 : (농가공동, 생산자 단체, 주류제조면허 추천·명인·신지식인 지정업체)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4.0% (일반업체)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5.5%</p> <p>바.사업대상자선정 및 보고 ※ 시·도지사는 현지사업성 조사결과 종합점수가 60점이하인 업체와 기존 정부지원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별도의 가공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업체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나 사업자선정의 신속한 대체등을 위하여 동 심의위원회에서 예비후보를 선정할 수 있음.</p> | <p>○ 지원금리 인하로 참여 사업자의 부담경감</p> <p>○ 지원제의 대상자의 범위 명확화</p> |
| <p>②특산단지육성 1. 사업내용</p> | <p>(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조건 - 시설비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5% - 운영비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연리 5% (단 비농업인 : 55%)</p> | <p>(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조건 - 시설비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4% - 운영비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연리 4% (단 비농업인 : 55%)</p> | <p>○ 지원금리인하로 참여 사업자의 부담경감</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2. 사업대상자 선정 | <p>(3) 사업시행 (나)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사업계획수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당초 지원액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변경승인 후 그 결과를 대출 취급기관에도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간 예산증감이 발생시는 시·도 지원액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예산변경 조치 - 시·도간은 농림부장관이 변경조치 | <p>(3) 사업시행 (나)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사업계획수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의거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출 취급기관에도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장관 승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간 예산 변경 · 시·도간 사업장 변경 - 시·도지사 승인사항 (농림부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지원액 범위내에서 시·군간 예산 변경 · 시·군간 사업장 변경 - 시장·군수 승인 및 신고사항(시·도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내 사업장 변경(승인) ·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계획변경(승인) · 사업대표자 변경(신고) · 상호변경, 품목변경 등 경미한 사항(신고) <p>※ 위의 사항은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중에도 동일하게 적용</p> | ○ 보고체계 명확화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39.농업종합자금지원 | | | |
| 1.목 적 | ○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는 농업 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하고 시설·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을 통합 지원 | ○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는 농업 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하고 시설·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 농기계자금을 통합 지원 | ○ 30백만원이상 농기계 구입자금의 통합운영 |
| 2.시책 및 추진방향 | ○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지원 - 시설·개보수자금 및 운영자금을 일괄 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 - 사업발전단계별로 경영평가를 거쳐 추가지원을 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경영발전 지원 | ○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지원 - 시설·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농기계자금을 일괄 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 - 사업발전단계별로 경영평가를 거쳐 추가지원을 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경영발전 지원 | ○ 30백만원이상 농기계 구입자금의 통합운영 |
| 3.근거법령 | ○ 농업·농촌기본법 | ○ 농업·농촌기본법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 농어촌정비법 제66조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육성) | ○ 30백만원이상 농기계 구입자금, 관광농원사업, 농촌민박사업의 통합 운영 |

| 구 분 | 현 행 (2002) | | | | | | 변경안 (2003) | | | | | | 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4. 2002년도 지원계획 | 2001사업비 | | | 2002사업비 | | | 2002사업비 | | | 2003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계 | 국고 용자 | 대출 기관 용자 | 계 | 국고 용자 | 대출 기관 용자 | 계 | 국고 용자 | 대출 기관 용자 | 계 | 국고 용자 | 대출 기관 용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백만 원 | | | | | | 백만 원 | | | | | | |
| | 백만 원 | | | | | | 백만 원 | | | | | | | | | | | | | | | | | | | | |
| 1855 00 | 1485 00 | 3700 0 | 7230 00 | 1480 00 | 5750 00 | 7230 00 | 1480 00 | 5750 00 | 5400 00 | 1080 00 | 4320 00 | | | | | | | | | | | | | | | | |
| 5.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 * 원예특작과 축산 등 세부사업 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 | | | | | | * 원예특작과 축산 등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 | | | | | | ○ 지원대상자 및 지원제 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 | | | | | | | | | | | | | |
| | 1) 지원대상자 ○ 원예특작·축산분야 재배·생산에 종사 중이거나 신규로 종사하려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또는 선진 작목반(공동 이용시설에 한함) 으로써 소정의 사 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분야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타당 성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영체 - 시설·개보수·운영 자금 지원 ○ 쌀 농업에 종사하 는 농업인 또는 농 업법인, 정책자금 (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 기지원 유통 가공시설 보유사 업자, 경주마사육 축산농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관 광농원사업자 - 개보수 및 운영자 금에 한하여 지원 | | | | | | 1) 지원대상자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 서와 관련서류를 제출 하고 금융기관의 대 출심사·평가를 통 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 받은 농업인(신규포 함), 선진작목반(공 동이용시설에 한함), 1년 이상의 사업실적 이 있는 농업법인 - 원예특작, 축산, 농 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촌민 박사업은 시설·개보 수·운영자금과 농기 계자금 지원 -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 인(RPC·도정공장 제외), 농업정책자금 (지방자치단체사업 포 함)을 지원받은 유통 가공저장시설 보유사 업자, 경주마사육 축 산농가는 개보수 및 운영자금, 농기계자금 에 한하여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 <p>※ 지원제외 (신설)</p> <p>2) 지원조건</p> <p>○ 지원자금의 종류</p> <p>- 원예특작·축산 분야: 시설·개보수 자금과 운영자 금을 종합 지원</p> <p>- 기타 분야 : 개 보수·운영자금만 을 지원</p> <p>○ 지원조건</p> <p>- 상환조건</p> <p>• 시설자금 : 3~5년 거치 1 0년 균분상환 (*). 원예특작은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축산, 철골(유리 혹은 경질)은실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p> | <p>※ 지원제외</p> <p>- 농업정책사업 (지방자치단체 사업포함)의 자 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청 하는 경우</p> <p>2) 지원조건</p> <p>○ 지원자금의 종류</p> <p>- 원예특작·축산· 농촌관광분야: 시설·개보수·운영 자금과 농기계자 금을 종합 지원</p> <p>- 기타 분야 : 개 보수·운영·농 기계자금만을 지원</p> <p>○ 지원조건</p> <p>- 상환조건</p> <p>• 시설자금 : 3~5년 거치 1 0년 균분상환 (*). 원예특작은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축산, 철골(유리 혹은 경질)은실, 관광 농원, 농촌민박 사업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p> | <p>○ 정책자금의 이중 지원을 방지</p> <p>○ 30백만원이상 농기계 구입지원, 관광농원, 농촌민박사업을 통합 운영</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 <p>(신설)</p> <p>○ 자금용도: 상세한 것은 「6. 세부사업내용」 참조</p> <p>- 시설자금: 생산·재배시설, 저장·유통·가공시설 및 증축자금, 토지매입자금, 사업비 20백만원 이상의 에너지절감시설, 온실기능향상시설 등</p> <p>※ 기존 시설물 및 기초성과수원 구입시 지원제외</p> <p>※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p> <p>(신설)</p> <p>(신설)</p> | <p>· 농기계자금: 1년거치 4~7년 균분상환</p> <p>○ 자금용도: 상세한 것은 「6. 세부사업내용」 참조</p> <p>- 시설자금: 생산·재배시설, 저장·유통·가공시설 및 증축자금, 관광농원·농촌민박시설자금, 토지매입자금, 사업비 20백만원 이상의 에너지절감시설, 온실기능향상시설 등</p> <p>※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기존 시설물 구입시 지원제외</p> <p>※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p> <p>· 관광농원, 농촌민박사업 및 자가배합사료제조를 위한 경우 지원제외</p> <p>- 농기계자금: 대당 공급가격 30백만원 이상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구입에 필요한 자금</p> | <p>○ 농기계구입자금지원의 통합운영에 따라 지원자금 종류에 「농기계자금」을 신설</p> <p>○ 관광농원, 농촌민박사업의 통합운영</p> <p>○ 기존 시설물의 활용촉진</p> <p>○ 자부담에 의한 토지매입으로 무분별한 투자 방지</p> <p>○ 농기계구입자금 통합운영</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나.사업추진체계 | <p>2)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이하“취급사무소”)</p> <p>○ 농협 시·군지부 각급 사무소</p> <p>○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지역농·축협, 품목별·업종별 조합(이하 회원조합)</p> <p>4)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02) 500-2683~4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02) 500-2685~6 축산국 축산정책과 (02) 500-2688</p> | <p>2)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이하“취급사무소”)</p> <p>○ 농협 시·군지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p> <p>○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농업종합자금취급 지역조합, 품목조합(이하 회원조합)</p> <p>4) 사업담당부서: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02) 500-2683~4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02) 500-2685~6 축산국 축산정책과 (02) 500-2688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02) 500-1927~9 식량생산국 농업기계자재과 (02) 500-1789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 (02) 500-1964</p> | ○ 규정을 정비 |
| 다.자금지원결정 | <p>1) 사업신청 - 투자계획 수립단계에서 희망경영체에 대한 지도기관의 자문·상담을 제도화(시설자금에 한함)</p> <p>2) 자금지원결정 ※ 운영자금이나 개보수자금 신청의 경우는 시·군 의견조회를 하지 않음.</p> | <p>1) 사업신청 - 투자계획 수립단계에서 경영체가 희망하는 경우 지도기관에서 자문·상담 실시(시설자금에 한함)</p> <p>2) 자금지원결정 ※ 운영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군에 의견조회를 하지 않음</p> | ○ 규정을 정비 ○ 농기계구입자금 통합 운영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나.사업추진체계 | <p>2)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이하“취급사무소”)</p> <p>○ 농협 시·군지부 각급 사무소</p> <p>○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지역농·축협, 품목별·업종별 조합(이하 회원조합)</p> <p>4)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02) 500-2683~4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02) 500-2685~6 축산국 축산정책과 (02) 500-2688</p> | <p>2)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이하“취급사무소”)</p> <p>○ 농협 시·군지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p> <p>○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농업종합자금취급 지역조합, 품목조합(이하 회원조합)</p> <p>4) 사업담당부서: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02) 500-2683~4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02) 500-2685~6 축산국 축산정책과 (02) 500-2688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02) 500-1927~9 식량생산국 농업기계자재과 (02) 500-1789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 (02) 500-1964</p> | ○ 규정을 정비 |
| 다.자금지원결정 | <p>1) 사업신청 - 투자계획 수립단계에서 희망경영체에 대한 지도기관의 자문·상담을 제도화(시설자금에 한함)</p> <p>2) 자금지원결정 ※ 운영자금이나 개보수자금 신청의 경우는 시·군 의견조회를 하지 않음.</p> | <p>1) 사업신청 - 투자계획 수립단계에서 경영체가 희망하는 경우 지도기관에서 자문·상담 실시(시설자금에 한함)</p> <p>2) 자금지원결정 ※ 운영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군에 의견조회를 하지 않음</p> | <p>○ 규정을 정비</p> <p>○ 농기계구입자금 통합 운영</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사.사후관리 및 행정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급사무소는 개별경영체에 관한 채권·채무기록 등 금융정보와 거래기록 등 보유정보를 활용한 일상적 사후관리를 기반으로 연1회 이상 「경영실태조사」 실시 ○ 농협중앙회는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업무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해당 결과를 농협에 감사지도부 및 농림부에 보고 ○ 1억원 이상 지원 경영체는 농협중앙회에서 집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지도기관의 컨설팅 실시 - 필요한 경우 정부 지원 민간경영 컨설팅을 우선 실시 ○ 지원대상 농가 선정시 컨설팅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경영체에 대해 경영능력평가 우대(가점 5점부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개별경영체에 관한 채권·채무기록 등 금융정보와 경영체가 제출한 회계기록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농협중앙회는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농업종합자금지원추진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협의 감사지도부 및 농림부에 보고 ○ 1억원 이상 지원 경영체는 농협중앙회에서 집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취급기관은 이상징후가 있는 경영체에 대해 1차적으로 지도기관에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 통해 민간경영컨설팅을 우선 지원 ○ 지원대상 농가 선정시 컨설팅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경영체에 대해 경영능력평가 우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수정 ○ 문구수정 ○ 문구수정 ○ 2003년부터 비재무평가에서 분야별 특성에 따라 우대비중을 달리함.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 <p>○ 농협중앙회장은 사업 추진실적을 서식 2호 내지 서식 6호에 따라 주기별로 기간 종료후 10일 이내에 농림부와 시·도, 시·군에 보고 또는 통보</p> <p>- 2002년 사업정산 결과보고는 2003.3.20까지</p> <p>(신설)</p> | <p>○ 농협중앙회장은 사업 추진실적을 서식 2호 내지 서식 6호에 따라 주기별로 기간 종료후 10일 이내에 농림부와 시·도, 시·군에 보고 또는 통보</p> <p>- 매 회계연도 사업정산 결과보고는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p> <p>○ 농협중앙회장은 농기계 구입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농협중앙회의 농업종합자금 세부시행지침에 규정해야 함</p> <p>- 대출심사 완료 후 농기계를 선택토록 하여 농업인의 농기계선택권 보장</p> <p>- 특정공급자 또는 특정제품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대출심사의 부당한 지연, 불필요한 자료요구 등 특정공급자를 차별대우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대출담당자 등 관련 자에 대한 제재조치</p> | <p>○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의 정산결과 보고 시기를 보편적 용어로 규정</p> <p>○ 농기계구입자금 통합 관련 대출취급기관의 특정한 농기계 공급자에 대한 차별대우 방지 및 농업인의 농기계 선택권 보장</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 원예·특작분야 가. 지원대상사업</p> |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화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기, 방제기, 선별기, 절화선 별결속기, 저온 수송차량등 기계 장비 ○ 과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과원조성자금은 수급불안 우려품목(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자두, 매실, 유자)의 경우 지원을 제한하되, 다음의 경우는 지원가능 · 키낮은 밀식 사과원 · 가지 검은마름병 발생 과원(사과, 배) 폐원후 타과종으로 작목 전환시 * 수급불안 우려 품목으로서 '01년이후 신규 조성된 과원(키낮은 사과원 제외)에 대한 시설·개보수·운영자금지원 제한 |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화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장비 등 ○ 과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낮은 사과원 등 과원조성, 우량 품종갱신, 단감·감귤등 밀식원 간벌 - 관·배수시설, 비가림시설, 지주·덕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 과수용 기계장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분야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최근 과수 재배면적의 감소 등 과실수급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과수분야의 지원제한을 폐지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나.사업추진시 유의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면적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2001년 이전 조성한 과원의 시설·개보수 · 운영자금은 지원 가능 * 과수묘목생산 농가에 대해 시설·개보수·운영자금 지원 제한 · 배(신고), 포도(캠벨어리), 단감(부유), 감귤(조생은주) ○ 농기계가격은 생산업체가 농림부에 신고한 형식별 가격기준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가격" 참조 ○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 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집하장, 수송차량 등을 별개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장비 지원은 농기계분야 참조 ○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 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생산시설과 연계되지 않은 집하장, 수송차량 등을 별개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분야에 명시 ○ 예시사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축산분야 가.지원대상사업</p> <p>나.사업추진시 유의사항</p> | <p>- 기계장비 : 우형기, 선별기, 조사료생산 장비, 사료 분쇄기, 원유분석장비, 축산 분뇨처리장비(축산 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기계장비는 제외) 등</p> <p>○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 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p> <p>- (예) 집하장, 수송차량 등을 별개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p> <p>(신설)</p> | <p>- 기계장비 : 농기계 분야 참조</p> <p>○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 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p> <p>- (예) 생산시설과 연계되지 않은 집하장, 수송차량 등을 별개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p> <p>○ 자가배합사료생산 시설(장비)지원은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p> | <p>○ 자가배합사료생산시설 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자가배합사료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명시</p> <p>○ 예시사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p> <p>○ 사료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광우병, 구제역 등 가축의 질병 예방을 위해 지원대상에서 제외</p> |
| <p>□농기계분야</p> | <p>(신설)</p> | <p>가. 지원대상</p> <p>○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에 공급가격 30백만원 이상인 농기계</p> | <p>○ 농기계구입자금 통합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 <p>(신설)</p> <p>(신설)</p> <p>(신설)</p> | <p>- 공급가격 30백만원 이상인 농기계와 그 부속작업기, 선택품 등을 함께 구입할 때에는 일괄 지원하되 기종별 용자 지원한도액, 상환조건은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준용</p> <p>나.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백만원 미만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는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사업에서 지원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이외의 기계장비 또는 시설의 일부분인 정부 지원 대상 농 기계에 대해서는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 기계장비중 시설의 일부분으로 설치 될 때에는 해당 분야 시설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그 이외의 기계장비는 개보수 자금으로 지원 ○ 농기계가격은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가격” 참조 ○ 30백만원이상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준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사업에서의 농기계구입 지원과 「농업종합자금」에서의 농기계구입지원을 구분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44. 후계농업인육성 지원</p> <p>① 후계농업인육성</p> <p>○ 지원대상자</p> <p>○ 지원단가</p> <p>○ 지원조건</p> <p>○ 대상자 심의·추천</p> | <p><취농창업후계농업인></p> <p>②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거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예정자 포함)하는 자</p> <p><취농창업후계농업인></p> <p>○ 1인당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80백만원까지 차등지원</p> <p>○ 융자기간 : 국고융자 10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p> <p>○ 금리 : 신규후계농업인 자금 연리 5.0%,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연리 4.0%</p> <p>-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적격자만을 시장·군수등에게 추천(별지 제 2호 서식)</p> | <p><취농창업후계농업인></p> <p>② 2001년도 이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예정자 포함)</p> <p><취농창업후계농업인></p> <p>○ 1인당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100백만원까지 차등지원</p> <p>○ 융자기간 및 금리 : 국고융자 10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연리 4.0%</p> <p>- <삭제></p> | <p>○ 자격요건중 중복내용 삭제, '01년도이전 산업기능요원편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명시</p> <p>○ 취농창업후계농업인 1인당 지원규모 확대</p> <p>○ '02.7월부터 신규후계농업인 자금의 금리가 연리 4.0%로 변경</p> <p>○ '01년도 이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자에 대한 후계농업인 적격기준도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자와 동일</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 대상자 확정</p> <p>○ 행정사항</p> <p>○ 사후관리</p> | <p><취농창업후계농업인> ○ 사업시행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별도 평가절차 없이 지원금액만 결정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신설)</p> <p>1) 2002년도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선정계획 공고 ○ 시장·군수 등은 200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을 신청(2001.7월)한 자에 대하여.....적격자를 추가 선정 하여야 한다. (신설)</p> <p>○ 시장·군수 등은 사업자금을 지원 받은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p> | <p><취농창업후계농업인> <삭제></p> <p><취농창업후계농업인> ○ 한국 농업 전문 학교 졸업자(사업시행년도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취농창업후계농업인 평가기준으로 300점 이상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사업자금 지원 없이 대상으로 선정가능 <삭제></p> <p>○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로서 사업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년도 부터 15년간 사후관리 실시</p> <p>○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p> | <p>○ 후계농업인 평가기준에 따라 취농 창업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어야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으로 인정됨</p> <p>○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는 의무영농종사기간(6년)이 있는 점을 감안, 젊은 농업인력 확보 차원에서 예외 인정</p> <p>○ '02년도 사업에만 해당되는 한시적 규정('0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는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신청을 먼저 하여야 함)</p> <p>○ 사업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한국 농업전문학교 출신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도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사후관리 실시</p> <p>○ 사업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한국 농업전문학교 출신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도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사후관리 실시</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사업취소사유 |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이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후 다음 사항의 융자금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확인 실시(별지 제6호서식) |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확인 실시(별지 제6호서식) | ○융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후계농업인도 부실화될 경우 사업취소 대상에 포함 |
| ②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신청자격 ○신청자격 | ○5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3년이상 농업인 단체 또는 여성관련단체에서 활동한자 |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농업인단체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자는 가점 | ○5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가 많지 않고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완화 및 문호개방 |
| ○사업중에 사업자 교체 | (신설) | ○자격·경력 등이 적합해야하고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인정 | ○사업의 지속을 위한 근거 |
| ○사업신청서 접수 기관 | ○농림부 | ○센터관할 시·군→ 시·군에서는 내용검토 후 도에 이송 | ○사업자 선정 권한을 도에 이관 |
| □선정기준 및 절차 ○평가항목 | ○자격·경력, 시설기준, 사업내용으로 평가 | ○자격·경력, 시설기준, 사업내용을 평가하되, 계속 사업자에게는 know-how를 인정하여 가점 부여 | ○신규사업자나 계속 사업자의 구분없이 평가에 의하여 지원, 단 계속사업자에게는 5점 범위내에서 우대 |
| ○단체의사업계획서 | (신설) | ○단체의 설립목적과 센터사업 목적의 일치 여부,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확인 | ○단체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여부 확인 |
| □기타 ○기존 타사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자에 대한 심사요건 강화 | (신설)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타사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중지원 방지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45.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p> <p><input type="checkbox"/>신청자격·절차·구비서류</p> <p>○지원대상</p> <p>○신청서제출시기</p> <p><input type="checkbox"/>선정기준·우선순위·절차</p> | <p>○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 -단, 편부·모 자녀는 인문계고교생 포함</p> <p>○12월말까지 1회</p> <p>○지원신청서에 보호자 및 가족의 직장으로 부터의 학비수당 등 수령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음</p> | <p>○인문계고등학교 재학생 까지로 확대</p> <p>○반기별(12월말,6월말)로 2회 제출</p> <p>○지원신청서에 보호자 및 가족의 직장으로 부터의 학비수당 등 수령여부 기재 및 행정기관 확인 의무화</p> | <p>○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부담경감 도모</p> <p>○부당지원 사례 방지를 위해 신청인 책임 강화</p> <p>○부당지원 사례 방지를 위해 심사요건 강화</p> |
| <p>46.농업경영컨설팅 지원</p> <p>I.농업컨설팅지원</p> <p>2.시책 및 추진방향</p> | <p>I.농업컨설팅지원</p> <p>2.시책 및 추진방향</p> <p>○ 컨설팅트교육프로그램개발 실시 (신설)</p> | <p><삭제></p> <p><삭제></p> <p>○가공업체의 경우 전문가의 종합적 경영혁신 방안을 구체화한 경영혁신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가공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종합컨설팅 체제 확립</p> | <p>○II가공분야와 폐지 통합</p> <p>○컨설팅공급업체의 업무</p> |
| <p>3.근거법령</p> | <p>○농업·농촌기본법 - 제17조 및 제25조 (신설)</p> <p>(신설)</p> | <p>○농업·농촌기본법 - 제17조 및 제25조 - 제33조(농산물가공산업의 육성)</p> <p>○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1조(가공업자의 경영 개선지원)</p> | <p>○가공분야 규정 추가</p> <p>○가공컨설팅에 대한 근거 법령 추가</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5.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추진체계> 다. 컨설팅대상 경영체 선정 및 컨설팅 기관·업체 지정 | (2)지원대상 (신설) (3)지원규모 및 조건 ○ 컨설팅비용지원 : 1경영 체당 평균 10백만원 (신설) -사업비한도 : 법인 - 3백~14백만원 개별농가 - 2백~7백만원 ※ 계약기간 : 1년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 발효일이 2002.10.31 이내인 경우 2003년 까지 지원 가능 | (2) 지원대상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가공업체 ○ 컨설팅비용 지원 : 경영 체당 평균 8.5백만원 -농업법인, 가공업체 : 2.5~10백 만원 -개별농가 : 15~5백 만원 ○ 사업비한도 -농업법인, 가공업체 : 5~20백 만원 -개별농가 : 3~10백 만원 ※ 계약기간 : 1년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 발효일은 2003.10.31 이내로 체결토록 하고 계약종료는 2004.6.30 이내로 함 | ○ 가공업체 추가 ○ 경영체당지원금액명시 ○ 사업비한도를 확대하여 우수경영체 위주로 지원 ○ 사업을 조기에 추진 완료 ○ 기지원자 및 지원대상을 모두 포함 ○ 전문경영인 우대 ○ 수출경영체 우선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라. 사업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컨설팅 경영체 ○ 정책자금 받고 부실화 우려가 있는 경영체 4) 지원대상경영체 추가선정 (2) 컨설팅공급기관 업체 지정 1) 지정신청자격 ○ 농업분야 컨설팅 서비스를 전문인력을 4인이상 보유한..... 또는 4인이상의..... ○ 인터넷 및 농림수산물 보망(AFFIS)을 활용한 농업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예정인 컨설팅 공급업체 ○ 컨설팅공급업체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기 그룹을 확보해야 함 1) 대체전문인력 확보 2) 「별표2」에서 분류한 서비스분야중 내부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분야는 각 2인 이상의 외부인력 포함 3) 지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는.....감안, [회계·재무], [원예], [특작] 분야 등을 구분하여 기관·업체를 심사할 수 있음 (1) 계약체결 2) 계약체결 및 계약승인요청 ○ 계약체결건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 시·도당 20건 전국 50건 이내 (2) 지원금액결정 및 계약의 효력 ○ 사업비 지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부담은 시·도 (시·군) 명의를 전용계좌에 입금토록하여 시·도 (시·군)에서 보조금과 함께 지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분류항목이 많은 경영체 ○ 정책자금 지원대상 경영체 <li style="text-align: center;"><삭제> ○ 농업분야 컨설팅 서비스를 전문인력을 4인(가공분야는 1인) 이상 보유한.....또는 4인(가공분야는 1인)이상의.. ○ 인터넷 또는 농림수산물 보망(AFFIS)을 활용한 농업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컨설팅 공급업체 ○ 컨설팅공급업체는 「별표2」에서 분류한 서비스분야중 내부전문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분야는 각 2인이상의 외부전문기 그룹을 확보해야 함(가공분야는 제외함) <li style="text-align: center;"><삭제> <li style="text-align: center;"><삭제> ○ 도지사는.....감안, 품목별, [별표2]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관·업체를 심사할 수 있음 ○ 계약체결건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 시·도당 30건 전국 60건 이내 - 자부담은 농가가 공급업체에 계좌에 직접 입금, 시·도 (시·군)은 이를 확인후 보조금을 지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항목 조정 ○ 우수경영체 위주로 지원 ○ 차순위자를 선정 ○ 가공분야는 1인이상 ○ 업체의 정보화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 ○ 조문정리, 가공은 제외함 ○ 대체인력은 별도로 사전 확보 불필요 ○ 위 본문에 규정 ○ 컨설팅기관·업체 선정의 합리화 도모 ○ 농업인이 인정하는 우수 공급업체에 혜택부여 ○ 농림사업자급집행 관리 기본규정 제4조에서 자부담의 특정기관에 예치금지, 보관금 사고 방지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행정사항> 가.사후관리 | (2)정보통신네트워크구축 -지원대상경영체의 농 림수산정보망이용실 적을 농림부와 각 시·도지사에게 계약 발효후 매월 10일까지 보고 ○농림부는 경영정보화 교육을 희망하는 지원 대상경영체가 경영 정보화교육을 이수 하기를 원할 경우 농림 수산정보센터의 협조를 얻어 정규 또는 특별 교육과정 마련(자부담 20~25%) | <삭제> <삭제> | ○ 확인서발급으로 같음 ○ 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편성토록함 |
| [별 표 2] 컨 설 텅 서비스의 분류(내용에 따른 분류) | 1)경영진단 및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2)지장·회계·재무관리 컨설팅 3)농자재조달·가공· 마케팅컨설팅·농기계 이용 4)기술·생산관리컨설팅 5)정보화컨설팅 6)기타농업경영혁신에 필요하다고 시·도지 사가 인정하는 컨설팅 | 1)경영컨설팅 2)사업계획컨설팅 3)생산(사양)기술컨설팅 4)가공기술컨설팅 5)기타농업경영혁신에 필 요하다고 시·지사가 인정하는 컨설팅 | ○ 가공분야 추가 및 경영 컨설팅 내실화 |
| (결합방식에 따른 분류) | ○ 종합과 부분컨설팅으로 구분 | <삭제> | ○ 농업인의 선택폭을 확대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서식정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보유현황[별지서식1-1] ○ 외부전문가그룹확보현황[별지서식1-2] ○ 추진상황보고[별지서식7-1] ○ 결과요약보고[별지서식7-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보유현황[별지서식4-2] <삭제> ○ 추진상황보고[별지서식10-1] <삭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통합·정비 ○ 별지서식4-2에 통합 ○ 양식통합·정비 ○ 별지서식10-1에 통합 |
| II.가공산업농업경영 컨설팅지원 | II.가공산업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삭제> | ○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과 통합운영하고, 본 지침은 폐지 |
| 48.농업직접지불제 ①경양이양직접지불 | ○ 65세이상(사고, 질병 등의 경우 60세이상) | ○ 65세이상 75세이하 (사고, 질병 등의 경우 60세이상) | ○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인 집행을 위해 대상연 령 조정) |
| ○ 대상연령 | ○ 소유답을 농업기반공사나 전업농에게 매도 또는 5년이상 임대시 지급 | ○ 소유답을 농업기반공사나 전업농에게 매도시 지급.다만, 신청년도 12월 말일 현재 71세 이상인 자는 5년이상 임대시도 지급 | ○ 완전경영이양 촉진을 위해 매도시만 지급 하되, 5년이상 임대시 영농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고령농은 임대시도 지급 |
| ○ 지급요건 | ○ 벼를 경작하고 있는 답(농업진흥지역밖도 지급) | ○ 농업진흥지역내 답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된 답 | ○ 우량농지 위주 지급으로 영농규모화 사업과의 연계강화 |
| ○ 지급대상농지 | ○ ha당 281만원 (지원상한 : 1,500만원) | ○ ha당 289만원 (지원상한 : 1,500만원) | ○ 지급단가 인상 |
| ○ 보조금 지급단가 | | |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 지급대상자 선정 | ○ 선정 우선순위 <'01년 신청자> - 연령이 많은 자 - 신청접수가 빠른 자 - 농지 매도자 <'02년 신청자> - 농지매도자 | ○ 선정 우선순위 - '01년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자 및 '02년 신청자중 농지 매도자 - '03년 신청자중 농지 매도자 ※경합시는 영농규모가 적은자, 농업진흥지역 농 매도자, 연령이 많은 자 순 지급 - '03년 신청자중 농지 임대자 | ○ '02년까지 신청자중 예산부족으로 미지급 한 자 및 농지 매도자 우선 지급 |
|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 1. 사업대상 | ○ 논·밭 구분 없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게 보조금 지급 <친환경직불 : 밭부문> | ○ 논 부문은 논농업직 불제에 통합하고 밭 부 문만을 대상으로 실시 | ○ 논농업직불과의 사업 특성화 |
| 2. 지원단가 | ○ 524천원/ha <친환경논직불 : 논부문> ○ 기본단가 : 524천원/ha | ○ 친환경농업 실천등급에 따라 지원단가 차등지급 - 유기·전환유기 794 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기본단가 : 500천원/ha ○ 인센티브 : 친환경농업 실천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유기·전환유기 270천 원/ha, 무농약 150 | ○ 수준 높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단가 인상 및 차등화 ○ 논농업직불 지원단가로 일원화 ○ 논부문의 친환경실천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인센티브제도 도 입 및 수준 높은 친환 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단가 차등화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③농업직접지불 1. 지급기준 2. 대상농지 3. 마을협약체결 및 협약서 제출 4. 논의 형상과 기능 점검 5. 영농기록장 기록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농업직불제 -진흥 : ha당 500천원 -비진흥 : ha당 400천원 ○ 2002년에 신규 신청기 회 부여 ○ 마을협약 체결 ○ 점검결과를 9월 30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지 ○ 영농기록장 기록여부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소 장이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농업직불제 -진흥 : ha당 500천원 -비진흥 : ha당 400천원 -친환경직불제 논부문 : 진흥·비진흥 구분 없이 ha당 500천원 ○ 2003년부터 신규신청 및 선정을 하지 않음 ○ 마을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제재 ○ 점검결과를 10.15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지 ○ 영농기록장 기록여부를 읍·면·동장이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농업직불제 제도개선 -친환경농업직불제 논부문을 농농업직불제에 포함 지원 ○ 농농업직불제의 생산 중립 요건 충족 ○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 정착 ○ 농업기반공사 의견 반영 ○ 농촌진흥청 의견반영 *농업기술센터의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에 어려움 |
| 49.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2. 시책및추진방향 | -2002년에는 사과·배·포도·단감·감귤·복숭아를 대상으로 주산지를 중심으로..(후략) | -2003년에는 사과·배는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고 포도·단감·감귤·복숭아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가입상황 등을 분석·검토하여 2004년부터 전국확대추진 | ○ 2003년 사과·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 |
| 50.농가도우미지원 <input type="checkbox"/> 신청자격·절차·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지원대상 | <input type="checkbox"/> 163개 시·군 | <input type="checkbox"/> 특별시·광역시·도의 시·군·구 | <input type="checkbox"/>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도 지원대상에 포함 |
| 51.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①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input type="checkbox"/> 사업대상자 - 관광농원 - 휴양단지 - 농촌민박 <input type="checkbox"/> 주말농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및 단체(3호이상) - 시장군수,농기공,농협산협 - 5호이상 농가 - 시장군수, 농기공, 농협, 농업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및 단체(3호이상 제외) - 제한없음 - 기존주택을 개보수 또는 증개축하여 민박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 제한없음 |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의함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지원규모 - 관광농원 - 농촌민박 | - 지구당 450백만원 이내 - 가구당 1,500만원 |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 자금(관광농원은 총사업비 70%범위내에 서 연간 3억원 이내) | ○'03부터 관광농원, 농촌 민박은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 |
| ○사업규모 - 관광농원 | - 기본시설 : 영농체험시설 면적이 4천㎡이상으로 농 원의 40% 이상, 농특 산물관매시설 30㎡이상 | - 기본시설 : 영농체험시설 면적이 2천㎡이상으로 농원의 20% 이상 ※ 농특산물판매시설은 자율시설로 전환 | ○규제완화를 위해 시설기준 하향조정 또는 폐지 |
| - 휴양단지 | - 숙박,식당시설 면적의 합이 농장면적의 25% 이내 - 기본시설 : 농림어업 전시관(60㎡이상), 학 습관(60㎡이상), 지역 특산물판매장(30㎡이 상) | - 숙박,식당시설 면적제 한 폐지 - 기본시설 : 농림어업전 시관(60㎡이상), 학습관(60 m²이상) ※ 특산물판매장은 자율시 설로 전환 | |
| - 농촌민박 | - 마을당 5호이상 공동참여, 호당 5실한도 개보수 또는 증개축 | - <폐지> | |
| - 주말농원 | - 사업규모 : 5만㎡미만 · 임대농지 면적이 전체의 40% 이상이고 임대농 지를 포함한 영농이용 면 적이 60% 이상 | - <폐지> | |
| ○추진절차 | | | |
| - 관광농원 | -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 - 지구지정절차 폐지 | ○농어촌정비법 개정 |
| - 주말농원 | " | - 절차 폐지 | |
| - 농촌민박 | - 대상자 선정사 사업계 획서 작성 제출 | - 사업계획서 제출 폐지 |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②녹색농촌체험활동 지원</p> <p>5.사업시행요령</p> <p>I.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p> <p>< 공통 ></p> <p>가. 사업내용</p> <p>2)지원대상</p> <p>3)지원조건</p> <p>나. 사업추진체계</p> <p>3)사업추진절차개요</p> <p>4)마을심사위원회</p> <p>다.사업추진 세부절차</p> <p>2)녹색농촌체험마을 추천</p> <p>가.시장·군수의 추천</p> <p>나. 시·도지사의 추천</p> | <p>도지사</p> <p>③지정된 시범마을은 ... (중략)...이수 하여야 함</p> <p>※3년이상 실거주한 마을 내 비농가도...(후략). (신설)</p> <p>○ 지원금액:마을협정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 및 소요자금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총 사업비(도당 4억원)범위내에서 3억원까지 보조지원</p> <p>*도에서 시·군·개별 마을로 공모하여 1차심사 후 농림부에 3배수추천</p> <p>○구체적인...(후략) -농림부 국장급공무원, ... (중략), 소비자단체 등 10~15명</p> <p>○시장·군수는 제출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대해 직권 혹은 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내 1개 마을 또는 마을연합을 선정</p> <p>○도지사는 시·군별로 1개 마을 또는 마을연합을 공모하여 추천한 마을 또는 마을연합에 대해 도마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농림부에 3배수를 추천</p> | <p>시·도지사</p> <p><삭제></p> <p>※마을내...(후략)</p> <p>※광역시는 준농어촌지역의 마을에 한함</p> <p>○지원금액:마을협정과... (중략)..... 심사를 거쳐 마을당 2억원수준에서 지원(국고 50%, 지방비 50%)</p> <p><삭제></p> <p>○구체적인...(후략) -관련공무원, 학계, 농촌관 광전문가, 농업관련단체 등 10~15명</p> <p>○시장·군수는...(중략)..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타당성 검토후 관내마을에 대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추천</p> <p>○시·도지사는 시·군별로 추천한 마을 또는 마을연합에 대해 사업타당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추천</p> | <p>○광역시포함</p> <p>○'03년도 참여주민 교육 훈련은 농림부에서 추진</p> <p>○실거주 요건 삭제</p> <p>○'03예산안에 마을당 지원탄력성 확보</p> <p>○시·도별 안내방식 다양 -전국의 신청마을 전체를 평가하므로 여건이 좋은 마을 선정</p> <p>○심사위원의 탄력성 확보</p> <p>○추천마을수 제한 폐지 -전국의 신청마을 전체를 평가하여 여건이 좋은 마을 선정</p> <p>○추천위원회 폐지</p> <p>○추천마을수 제한 폐지 -전국의 신청마을 전체를 평가하여 여건이 좋은 마을 선정</p> <p>○심사위원회 폐지</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4)녹색농촌체험마을 심사결과 통보 | (신설)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 1인을 현장지도 책임자로 지정하여 마을 지원 | |
| II.녹색농촌체험지원 체계 구축사업 | ① 체험프로그램개발 ② 주민교육프로그램개발 ③체험지도자격제도개발 등 서비스전문가 양성 방안 연구 ④체험교류포털사이트 구축 | <삭제> | ○'02년 연구용역원료로 삭제 |
| 52.농공단지육성 5. 2003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사. 사업비 지원 | ○농어촌지역별 단지 조성비 지원 7)전문단지 및 지역특화 산업단지는 우선지원 농어촌지역의 지원기준을 적용 | | |
| 53.한계농지정비 | (신설) | -일반농어촌지역의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산업단지는 예산편성에 의함 | ○2003년도 신규지구 예산 편성 적용 (현행) 평당 10만원 → (변경안) 평당 5만원 |
| ○사업분류 ○사업시행자 | ○공공사업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협 및 산림조합 | ○자율사업 ○시장·군수, 민간 등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의함 -공공개발을 민간개발로 확대 |
| ○사업내용 | ○사업내용 -농림수산업적이용 -농어촌휴양자원이용 -다목적 이용 | ○사업내용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시설 -농어촌관광휴양자원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 -문화예술관련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민간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다양화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한계농지조사 ○예정지조사 ○기본계획수립</p> <p>○한계농지지구 지정 및 고시</p> <p>○임대 및 분양</p> <p>54.농가경영안정지원 ①농축산경영자금지원 7.대출실행 및 채권 보전</p> <p>55.농어촌생활환경 정비 ①정주권개발 5. 2003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나.정주권개발사업 (나)지원조건</p> <p>②문화마을조성 1.목적</p> | <p>(신설)</p> <p>○예정지조사 실시 ○기본계획수립 실시 ○지역여건에 따라 농어촌 정비법의 생산기반, 휴양 자원개발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계획수립 절차 이행</p> <p>○시·도지사가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 승인후 지정 및 고시</p> <p>○임대 및 분양대상자를 한정 특례</p> <p>○ 대출제한대상 - 농·축협 여신관련 규정에서 정한 대출부적격자(다만, 보증채무 연체거래자는 대출가능)</p> <p>○보조사업비는 양여금 80%, 지방비 20%(부담 비율은 예산편성에 따름)</p> <p>농어촌 면지역의 중심거점마을(중심마을)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여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생산기반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로 정비</p> | <p>○한계농지조사 고시 ○예정지조사 폐지 ○기본계획수립 폐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승인후 사업 시행</p> <p>○시장·군수가 도지사 승인후 지정 및 고시</p> <p>○<삭제></p> <p>○ 대출제한대상 - 농협 여신관련 규정에서 정한 대출부적격자(다만, 단순 보증채무 연체거래자는 대출가능하며, 특수채권보증채무자로 등록된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p> <p>○보조사업비는 지방양여금을 기준하되, 부족사업비는 지방비로 충당</p> <p>농어촌 면지역의 중심(거점)마을 등에 집중 지원하여 생활환경을 정비하고농촌관광, 농촌체험활동, 소득증대사업 및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로 정비</p> | <p>○일반인에게 정보제공 ○사업추진절차 간소화 ○사업추진절차 간소화</p> <p>○농정심의회 심의생략 등 사업추진절차 간소화</p> <p>○민간개발을 감안하여 제한규정을 규제완화</p> <p>○대출제한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p> <p>○지방비 부담을 폐지 하고,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지방비부담은 자율화</p> <p><지구 수정 ></p> <p><내용 추가 > 농촌관광, 농촌체험활동 등과 연계</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2.시책및추진방향 가.기본방향</p> | <p>발전가능성이 큰 면단 위 정주권의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기반정비(마을내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시설 등), 주택단지조성, 공동이용시설(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주차장, 농기계보관소 등), 환경기초시설(마을하수도 시설), 주택등을 종합정비하고,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소득원개발 사업 등 연계 추진</p> | <p>정주권 개발대상면내의 발전 가능성이 큰 중심(거점)마을 등에 마을기반정비(마을내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시설 등), 주택단지조성, 공동이용시설(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주차장, 농기계보관소 등), 환경기초시설(마을하수도 시설),주택등을 종합정비하고, 농촌관광, 농촌 체험활동, 농업생산기반 조성 및 소득원개발 사업 등 연계추진함으로써 농촌의 생활환경개선 및 농촌 활력 증대</p> | <p>○ 자구 수정 ○ 농촌관광, 농촌체험활동 등과 연계추진</p> |
| <p>5.2002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p> | <p>○ 면개발계획서상의 일정규모 이상의 중심마을생활권 지역의 거점마을(중심마을)에 대하여 마을여건에 맞도록 생활환경정비 및 현대화 추진 ○ 원지형을...(후략) (신설)</p> | <p>○ 정주권대상면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중심(거점)마을 등에 대하여 마을여건에 맞도록 생활환경정비 및 현대화 추진 ○ 원지형을...(후략) -농촌관광 및 농촌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정비 및 마을가꾸기 -공가를 매수 또는 철거하여 공동이용시설 또는 주차장 등의 부지로 활용</p> | <p>○ 자구 수정 ○ 농촌관광, 농촌체험활동 등과 연계 ○ 기존마을정비내용 포함</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사업계획수립> 가.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p> | <p>○사업예정지 선정은 농림부 전체사업계획에 해당하는 당해 시도에 배분된 사업량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선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p> <p>○면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된 면중에서 개발계획서상의 중심마을 중 다음 요건에 합치되는 마을중에서 선정 (신설)</p> <p>-향후 도시화가 가능한 마을은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도시근교지역, 주변 땅값이 비싼 지역 등은 제외)</p> <p>○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예정지중 당해 시·도에 배분된 사업량을 선정하여 시·도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p> | <p>○시·도지사는 정주권대상면의 중심(거점)마을 등을 대상으로 농림부 전체사업계획에 따라 당해 시도 배분량 범위내에서 다음 요건의 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함.</p> <p>-농촌관광,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육성할 지역으로서 생활기반정비가 필요한 지역</p> <p>-향후 도시화가 가능한 마을은 대상지 선정에서 후순위</p> <p>·도시근교지역, 당해지역 땅값이 비싼 지역 등</p> <p>○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예정지중 당해 시도 배분량의 2배까지를 선정하여 시·도내 우선순위 및 시·도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p> | <p>○자구수정</p> <p>○농촌관광, 농촌체험활동 등과 연계</p> <p>○자구 수정</p> <p>○자구 수정</p> |
| <p>나. 계획수립 (1) 기본계획</p> | <p>○시장·군수는 다음년도 사업예정 지구가 선정되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능한한 선정 당해연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며,</p> | <p>○기본계획 수립을 지시 받은 시장·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능한한 선정 당해연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며,</p> | <p>○자구 수정</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다.시행계획의 변경 | <p>(신설)</p> <p>○기본계획에는 사업대상지구에 대하여 마을현황, 마을의 생활수준 지표 및 목표 설정, 기본계획의 개요, 주요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 포함), 마을하수도시설계획, 주택개발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기간등과 연관사업(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농어촌도로 등)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p> <p>○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 다음 서류와 함께 농림부장관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함. 단, 기존마을만 정비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p> <p>○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후략). -명칭의 변경 -마을정비구역지정면적의 10/100범위 안에서의 증감 (신설)</p> | <p>○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농촌관광사업을 육성할 마을은 체험관광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기본계획에는 사업대상지구에 대하여 마을현황, 마을의 생활수준 지표 및 목표 설정, 기본계획의 개요, 주요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 포함), 마을하수도시설계획, 주택개발계획, 타지분양 우선순위별로 구분한 수요예측, 사업비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기간등과 연관사업(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농어촌도로 등)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p> <p>○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 다음 서류와 함께 농림부장관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함. <단서조항 삭제></p> <p>○..... -문화마을조성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택지의 용도 변경</p> | <p>○농촌관광, 농촌체험활동 등과 연계</p> <p>○분양을제고대책포함</p> <p>○기존마을정비도 신규마을과 동일하게 농림부승인토록 통일</p> <p>○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구체화</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p>마. 주택건축</p> <p>③ 농촌마을하수처리 시설 2. 시책 및 추진방향</p> <p>56. 농촌생활용수개발 5. 2003년도 사업시행 요령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2) 관리방법</p> | <p>(신설)</p> <p>가. 기본방향</p> <p>○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의 시행 및 유지관리는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 공동)」에 의거 추진</p> <p>○ 수질검사: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 4조(수질검사횟수)의 규정에 따라 냄새·맛·색도·탁도·일반세균·총대장균수·암모니아성질소· 및 질산성질소에 관한 검사는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전항목 검사(46개)는 매년 1회 이상 실시</p> | <p>○ 기존마을의 노후된 주택 신축 및 개량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가. 기본방향</p> <p>○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의 시행 및 유지관리는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02.8.24)에 의거 추진</p> <p>○ 수질검사: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02.6.21개정)” 제4조(수질검사횟수)의 규정에 따라 일반세균·총대장균· 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 불소·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냄새·맛·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는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전항목 검사(46개)는 매년 1회 이상 실시</p> | <p>○ 기존마을정비 내용 포함</p> <p>○ 개정 지침에 따르도록 수정</p> <p>○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2002.6.21 개정) 변경에 의함</p> <p>- 매분기 검사 : · 8개항목 → 13개항목</p>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61. 임산소득증대 ①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 지원조건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 표고 생산기반 지원 ○ 대추·호도 생산 기반 지원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② 조정수·분재 생산 ○ 지원조건 ③ 산림복합경영 ○ 지원조건 62. 임산물 이용·가공 및 보드류 시설 지원 ① 임산물 이용·가공 지원 ○ 지원조건 -임산물 이용·가공시설 -간벌·소경재 활용 장비 ○ 국산 임산물 및 폐목재 구입자금 지원 대상자 ○ 폐목재 구입자금 융자한도액 | ○ 연리 5% ○ 원목 및 톱밥 재배 시설비 : 50백만원 (신설) (신설) ○ 연리 5% ○ 연리 5% ○ 연리 5% (신설) ○ 5억원 이내 | ○ 연리 4% ○ 원목 재배시설비 : 50백만원 ○ 톱밥 재배시설비 : 200백만원 ○ 묘목대 ○ 묘목대, 오갈피 재배단지 조성 ○ 연리 4% ○ 연리 4% ○ 연리 4% ○ 연리 5% (신설) ○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 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 합판·보드류를 원자재로 하여 책·결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 ○ 융자한도액 삭제 | 임업인 부담경감 톱밥 재배시설의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소득증대사업 지원 확대 소득증대사업 지원 확대 임업인 부담경감 임업인 부담경감 임업인 부담경감 국산 목재 이용 촉진 폐목재 재활용 촉진 |

| 구 분 | 현 행 (2002) | 변경안 (2003) | 변경사유 |
|---|--|--|--|
| 64. 임산물 유통 개선 지원 ①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 지원조건 -임산물유통센터 지원 -임산물 포장개선 -임산물 공판시설 -수출원자재 구매 ② 임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 ○ 지원조건 ③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 지원조건 | ○ 연리 5% ○ 연리 5% ○ 연리 5% | ○ 연리 4% ○ 연리 4% ○ 연리 4% | 임업인 부담경감 임업인 부담경감 임업인 부담경감 |
| 65.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등 육성 ○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 임야 매입자금 지원대상 제한 | ○ 독립가 : 3억원 ○ 임업후계자 : 2억원 (신설) (신설) | ○ 좌동 ○ 좌동 ○ 신지식임업인 : 1억원 ○ 평당 10,000원 이상 임야는 매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지식 사례 확산 보급 투기 목적의 용자사례 방지 |
| 67. 산림휴양공간 및 산림박물관 등 조성 ③ 생태숲 조성 | ○ 「②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에 포함하여 지원 기준 등 개략적인 사항만 규정 | ○ 대상지 선정 기준, 사업추진체계 등을 구체화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 |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 70. 산림자원 조성 ① 조림·육림·묘목생산 ○ 지원조건 -조림용 묘목생산 ○ 육림 ○ 묘목생산 ③ 산지목재비축 지원 | ○ 연리 5% (신설) (신설) (신규) | ○ 연리 4% ○ 수원함양조림지를 대상으로 풀베기 사업 실시 - 사업량 : 3,000ha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 - 사업량 : 96ha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대상, 지원조건, 추진체계,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 | 임업인 부담경감 수원함양조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도모 토양 산성화를 방지하여 우량건묘 생산에 기여 대경제 생산을 유도하여 산림자원의 부가가치 제고 |

여 백

VI. 기타 주요사항

1.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

본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의 내용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법령, 동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요령, 지침 등과 금융기관의 정책자금관련 규정, 요령, 지침 등의 변경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대출제도 概觀

(1) 대출절차 : 본문 참조

(2) 신용대출

- 대출한도
 - 무입보신용대출 : 1,500만원
 - 보증부신용대출 : 3,000만원(무입보신용대출 1,500만원 포함)
 - 농업인후계자자금 3,000만원, 농기계구입자금 300만원
- 연대보증인 입보는 대출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름

(3) 담보대출

- 주요 담보종류 및 대출 가능금액(농협중앙회 기준)

| 담보물의 종류 | 대출가능금액 |
|-----------------------------------|------------------------|
| ○ 부동산 | ○ 감정평가액의 60%이내에서 선순위권리 |
| - 아파트 |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 |
| - 연립단독주택 | ○ 감정평가액의 60%이내에서 " |
| - 기계·기구(공장저당권에 한함) | ○ 감정평가액의 40%이내에서 " |
| - 기타부동산 | ○ 감정평가액의 60%이내에서 " |
| ○ 예·적금, 신탁의 수익금 | ○ 예입액의 90%이내 |
| ○ 공제증권 | ○ 해지환급금의 90%이내 |
| ○ 신용보증서 | ○ 보증금액의 100%이내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 보증금액의 100%이내 |
| - 신용보증기금 | ○ 보증기금의 100%이내 |
| - 기술신용보증기금 | ○ 보증기금의 100%이내 |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 보증기금의 100%이내 |
| - 기타 중앙본부가 인정한 신용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 ○ 보증기금의 100%이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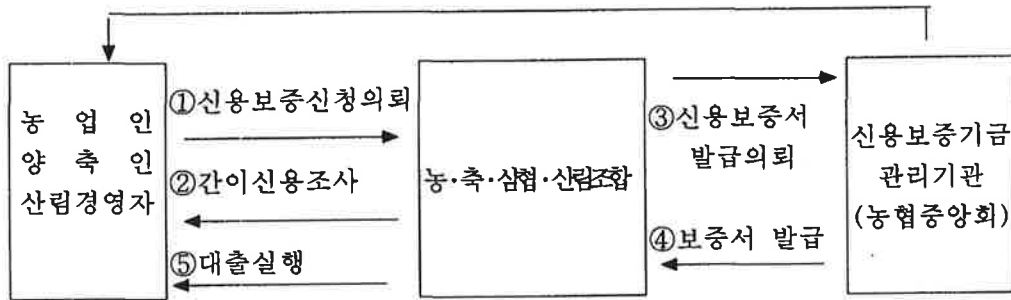
(주) 선순위권리해당액 : 선순위설정금액, 우선채권(주택외의 부동산인 경우 임차보증금,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은 주택의 임대정도(미임대 일부임대 전부임대)와 방수에 의하여 달라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 보증부대출 취급절차

정식 신용조사 및 심사



○ 보증한도(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 개인 : 신용보증누계액 10억원
- 법인 : 신용보증누계액 15억원

○ 보증금액별 신용조사 종류

| | | | |
|------------|--------|-----------|-------|
| 5,000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 2억원~7억원미만 | 7억원이상 |
| 간이신용조사 | 약식신용조사 | 정식신용조사 | 정밀조사 |

(5) 후취담보대출 적용기준

| 담보등급 | 대 상 담 보 물 종 류 | 대 출 비 율 |
|------|--|------------------|
| 갑 류 | ○ 대지, 농지, 초지 및 임야 등 부지류 ○ 주택, 숙박시설, 식당시설 및 판매시설 등 건물류 | ○ 투자금액의 71 ~ 80% |
| 을 류 | ○ 농림수축산물의 가공공장류 ○ 창고, 저온저장고, 선별처리장 및 집하장등창고류 | ○ 투자금액의 51 ~ 70% |
| 병 류 | ○ 유리온실, 철골Pet온실 등 온실류 ○ 선박, 어선 등 어로시설류 ○ 우사, 돈사 및 계사 등 축사류 ○ 퇴비제조장, 오폐수처리시설 등 종말처리시설류 ○ 기계·기구 및 장치 등 기계류 | ○ 투자금액의 41 ~ 50% |

(주) 이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담보물은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가장 유사한 부류의 후취담보물의 대출비율을 적용한다.

나. 대출취급시 주요 구비서류

| 구분 | 서류명 | 농업인 | | 개인사업자 | | 법인 | | 비고 |
|-------------|---|--|--|--|--|--|--|------|
| | | 신용대출 | 담보대출 | 신용대출 | 담보대출 | 신용대출 | 담보대출 | |
| 교부서류 | ○ 여신거래기본약관 | ○ | ○ | ○ | ○ | ○ | ○ | 교부서식 |
| 본인확인서류 | ○ 대출상담 및 신청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또는 규약 ○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영수증 ○ 종합소득금액 사실증명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 및 대출심사서류 | ○ 사업계획서 ○ 월별공정계획표 ○ 최근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 ○ 소유재산 등기부등본 ○ 연대보증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보감정(설정)서류 | ○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적도 ○ 개별지가확인원 ○ 기계·기구목록(공장저당시) ○ 화재공제(보험)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위 구비서류외에 대상업체, 담보물 등에 따라 추가로 받을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 필수 징구서류, △ : 필요시 징구서류)

2. 대출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반드시 대출취급사무소에 직접 나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다. 대출에 따른 소요비용

(1) 담보물 감정평가 수수료

- 대출취급사무소 자체 평가시 농업인 등 및 농업인 등의 단체는 면제. 단, 원격지 담보물의 경우 여비 등 실비는 채무자 부담임
- 한국감정원 등 외부기관 평가시는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저당권 설정비용

- 등록세 : 설정액의 2/1,0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 주택채권 매입 : 설정액의 10/1,000(단, 설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와 농업인등이 농림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때에는 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
- 법무사 수수료
 - 기본수수료(건당) : 45,000원
 - 가산수수료

주) 지역 및 기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 정 액 | 누진가산 보수액 | 비 고 |
|------------------|--------------|-----------------------------|
| 10백만원초과 50백만원 이하 | 10/10,000 가산 | ○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억원으로 봄 |
| 50백만원초과 1억원 이하 | 9/10,000 가산 |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8/10,000 가산 | ○ 누진가산보수액의 상한액은 8,385,000원임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7/10,000 가산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6/10,000 가산 | |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5/10,000 가산 | |
|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4/10,000 가산 | |

- 여비 등 실비 : 실제 소요된 비용
- 일당
 - (1) 2시간이상 4시간이내 : 40,000원이하
 - (2) 4시간 초과 : 80,000원이하
-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료 등 : 등본 및 초본 1통마다 2,000원

(3)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 대 출 금 액 | 인 지 대 |
|-------------------|----------|
| 5백만원 이하 | 면제 |
|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 10,000원 |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20,000원 |
|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0,000원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0,000원 |
| 5천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 70,000원 |
| 1 억원 초과 ~ 5 억원 이하 | 150,000원 |
| 5 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250,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농업인 등이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대출 받을 때에는 5천만원까지 면제
다만, 동일인의 대출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신용보증료

○ 보증대상자,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인 : 연율 0.2 % - 0.4 %

- 법인 : 연율 0.4 % - 0.6 %

※ 신용도에 따라 보증율이 가감(가감보증료율 : ± 0.2 %)

라. 기 타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기타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 농림수산자금대출취급지침 및 동 요령과 농협 여신관련
제 규정에 의함

2. 고품질 쌀 관련 정의

- ✳ 고품질 쌀과 관련된 해석기관은 농산과(과장 배인태, 농업서기관 임정빈)입니다.

추후계재(시달)

추후계재(시달)